

2009-1-14

발 간 등 록 번 호

11-1371028-000074-01

청각장애인의 언어 사용 실태 연구

— 언어 사용 실태와 수화에 대한 청인의 인식 —

책임연구원 권재일

공동연구원 윤병천

김응범

이미혜

국립국어원 · 한국농아인협회

청각장애인의 언어 사용 실태 연구

- 언어사용 실태와 수화에 대한 청인의 인식 -

책임연구원 권재일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교수)

공동연구원 윤병천 (나사렛대학교 수화통역학과 교수)

김응범 (단국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강사)

이미혜 (한국농아인협회 사무처장)

보조연구원 이호철 (한국농아인협회 정보방송부장)

정진호 (한국농아인협회 기획부장)

박은희 (특수교육 교사)

발행인 국립국어원

발행처 국립국어원 서울시 강서구 금낭화길 148 (방화 3동 827번지)

전화 (02) 2669-9775 팩스 (02) 2669-9727

한국농아인협회 서울시 성동구 성수 2가 3동 289-20 보라빌딩 4층

전화 (02) 461-2261 팩스 (02) 461-2651

인쇄일 2009년 3월 31일

발행일 2009년 3월 31일

인쇄 애드피아

제 출 문

국립국어원장 귀하

국립국어원 국고 보조금 지원으로 수행한 “청각장애인의 언어 사용 실태 조사”의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009년 3월 31일

연구책임자: 권재일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교수)

보조사업자명 한국농아인협회
사업책임자 변승일

머리말

우리나라는 법률을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신체상의 장애에 의하여 언어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이 불편 없이 국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각장애인들이 불편 없이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연구는 의사소통에 장애를 가지고 있는 청각장애인들의 언어 사용 실태와 청각장애인과 수화와 대한 청인들의 인식과 이해도를 조사하여 청각장애인에 대한 언어 복지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여 청각장애인들의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한 다각적인 정책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청각장애인은 수화와 같은 의사소통 수단을 사용하므로 청인과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하여, 학습권, 정보 이용권, 의사소통권 등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들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여 사회적으로 소외당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사회적 소수자인 청각장애인에 대한 언어권 확보는 문화 다양성시대에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청각장애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나 사회적 여건이 열악한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청각장애인들의 의사소통 상황 및 욕구 실태에 대한 기초 자료 조사가 요구되며, 이에 기반하여 타당성 있고 실효성 있는 청각장애인 언어 복지 정책을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연구는 바로 여기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루어진 연구 성과를 통해 청각장애인이 의사소통에서 겪는 상황과 어려움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여 수화를 언어로 인정하며 청각장애인의 언어권을 보장하는, 즉 청각장애인의 언어 현실에 기초한 맞춤형 언어 복지 정책 수립을 제안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인의 청각장애인과 수화에 대한 인식 및 이해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여 청각장애에 대한 인식 개선을 시도하였습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하면 청각장애인의 언어권 확보는 물론 종합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2009년 3월 31일

연구책임자 권재일

차 례

제출문

머리말

1. 서 론	1
2. 청각장애인의 언어 사용 관련 법령 및 제도 분석	
2.1. 의사소통 관련 국내외의 법령과 제도 현황	3
2.1.1. 국내의 의사소통 관련 법령과 제도	3
2.1.1.1. 국어기본법	3
2.1.1.2. 장애인복지법	4
2.1.1.3.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5
2.1.1.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6
2.1.1.5. 장애인권리협약	6
2.1.1.6. 장애인인권선언문	7
2.1.2. 국외의 의사소통 관련 법령과 제도	8
2.1.2.1. 뉴질랜드의 수화 지위	8
2.1.2.2. 유럽지역의 수화언어 지위	9
2.2. 정보이용 관련 국내외의 법령과 제도 현황	10
2.2.1. 국내의 정보이용 관련 법령과 제도	11
2.2.1.1. 정보격차해소 관련 법률	11
2.2.1.2. 장애인복지법	12
2.2.1.3. 장애인차별금지 및 구제 등에 관한 법률	13
2.2.2. 국외의 정보이용 관련 법령과 제도	14
2.2.2.1. 미국	15
2.2.2.2. 일본	15
2.2.2.3. 유럽 국가	16
2.3. 학습 관련 국내외의 법령과 제도 현황	16

2.3.1. 국내의 학습 관련 법령과 제도	16
2.3.1.1. 교육기본법	17
2.3.1.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17
2.3.1.3. 장애인복지법	18
2.3.1.4.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19
2.3.1.5. 장애인권리협약	20
2.3.1.6. 특수학교 교육과정	21
2.3.1.7. 개정 특수학교교육과정	22
2.3.2. 국외의 학습 관련 법령과 제도	22
2.3.2.1. 미국	22
2.3.2.2. 프랑스	23
2.3.2.3. 노르웨이	23
2.3.2.4. 스웨덴	23
2.3.2.5. 독일	24
2.3.2.6. 덴마크	24
2.3.2.7. 이탈리아	24
2.4. 청각장애인의 언어 사용 관련 법령 및 제도의 문제점	25
2.4.1. 의사소통	25
2.4.2. 정보이용	26
2.4.3. 학습	27
 3. 조사 방법	
3.1. 청각장애인의 언어 사용 실태 조사	29
3.1.1. 조사 대상	29
3.1.2. 조사 도구	32
3.1.3. 조사 절차	33
3.1.4. 자료 처리	34
3.2. 수화와 수화 사용자에 대한 청인의 인식 및 이해도 조사	35
3.2.1. 조사 대상	35
3.2.2. 조사 도구	37

3.2.3. 조사 절차	38
3.2.4. 자료 처리	39
4. 청각장애인의 언어 사용 실태	
4.1. 조사 대상의 특성	40
4.1.1. 혼인 여부	40
4.1.2. 학력	41
4.1.3. 특수학교/일반학교 여부	42
4.1.3.1. 재학/졸업 여부	42
4.1.3.2. 일반학교/농학교 전학 여부	42
4.1.4. 직업	43
4.2. 청각 장애 정도	45
4.2.1. 재활보조기구 착용 여부	45
4.2.2. 청력 손실정도	46
4.2.3. 청각장애 발생 시기	46
4.2.4. 청각장애의 원인	47
4.3. 의사소통 수단	47
4.3.1.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전달할 때 사용하는 의사소통 수단	47
4.3.2.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때 주로 사용하는 의사소통 수단	49
4.3.3. 수화를 할 수 있는 정도	50
4.3.4. 수화를 배운 대상	52
4.3.5. 수화를 배우기 시작한 연령	52
4.3.6. 말을 할 수 있는 정도	53
4.3.7. 말을 배우기 시작한 곳	54
4.3.8. 말을 배우기 시작한 연령	54
4.3.9. 상대방이 하는 말을 듣는 정도	55
4.3.10. 소음이 있는 곳에서 듣는 정도	56
4.3.11. 자기가 하는 말을 상대방이 이해하는 정도	57
4.3.12. 청각장애를 가진 가족 유무	57
4.4. 가족과의 의사소통	58

4.4.1. 수화 사용에 대한 가족의 태도	58
4.4.2. 수화를 할 수 있는 가족의 유무	59
4.4.3. 수화를 할 수 있는 가족의 수화 능력	59
4.4.4. 가족과의 의사소통 수단(수화를 할 수 없을 경우)	60
4.4.5. 하루 평균 가족과 대화하는 시간	61
4.4.6. 가족과의 대화 정도(대화 내용)	62
4.4.7. 가정에서 하는 중요 결정에 참여하는 정도	63
4.5. 건청 자녀 양육	64
4.5.1. 건청 자녀가 학교에 입학하기 전 주로 양육한 사람	64
4.5.2. 건청 자녀를 일정 기간 다른 사람 혹은 시설이나 기관에 맡긴 경험	64
4.5.3. 건청 자녀를 다른 사람에게 맡긴 기간	65
4.5.4. 건청 자녀를 다른 사람에게 맡긴 이유	66
4.5.5. 건청 자녀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나서 받은 도움	66
4.5.6. 건청 자녀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나서 어려웠던 점	67
4.5.7. 건청 자녀를 (학령 전에) 양육하면서 어려웠던 점	67
4.5.8. 국내외에서 얻는 건청 자녀 양육 정보의 주된 매체	68
4.6. 한국어 능력	69
4.6.1. 수화를 배우는 것이 한국어 습득에 도움이 되는 정도	69
4.6.2. 구화 교육이 한국어(말) 습득에 도움이 되는 정도	70
4.6.3. 자신이 생각하는 한국어(말) 실력	70
4.6.4. 기회가 된다면 한국어(말)를 다시 배울 의향	71
4.6.5. 한국어(말)를 배울 때 가장 어려웠던 것	72
4.7. 수화통역사	73
4.7.1. 수화통역사의 수화 통역을 받은 경험	73
4.7.2. (수화 통역을 받은 적이 있다면) 수화통역을 한 사람	74
4.7.3. 수화통역을 받은 횟수	75
4.7.4. 수화통역을 받은 경우	75
4.7.5. 수화통역이 도움이 된 정도	76
4.7.6. 수화통역을 받을 때 불편했던 점	76

4.8. 방송 및 인터넷 정보 접근 실태	77
4.8.1. 국내외에서 일어나는 생활정보를 얻는 주된 매체	77
4.8.2. 방송에서 청각장애인을 위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	79
4.8.3. 자막 방송 시청 여부	79
4.8.4. 자막 방송 내용 이해 정도	80
4.8.5. 자막 방송 내용이 이해가 잘 안 되는 이유	82
4.8.6. 자막 방송을 보고 좋아진 점	83
4.8.7. 방송에서 수화통역을 본 경험	84
4.8.8. 방송에서 하는 수화통역의 이해 정도	84
4.8.9. 방송에서 하는 수화통역이 이해가 안 되는 이유	85
4.8.10. 인터넷에 나오는 정보 이해 정도	86
4.8.11. 인터넷에 나오는 정보가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	87
4.9. 학교 교육에서 수화	88
4.9.1. 청각장애인의 통합 교육에 대한 생각	88
4.9.2. 자기의 수화와 농학교 선생님의 수화 비교	89
4.9.3. 수화로 하는 농학교 선생님의 수업 내용 이해하기	89
4.9.4. 농학교 선생님의 수화를 이해하기 어려웠던 이유	90
4.9.5. 통합학교에서 사용한 친구나 선생님과의 대화 수단	90
4.9.6. 통합학교에서 선생님의 수업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받은 도움	91
4.10. 사회활동 속에서의 의사소통	91
4.10.1. 직장생활에서 겪는 의사소통의 어려움	92
4.10.2. 사회생활(법정, 선거, 의료 등)에서 겪는 의사소통의 어려움	92
4.10.3. 청인과의 교류	93
4.10.4. 다른 사람들과의 통신 수단	94
4.11. 보청기와 인공와우의 장단점	94
4.12. 청력 손실 정도에 따른 언어 사용 실태(농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97
4.12.1. 보청기 착용 전후의 청력 손실도	97
4.12.2. 인공와우 착용 전후의 청력 손실도	97
4.12.3. 청력손실도별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전달할 때 주로 사용하는 수 단	98

4.12.4. 청력손실도별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때 주로 사용하는 수단	98
4.12.5. 청력손실도별 수화를 할 수 있는 정도	99
4.12.6. 청력손실도별 말을 할 수 있는 정도	100
4.12.7. 청력손실도별 상대방이 하는 말을 알아듣는 정도	100
4.12.8. 청력손실도별 소음이 있는 곳에서 듣는 정도	101
4.12.9. 청력손실도별 자기가 하는 말을 상대방이 이해하는 정도	101
 5. 수화와 수화 사용자에 대한 청인의 인식 및 이해도	
5.1. 수화에 대한 청인의 인식 및 이해도	103
5.2. 수화의 날에 대한 청인의 인식 및 이해도	104
5.2.1. ‘수화의 날을 정하는 것이 좋다’에 대한 청인의 인식 및 이해도 ...	104
5.2.2. ‘수화의 날을 정한다면’에 대한 청인의 인식 및 이해도	105
5.3. 수화의 사용에 대한 청인의 인식 및 이해도	107
5.3.1. ‘수화 사용자는 수화로 가정생활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에 대한 청 인의 인식 및 이해도	107
5.3.2. ‘수화 사용자는 수화로 학교생활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에 대한 청 인의 인식 및 이해도	108
5.3.3. ‘수화 사용자는 수화로 직장생활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에 대한 청 인의 인식 및 이해도	110
5.4. 수화 지도에 대한 청인의 인식 및 이해도	111
5.4.1. 수화지도 시기에 대한 청인의 인식 및 이해도	111
5.4.2. ‘청인 교육에서 한국수화를 제2외국어로 개설하는 것이 좋다’에 대한 청인의 인식 및 이해도	113
5.5. 수화통역에 대한 청인의 인식 및 이해도	114
5.6. 수화의 활용에 대한 청인의 인식 및 이해도	116
5.6.1. ‘문자나 수화 메시지를 가정전화나 휴대전화로 주고받을 수 있어야 한다’에 대한 청인의 인식 및 이해도	116
5.6.2. ‘모든 TV방송 프로그램을 수화로 통역하거나 폐쇄자막으로 설명해야 한다’에 대한 청인의 인식 및 이해도	117
5.6.3. ‘수화 사용자에게 수화로 된 출판물과 영상물을 제공해야 한다’에 대	

한 청인의 인식 및 이해도	119
5.6.4. ‘수화 사용자가 문화 공연이나 문화 유적, 기념물 등에 수화로 접근 하여 볼 수 있어야 한다’에 대한 청인의 인식 및 이해도	120
5.6.5. 수화 사용 청각장애인에 대한 청인의 인식 및 이해도	121
 6. 고찰 및 제안	
6.1. 청각장애인의 사회적 지위	124
6.2. 수화의 가치와 수화 습득의 현실	124
6.2.1. 수화의 가치	125
6.2.2. 수화 습득의 현실	126
6.2.3. 수화의 표준화와 보급	126
6.3. 가정, 사회, 학교에서의 수화	127
6.3.1. 가정에서의 수화	128
6.3.2. 사회에서의 수화	129
6.3.3. 학교에서의 수화	130
6.4. 수화통역사	131
6.5. 방송을 통한 정보 접근	132
6.6. 보청기와 인공와우 문제	134
6.7. 수화, 청각장애인에 대한 청인의 이해와 인식	135
 7. 결론	138
 참 고 문 헌	140
 부 록	
(1) 청각장애인의 언어 사용 실태 조사서	142
(2) 수화와 수화 사용자에 대한 청인의 인식 및 이해도 조사서	153

1. 서론

2005년부터 시행된 국어기본법 제4조 제2항에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신체상의 장애에 의하여 언어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이 불편 없이 국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각장애인들이 불편 없이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펼쳐야 하는 책무가 있다.

바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연구는 의사소통에 장애를 가지고 있는 청각장애인들의 언어 사용 실태와 청각장애인과 수화에 대한 청인* 들의 인식과 이해도를 조사하여 청각장애인에 대한 언어 복지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여 청각장애인들의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한 다각적인 정책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청각장애인은 수화, 구화, 필담 등을 의사소통 수단으로 사용하므로 청인과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하다. 의사소통의 장애로 인해 정당한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여 학습권, 정보 이용권, 의사소통권 등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 권리를 박탈당한 채 사회적으로 소외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사회적 소수자인 청각장애인에 대한 언어권 확보는 문화 다양성시대에 문화 공동체로서의 사회적 통합성을 강화하여 우리 사회의 지속적이고도 건강한 미래를 확보하려는 정책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문제이다. 그러나 청각장애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나 사회적 여건이 열악한 상태에서 청각장애인이 언어적 권리를 획득하는 것은 청인 중심 문화에서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청각장애인의 언어 복지 증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청각장애인들의 의사소통 상황 및 욕구 실태에 대한 기초 자료 조사가 요구되며, 이에 기반 하여 타당성 있고 실효성 있는 청각장애인 언어 복지 정책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바로 이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것을 연구 내용으로 한다.

첫째, 청각장애인 언어 사용 실태를 면접 조사하여 결과를 분석한다. 면접 조

* 이 글에서 ‘청인’(聽人)이란 청각에 장애가 없는 사람을 가리킨다.

사 대상은 청각장애인 1,500명을 목표로 하였으며, 설문지를 통해 수화 면담 조사한다. 주요 면접 조사 내용으로는 청각장애인의 가정, 학교 내 수화 습득 실태, 가족, 친척과의 의사소통 실태, 청각장애인의 정보 접근 실태, 수화통역 서비스 이용 실태 등이다.

둘째, 청인의 수화에 대한 인식과 이해에 대해 면접 조사하여 그 결과를 분석한다. 면접 조사 대상은 청인 1,000명을 목표로 하였으며, 역시 설문지를 통해 면접 조사한다. 주요 면접 조사 내용으로는 수화, 수화 사용, 수화 지도, 수화 통역, 수화의 날 제정 등에 대한 청인의 인식과 이해 등이다.

셋째, 국내외의 청각장애인 언어권과 관련한 법령과 제도 현황을 분석하여 청각장애인의 언어 복지 관련 법령과 제도를 분석하여 청각장애인의 언어 정책의 방향, 추진 체계, 주요 사업, 시사점을 검토하여, 위의 두 설문지를 작성하는 근거로 삼고, 또한 정책 제안의 출발점으로 삼고자 한다.

이와 같은 연구를 통해 청각장애인이 의사소통에서 겪는 상황과 어려움에 대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여 궁극적으로 수화를 언어로 인정하여 청각장애인의 언어권을 보장하는, 즉 청각장애인의 언어 현실에 기초한 맞춤형 언어 복지 정책 수립을 위한 제안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청인의 청각장애인과 수화에 대한 인식 및 이해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여 청각장애에 대한 인식 개선 사업에 기초 자료로 활용하게 될 것이다. 아울러 국내외 청각장애인 관련 법령 및 제도에 대한 검토를 통해 앞으로 청각장애인을 위한 언어 복지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결과적으로는 청각장애인의 종합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 믿는다.

2. 청각장애인의 언어 사용 관련 법령 및 제도 분석

제2장에서는 청각장애인의 언어권과 관련이 있는 의사소통, 정보이용, 학습을 중심으로 국내외 법령과 제도를 살펴보고 이에 따른 법령과 제도의 문제점에 대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2.1. 의사소통 관련 국내외의 법령과 제도 현황

2.1.1. 국내의 의사소통 관련 법령과 제도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과 관련하여 국내의 법령과 제도는 국어기본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권리협약, 장애인인권선언문을 살펴보았으며, 장애인차별 금지 및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정보통신과 의사소통을 같은 항목으로 명시되어 있어 정보이용에 제시하였다. 의사소통과 관련한 국내의 법령과 제도에 대한 조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2.1.1.1. 국어기본법

청각장애인의 언어권과 관련해서는 국어기본법 제1장 총칙 제4조 2항과 제6조 3항 9에 명시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다.

총칙 제4조 2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2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신체상의 장애에 의하여 언어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이 불편 없이 국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2장 제6조 국어발전 기본계획의 수립의 3항 9에 “정신·신체상의 장애에 의하여 언어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 및 국내 거주 외국인의 국어사용상의 불편 해소에 관한 사항” 이 나타나 있다.

국어기본법 제4조 2항에 따라 국립국어원에서는 한국수화사전과 한국수화문형사전 등 전문 수화사전을 편찬하여 청각장애인 및 수화와 관련된 수화통역센터, 청각장애인학교에 보급과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제6조 3항 9호에 명시된 장애인 즉 청각장애인들의 국어사용을 위하여 국립국어원과 한국농아인협회 및

서울시 교육청과 함께 특수학교 교사들을 위한 수화교육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한정된 지역에서 실시되었으므로 전국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청각장애인 언어와 관련하여 국어기본법 제6조 3항 8호에 “남북한 언어통일 방안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다. 이에 따라 국어에 대한 남북한 언어학자들의 교류와 공동발표 등 다양한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한국수화도 남북한수화연구와 교류가 절실히 필요하다.

2.1.1.2. 장애인복지법

청각장애인들의 의사소통과 관련해서는 장애인복지법의 제2장 제18조 의료와 재활치료, 제58조 장애인복지시설 2항, 제7장 장애인복지 전문 인력에 명시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다.

제2장 18조 의료와 재활치료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생활기능을 익히거나 되찾을 수 있도록 필요한 기능치료와 심리치료 등 재활의료를 제공하고 장애인의 장애를 보완할 수 있는 장애인보조기구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에 따라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을 지원하고 있다.

제58조 장애인복지시설 2항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상담·치료·훈련하거나 장애인의 여가 활동과 사회참여 활동 등에 편의를 제공하는 장애인복지관·의료재활시설·체육시설·수련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등의 시설”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의사소통에 지장이 있는 청각·언어장애인에 대한 수화통역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원활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도모하기 위한 수화통역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제7장 장애인복지 전문 인력 양성 제71조 장애인복지 전문 인력 양성 등의 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수화통역사, 점역·교정사 등 장애인복지 전문 인력, 그 밖에 장애인복지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양성·훈련하는 데에 노력해야 한다.”

장애인복지법 제2장 18조에 따라 청각장애인들의 의사소통을 위하여 인공달팽이관 수술비와 일부의 매핑 및 언어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제58조 2항에

따라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을 위하여 청각장애인들의 의사소통을 도울 수 있도록 수화통역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제7장 71조에 따라 전문 인력 양성으로 수화통역사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그러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인공달팽이관 지원에 대하여 수술 후 장점에 대한 연구와 함께 부작용 등에 대한 검증과 연구가 필요하며, 전문 인력 양성에서 수화통역사에 대하여 국가가 국립대학에서 양성하고 있으나 2년제 과정에서 전문 수화통역사 양성이 다소 부족하므로 다양한 양성 과정이 필요하다.

2.1.1.3.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청각장애인들이 시설을 사용할 경우 관련 시설의 사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된 법률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16조 시설 이용 상의 편의제공과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에 명시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다.

제16조 1항 “장애인등의 이용이 많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휠체어·점자안내책자·보청기기 등을 비치하여 장애인등이 당해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휠체어·점자안내책자·보청기기 등을 비치하여 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와 휠체어·점자안내책자·보청기기 등을 비치하여야 할 용품의 종류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 2의 1항에 “장애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시설주에 대하여 안내서비스·수화통역 등의 편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의 규정은 청각장애인들이 시설을 이용할 때 보청기나 수화통역사를 배치하여 건물 이용에 편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서울국립중앙박물관에는 수화통역사를 배치하여 청각장애인들이 요청할 경우 수화통역사가 통역을 하여 주고 있어 법률 시행이 잘 된 곳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 대다수의 공공기관에 더 많은

수화통역사 배치가 필요하다.

2.1.1.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관련 사항으로 제21조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지원 1항 3에 명시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다.

제21조 1항은 “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에 드는 다음 각 호의 비용 또는 기기 등을 융자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 및 여성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를 우대하여야 한다.”

제21조 1항 3은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에 관한 것으로 “장애인의 적절한 고용관리를 위하여 장애인 직업생활 상담원, 작업 지도원 또는 수화통역사 등을 배치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으로 명시하였다.

청각장애인들의 직업에 있어서 이직에 대한 이유가 다양할 수 있지만 의사소통의 문제가 그 중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다. 현재 청각장애인들의 직장에 수화통역사가 배치되어 있지만 대다수가 상근하여 통역하기 보다는 주당 몇 시간씩 통역하므로 관련 직업 전문 수화통역사 배치가 시급한 실정이다.

2.1.1.5. 장애인권리협약

장애인권리협약에서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관련 사항으로 제2조 정의와 제9조 접근성 1항 마, 제21조 의사 및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권 나에 명시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다.

제2조 정의에 “언어란 구어, 수화 및 다른 형태의 비 음성 언어를 포함한다.”

제9조 접근성 1항 마 “대중에게 개방된 건물과 기타 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안내인, 낭독자, 전문수화통역사를 포함한 형태의 현장지원과 매체를 제공”

제21조 의사 및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권 나에서는 “장애인의 교류에 있어 장애인의 선택에 따른 수화, 점자, 대체적인 의사소통, 그리고 의사소통의 기타 모든 접근 가능한 수단, 방식 및 형식의 사용을 수단하고 촉진”이라고 명시하였다.

장애인권리협약에서는 관련 전문수화통역사의 지원과 수화 사용을 인정하고 증진할 것을 명시하였다. 현재 국내의 경우 전문통역사의 양성이 아닌 일반 수화통역사의 양성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국내의 수화통역사 양성 제도는 협약에 명시한 전문수화통역사라고 하기에 다소 부족하다. 따라서 미국의 경우처럼 다양한 전문수화통역사 제도와 함께 양성이 필요하다.

현재 국내의 수화통역 관련 자격증 취득 현황은 다음 <표 2.1>와 같다.

<표 2.1> 국내 수화통역 관련 자격증 취득 현황

년도	수화통역사(명)		청각장애인통역사(명)
	민 간	국 가	
1997	98		
1998	36		
1999	42		
2000	71		
2001	91		
2002	82		
2003	83		
2004	111		34, 27
2005	79	376	25
2006		90	40
2007		92	61
2008		183	37
합계	693	741	224

(민간시험 1997년, 국가시험은 2005년, 청각장애인통역사 시험은 2004년도 2회 실시하였음)

2.1.1.6. 장애인인권선언문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관련 사항으로 장애인인권선언문 제18항에 명시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다.

제18항 “청각장애인은 수화를 사용하여 의사를 표현하고 소통할 권리가 있으며, 수화는 공식적 언어로 인정되어야 한다.”

장애인인권선언문에서 수화로 소통할 권리가 있으며, 공식적 언어로 인정할 것을 명시하였으나 현재 국내에서는 한국수화를 공식적으로 언어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외국의 많은 나라에서 수화를 각 나라의 공식 언어로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한국수화도 한국어와 함께 공식 언어로 인정하여야 한다.

2.1.2. 국외의 의사소통 관련 법령과 제도

청각장애인들의 의사소통 관련 국외의 법령과 제도에 대한 조사는 수화 관련 법 중 가장 체계적이고 명확하게 되어 있는 뉴질랜드수화법과 유럽연합국을 중심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2.1.2.1. 뉴질랜드의 수화 지위

뉴질랜드수화에 관한 법령은 2006년에 제정되었으며, 목적, 공식 언어 인정, 기본원칙, 규제에 관한 것으로 다음과 같다.

1) 목적

첫째, 뉴질랜드수화를 국가의 공식 언어로 선언

둘째, 법적 절차에서 뉴질랜드수화 사용의 준비

셋째, 법적 절차에서 뉴질랜드수화 통역의 역량기준 수립 및 관련 규정 제정의 허용

넷째, 뉴질랜드수화 사용 및 진흥을 위한 정부부서 기본 원칙의 제시이다.

2) 공식 언어 인정

뉴질랜드수화의 공식 언어 인정을 선포하고 법적 절차에서 뉴질랜드수화를 사용할 권리를 규정하였으며 다음과 같다.

법적 절차에서 뉴질랜드수화 사용이 가능한 자는 다음 세 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첫째, 법적 절차가 수행되는 법원, 재판소 또는 기타 기관의 모든 구성원, 둘째, 모든 당사자 및 증인 셋째, 주재관의 허락을 받은 다른 모든 사람으로 하였다.

3) 정부의 기본 원칙

뉴질랜드수화와 관련된 문제는 청각장애인 단체와 상의하여야 하며 정부의 기본원칙은 다음 두 가지가 있다.

첫째, 정부 서비스의 대국민 홍보 및 정보 제공에 뉴질랜드수화를 활용해야 함.

둘째, 정부는 적절한 수단을 활용하여 청각장애인들이 정부서비스에 손쉽게 접근하도록 해야 함.

4) 규제

수화에 대한 법령의 규제에 관한 것으로 총리는 심의회 명령에 의해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규제조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뉴질랜드 수화통역사의 자격으로 소송이나 재판에 참여하는 사람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언어능력의 기준을 분명히 정하는 것.

둘째, 이 법령에 의해 신중히 고려되는 문제 또는 이 법령의 집행을 위해 필요하거나 이 법령에 완전한 영향력을 주기 위해 꼭 필요한 문제들을 법으로 규정하는 것.

셋째, 위 첫째의 규제들은 뉴질랜드 수화통역사로서 법절차에 참여하는 사람의 언어능력이 평가될 기준을 반드시 포함 혹은 규정해야 한다.

청각장애인의 언어와 관련하여 뉴질랜드는 뉴질랜드수화와 수화통역에 대하여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으며, 청각장애 단체와 전문가들의 유기적인 협의를 통하여 정책결정을 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수화통역사의 자격과 법적인 문제까지도 구체적으로 명시한 법안이라 할 수 있다.

2.1.2.2. 유럽지역의 수화언어 지위

유럽연합 24개 국가의 수화 지위에 대하여 2003년 유럽 장애인의 해에 만든 공식웹사이트의 보도 자료를 한국농아인협회가 번역한 것을 참고로 하였다. 유럽연합 국가의 수화언어에 대한 지위는 다음과 같다.

1) 수화언어의 헌법과 법안, 입법

유럽농아인연맹(EDU)은 소수민족 집단의 음성언어가 공식적인 언어로 인정받고 사용되는 것과 같이 소수집단의 언어로서 수화가 법적으로 온전하게 인정

받도록 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유럽농아인연맹은 수화를 공식 언어에서 배제할 이유가 없음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언어학적 근거로 오래전부터 수화는 그 자체로서의 자격을 갖춘 언어로 연구되어 왔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유럽에서 수화를 헌법으로 인정한 국가는 핀란드, 포르투갈, 그리스, 체코 공화국, 슬로바키아 공화국이 있다고 하였다. 이들 국가 중 핀란드, 체코 공화국의 법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핀란드

핀란드에는 약 8000명의 청각장애인들이 살고 있고, 그들 중 5,000명이 제1언어로 수화를 사용한다. 핀란드수화언어 사용자의 수는 대략 15,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1995년 헌법의 기본권에 관한 개정안 내용에 언어와 관련한 권리가 포함됨으로써 청각장애인들은 수화 사용에 관한 법적 보호권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헌법적 지위는 언어적 동등함을 이루는데 중요한 계기가 되었고, 수화를 사용하는 공동체를 위한 중요한 원칙도 갖게 되었다. 청각장애인들도 하나의 언어 및 문화 집단으로서의 지위를 처음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그 후 개정된 헌법은 해당 공공 기관의 수화 사용자들이 그들 고유의 언어를 사용하고, 그들만의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한 기회를 갖도록 하기위하여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2) 체코 공화국

체코는 1998년 6월 11일 155번 법률에 의해 수화도 다른 언어와 마찬가지로 동등한 지위가 있음을 공식적으로 선언하였다. 이 법률은 수화가 체코 공화국에 살고 있는 청각장애인들의 의사소통 수단임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또한 청각장애인들은 수화 사용의 자격을 부여받고, 수화로 교육시키고, 교육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각장애인들은 이 법률에 따라서 진료를 받거나 행정 및 재판과 관련한 업무를 처리할 경우 수화통역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조항과 고등 전문 교육기관에 다니는 청각장애학생들도 일체의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수화통역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법률에 의해 보장되었다.

2.2. 정보이용 관련 국내외의 법령과 제도 현황

2.2.1. 국내의 정보이용 관련 법령과 제도

청각장애인의 정보이용과 관련한 법으로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과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다.

2.2.1.1. 정보격차해소 관련 법률

정보격차해소 관련 법률에는 청각장애인들의 정보에 대하여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다. 지원내용은 제7조, 8조, 9조, 11조, 16조 등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다.

제7조 장애인·노령자 등의 정보접근 및 이용보장 1항과 2항, 4항에 나타나 있다. 1항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기타공공단체는 장애인·노령자가 편리하게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8조에는 기술개발의 촉진에 관한 내용으로 1항과 3항에 명시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다.

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노령자의 정보접근 및 이용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관련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3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노령자의 정보접근 및 이용환경을 개선을 위하여 정보통신기기 및 소프트웨어를 개발·생산하는 사업자와 장애인·노령자·농어민·저소득자를 위한 정보내용물을 제공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각각 재정 및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9조 1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정보통신기기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1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화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16조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의 설립 1항 “정부는 국민이 정보통신서비스에 자유롭게 접근하고 이를 이용하여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을 설립하여야 한다.”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국내에서는 청각장애인들에게 다양하게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제16조에 의하여 세워진 정보문화진흥원에서 청각장애 관련 통신지원과 함께 다양한 교육과 지원을 하고 있다. 정보문화진흥원에서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통신중계서비스(TRS; Telecommunication Relay Service)와 정보화교육을 위하여 전국의 농아인협회와 단체에 컴퓨터를 제공하여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정보화교육의 강사는 대부분 청각장애인들이며, 청각장애인들이 쉽게 학습할 수 있도록 수화로 정보화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원하여 주고 있다.

2.2.1.2. 장애인복지법

청각장애인들의 정보와 관련하여 장애인복지법 제22조 정보에의 접근 1항, 2항, 3항, 4항에 명시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다.

1항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는 장애인이 정보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자신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방송시설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항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는 방송국의 장 등 민간 사업자에게 뉴스와 국가적 주요 사항의 중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송 프로그램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 또는 폐쇄자막과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 또는 자막해설 등을 방영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3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적인 행사, 그 밖의 교육·집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통역 및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하며 민간이 주최하는 행사의 경우 수화통역 및 점자자료 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4항 “제2항과 제3항의 요청을 받은 방송국의 장 등 민간 사업자의 민간 행사 주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전기통신, 방송시설, 방송 프로그램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 또는 폐쇄자막에 대한 것을 명시하고 있으나, 명시된 내용이 청각장애인들이 ‘요청할 수 있다’로 되어 있다. 이것은 행사 때마다 직접 당사자들이 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이어서 통역과 자막을 지원받기가 힘들 수 있다. 따라서 청

각장애인들이 정보 격차 없이 정보를 바르게 수용할 수 있도록 수화통역과 자막을 실시하여 주어야 한다.

국내에서 수화통역방송 및 자막방송은 편성 현황은 2008년 7월 기준으로 월 단위로 편성된 것은 다음 <표 2.2>와 같다.

<표 2.2> 국내의 자막 및 수화방송 편성 현황

방송사명		총방송시간량(분)	자막방송	수화
			시간(분)	시간(분)
KBS	1TV	37,170	33,280	3,370
	2TV	36,455	36,455	680
	계	73,625	69,735	4,050
MBC		36,225	33,700	1,225
SBS		36,740	32,945	1,635
EBS		35,605	28,860	0
계		182,195	165,180	6,910

2.2.1.3. 장애인차별금지 및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차별금지 및 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청각장애인들의 정보이용 관련 조항으로 제3절 제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의 20조, 21조, 23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다.

제20조 2항 “장애인 관련자로서 수화통역, 점역, 점자교정, 낭독, 대필, 안내 등을 위하여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등 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자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들의 활동을 강제·방해하거나 부당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 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의 1항 “제3조·제4호·제6호·제7호·제8호 가목 후단 및 나목·제11호·제18호·제19호에 규정된 행위자, 제12호·제14호부터 제16호까지의 규정에 관련된 행위자, 제10조 제1항의 사용자 및 같은 조 제2항의 노동조합 관계자(행위자가 속한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행위자 등”이라 한다)는 당해 행위자 등이 생산·배포하는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에 대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

이용할 수 있도록 수화,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조 제8호 가목 후단 및 나목에서 말하는 자연인은 행위자 등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항 “공공기관 등은 자신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에서 장애인의 참여 및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수화통역사·문자통역사·음성통역자·보청기기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3항 “방송법」에 따라 방송물을 송출하는 방송사업자 등은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제작물 또는 서비스를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자막, 수화, 점자 및 점자 변환, 보청기기, 큰 문자, 화면읽기·해설·확대프로그램,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 음성서비스, 전화 등 통신 중계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23조 정보접근·의사소통에서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3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에 따라 수화, 구화, 점자, 큰문자 등을 습득하고 이를 활용한 학습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위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의사소통양식 등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청각장애인들의 정보이용과 관련하여 장애인차별금지 및 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수화통역, 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가 있고, 장애유형과 특성에 따라 수화, 구화로 학습지원 서비스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장애인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의사소통 양식 등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국내의 현실은 장애인관련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청각장애당사자들이 신청하여야 수화통역서비스가 가능하며, 의사소통 양식도 선택할 수는 있지만 지원이 따라주지 못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한 내용들이 명시되어야 한다.

2.2.2. 국외의 정보이용 관련 법령과 제도

청각장애인들의 정보이용에 관하여 외국의 법령과 제도를 미국, 일본, 유럽의 프랑스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2.2.1. 미국

미국 청각장애인들의 정보이용 관련한 법으로 미국장애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이 있으며, 1990년 제정되어 1992년 7월 26일 발효되었다. 이 법의 제4장 통신에서의 장애인차별 금지법으로 다음과 같다.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위하여 전화중계서비스를 매일 24시간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국의 장애인통신법(Telecommunications for the Disabled Act)에서는 공항 등에 설치된 공중전화기가 자동 변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공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의 연방통신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모든 방송국은 전체방송 중 최소한의 비율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에 자막을 삽입해야 하며, 2006년 이후부터는 모든 새로운 프로그램에 대해 100% 자막을 삽입해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미국의 경우 미국장애인법이 다른 나라보다 먼저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실천면에서 다소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미국장애인법은 청각장애인들의 정보이용을 위해 자막과 수화통역 등에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

2.2.2.2. 일본

일본의 청각장애인을 위한 정보이용 관련 법령과 제도는 장애인중점실시 5개년 계획(2008-2012)중에 청각장애인 지원 부분이 명시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5개년 계획 중 도도부현에서 정보제공시설의 설치를 추진하기 위한 목표로 자막프로그램, 해설프로그램 및 수화프로그램 제작을 촉진하고 있으며, 수화통역사의 양성 및 파견 촉진과 수화통역사, 시각·청각장애인통역사 양성을 하고 시·청각장애인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커뮤니케이션 지원사업의 적절한 운용을 촉진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실시간 자막방송을 2000년 3월부터 일본공영방송(NHK)의 일부프로그램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민간방송국에서도 실시 중이다.

따라서 일본의 공영방송에서는 청각장애인들의 방송을 위하여 오랫동안 체계적인 연구를 실시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양성도 함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2.2.3. 유럽 국가

유럽의회는 2003년 4월 장관위원회의 결의안에 따라 45개 회원국들에게 수화로 텔레비전 방송을 하고 음성으로 방영되는 프로그램은 수화 자막처리를 하도록 지시하였다. 유럽연합의 나라별 정보이용은 다음과 같다.

포르투갈은 1998년 7월에 법 31-A/98의 45조항에 텔레비전 회사는 비중 있는 프로그램 제작 시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청각장애인들 만을 위한 특별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하여 참여율을 높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덴마크는 2000년 라디오와 텔레비전 방송 법령에 공영방송은 장애인들의 공공서비스프로그램 시청을 확대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공영방송을 시청할 경우 자막이나 수화서비스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였다.

영국은 방송법령에 대한 효력을 2000년 5월에 실시하였다. 이 법령은 디지털 텔레비전방송사에서 매주 방송하는 프로그램의 1%를 수화로 진행하도록 요구하였으며, 2008년에는 수화방송 비중을 5%로 높게 하였다.

이상으로 청각장애인들의 정보이용에 관하여 외국의 법령과 제도를 미국, 일본, 유럽의 포르투갈, 덴마크, 영국을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위의 국가들은 국가의 공영방송에 수화 혹은 자막으로 방송하도록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따라서 국내의 공영방송에서도 자막과 수화를 확대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2.3. 학습 관련 국내외의 법령과 제도 현황

2.3.1. 국내의 학습 관련 법령과 제도

청각장애인의 언어권 중 학습과 관련한 국내의 법령과 제도는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과 특수학교 교육과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권리협약을 조사 하였다. 그러나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는 청각장애학생들에 대한 교육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2.3.1.1. 교육기본법

교육기본법에서는 제3조와 제4조가 관련이 있으며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제3조의 학습권에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4조 교육의 기회균등 1항에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교육법에서는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과 함께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명시하였다. 따라서 청각장애인들도 신체적인 조건 즉 청각의 문제로 인하여 제한적이지 않고 청각장애 정도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 실정은 교육관련 지원이 만족할 수준이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청각장애학생들에게 교육기본법에 명시된 것처럼 차별 없는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교육 관련 지원이 필요하다.

2.3.1.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는 장애학생들 전체를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거나 청각장애학생들의 학습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조항들을 관련하여 생각해 볼 수 있다. 제2조 7항과 제2장 5조, 8조 등에 명시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다.

제2조 정의의 7항 “개별화교육이란 각 급 학교의 장이 특수교육대상자 개인의 능력을 계발하기 위하여 장애유형 및 장애특성에 적합한 교육목표·교육방법·교육내용·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등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2장 제5조 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5항 “특수교육교원의 양성 및 연수”

제8조 교원의 자질향상 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교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및 학교배치 등에 관한 조항들이 있다. 특수교육 서비스와 관련하여 제28조 3항에 “각 급 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하여 보조 인력을 제공하여야 한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청각장애학생들의 교육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명시 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제2조 정의의 7항 개별화교육에서 개인의 능력을 계발하기 위하여 장애유형 및 장애특성에 적합한 교육목표·교육방법·교육내용·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등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고 정의한 것은 청각장애학생들의 청력손실에 따라 학교를 선택할 수 있으며, 언어도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국내의 청각장애학교나 통합학급의 경우 청각장애학교 교사와 통합학급 교사 양성과정이 필요하며, 언어 선택에 따른 학교 환경의 지원이 필요하다.

2.3.1.3. 장애인복지법

교육과 관련하여 장애인복지법의 제20조에 5개 항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다.

1항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는 사회통합의 이념에 따라 장애인이 연령·능력·장애의 종류 및 정도에 따라 충분히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교육내용과 방법을 개선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항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는 장애인의 교육에 관한 조사·연구를 촉진하여야 한다.”

3항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는 장애인에게 전문 진로교육을 실시하는 제도를 강구하여야 한다.

4항 “각 급 학교의 장은 교육을 하는 장애인이 그 학교에 입학하려는 경우 장애를 이유로 입학 지원을 거부하거나 입학시험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의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항 “모든 교육기관은 교육 대상인 장애인의 입학과 수학 등에 편리하도록 장애의 종류와 정도에 맞추어 시설을 정비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장애인복지법에서 장애인 전체에 관한 법으로 청각장애학생의 언어권과 관련

하여 장애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 교육방법과 연관하여 언어를 선택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2.3.1.4.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교육과 관련된 것은 동법 제2절 교육의 13절, 14절에 명시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다. 13절 차별금지 1항 “교육책임자는 장애인의 입학 지원 및 입학을 거부할 수 없고, 전학을 강요할 수 없으며,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 급 학교는 장애인이 당해 교육기관으로 전학하는 것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3조 “교육책임자는 당해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 및 그 보호자가 제14조제1항 각 호의 편의 제공을 요청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4조 “교육책임자는 특정 수업이나 실험·실습, 현장견학, 수학여행 등 학습을 포함한 모든 교내외 활동에서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참여를 제한, 배제,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였으며, 5조 “교육책임자는 취업 및 진로교육, 정보제공에 있어서 장애인의 능력과 특성에 맞는 진로교육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7조 “교육책임자는 장애인의 입학 지원 시 장애인 아닌 지원자와 달리 추가서류, 별도의 양식에 의한 지원 서류 등을 요구하거나,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면접이나 신체검사, 추가시험 등(이하 “추가서류 등”이라 한다)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추가서류 등의 요구가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시행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4조는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로 1항 2, 3, 4, 5에 있으며 다음과 같다. 1항의 2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 교육보조인력의 배치”와 3의 “장애로 인한 학습 참여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확대 독서기, 보청기기, 높낮이 조절용 책상, 각종 보완·대체 의사소통 도구 등의 대여 및 보조건의 배치나 휠체어의 접근을 위한 여유 공간 확보”, 4의 “시·청각 장애인의 교육에 필요한 수화통역, 문자통역(속기), 점자자료, 자막, 큰 문자자료, 화면낭독·확대 프로그램, 보청기기, 무지점자단말기,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를 포함한 각종 장

애인보조기구 등 의사소통 수단”과 5의 “교육과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학습 진단을 통한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의 제공”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청각장애학생들의 교육과 관련하여 보청기와 수화통역 문자통역(속기) 등을 지원하도록 명시 하였으며, 언어를 선택하여 학습할 수 있도록 편의제공에 대한 의무를 비교적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청각장애학교의 경우 보청기에 대한 지원은 교육부차원에서 잘 이루어지고 있으나 수화통역이나 문자통역에 대한 지원들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2.3.1.5. 장애인권리협약

장애인권리협약은 국제연합 총회에서 2006년 채택한 것으로 우리나라는 2007년3월 30일 서명하였다. 국내에서 2009년 1월 10일 발효되었으며 50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청각장애인들의 교육에 관한 것은 제24조 3항과 4항에 명시되어 있다.

3항 “당사국은 장애인의 교육에 대한 완전하고 평등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생활 및 사회성 발달 능력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하여, 당사국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3항 가 “점자, 대체문자, 대안적인 의사소통의 방식, 수단 및 형식, 적응지도 및 이동능력에 대한 학습을 촉진하고, 동료집단의 지원과 조언을 촉진할 것”

3항 나 “수화 학습 및 청각장애인 단체의 언어 정체성이 증진될 수 있도록 촉진할 것”

3항 다 “특히 시각, 청각 또는 시·청각 장애를 가진 아동을 포함하여 이러한 장애를 가진 장애인의 교육이 개인의 의사소통에 있어 가장 적절한 언어, 의사소통 방식 및 수단으로 학업과 사회성 발달을 극대화하는 환경에서 이루어지도록 보장할 것”

4항 “이러한 권리 실현의 보장을 돕기 위하여, 당사국은 장애인 교사를 포함하여 수화 그리고 점자언어 활용이 가능한 교사를 채용하고 각 교육 단계별 전문가와 담당자를 훈련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그러한 훈련은 장애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적절한 보완적이며 대인적인

방식, 수단 및 형태의 의사소통, 교육기법 및 교재의 사용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장애인권리협약은 시·청각장애학생들을 위한 적절한 언어와 의사소통방식으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명시되어 있다. 특히 장애인 교사를 포함하여 수화가 가능한 교사를 채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청각장애학생들이 선택한 언어에 따른 교육환경과 습득에 보다 나은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명시 하였으나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세부조항이나 조치에 대한 내용들이 부족하다. 따라서 청각장애학생들의 학습권 확보와 언어 사용을 위하여 보다 명확한 내용이 명시되어야 한다.

2.3.1.6. 특수학교 교육과정

특수학교 교육과정에서 청각장애학생들의 언어와 관련된 것을 보면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 청각장애학교 교육과정은 1967년 4월 문교부령 제 181호인 ‘교육과정령’에 의해 처음으로 제정·공포하였다. 특수학교 교육과정에서 청각장애학생의 언어인 수화와 관련된 것은 2차 청각장애학교 교육과정(1983. 문교부 고시 83-13호)의 요육활동 중 언어표현 활동 영역에서 수화지도가 포함되어 있다. 2차 교육과정에서 수화지도는 지문자 익히기, 수화 익히기로 되어 있으며, 수화 익히기는 표준수화 익히기와 어법에 맞는 수화 익히기로 편성되어 있다.

3차 청각장애학교 교육과정(1989. 문교부 고시 89-10호)의 요육활동 언어수용과 언어표현에 수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편성하였으며, 이에 따라서 교육부에서는 장학자료로 한글식표준수화(1991)를 편찬하였다. 3차 교육과정에서는 초등학교에서도 수화를 지도할 수 있도록 편성하였다.

4차 농학교 교육과정(1998.6.30)에서는 요육활동이 삭제되므로 수화지도가 교육과정에 편성되어 있지 않고 청각장애학생들에게 적용하는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선수 능력으로서 언어 및 언어 기능을 기를 수 있도록 수화하기와 수화이해하기를 포함한 ‘언어’ 교과서를 개발하여 청각장애학교에서 재량시간에 선택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였다.

이상으로 청각장애학교에서 적용된 교육과정을 살펴 본 결과 1980년대에 수화가 부분적으로 도입되었다가 1990후반부터 오히려 정규 교육과정에 삭제되어

있다. 다만 청각장애학교의 재량시간에 부분적으로 수화를 지도하는 학교가 있다. 그러나 수화를 지도하는 교사나 강사들에 대한 보수교육이나 교재 등 많은 문제점이 있는 상태에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3.1.7. 개정 특수학교교육과정

개정 특수학교교육과정(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 2008-3호)은 2009년 3월부터 적용 년도 별로 적용된다. 개정 특수학교 교육과정도 4차 농학교 교육과정과 같이 ‘언어’ 교과서가 개발되었다. 그러나 언어교과서의 내용면에서 이전의 내용과 조금 다르게 집필되었다. 이전의 언어교과서는 수화가 한글의 학습을 위하여 개발되었다면 이번의 언어 교과서는 총론의 내용으로 보아 한국수화(Korean Standard Language: KSL)를 중심으로 하여 개발하였다고 볼 수 있다.

개정 특수학교 교육과정(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 2008-3호)에 따르면 청각장애 학습자를 위한 국어 교과는 청각장애로 인한 취학 전 언어 발달 지연을 보상하고, 학습자의 의사소통 능력과 글을 읽고 쓰는 능력의 향상에 주안점을 두었으며, 이를 위해 ‘듣기·수화 읽기·말 읽기’, ‘말·수화하기’, ‘읽기’, ‘쓰기’의 네 가지 영역의 교수·학습이 상호 유기적인 관련을 맺으면서 통합적으로 운용되도록 하였다. 특히, 청각장애 학습자가 사용하는 의사소통 양식에 따라 언어 기능을 신장시키고, 학습 성취 수준에 따른 개별화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개발되었다.

이번 개정 교육과정의 청각장애학교 국어와 영어 교과서는 청각장애학생들에게 언어를 선택하여 학습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고 볼 수 있다.

2.3.2. 국외의 학습 관련 법령과 제도

외국의 청각장애학생 학습과 관련한 법령과 제도를 미국과 유럽의 프랑스, 노르웨이, 스웨덴, 독일, 덴마크,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3.2.1. 미국

미국 공립학교의 경우 장애인교육법에 명시한 것에 따라 프로그램의 접근성

을 보장하기 위해 청각장애인에게 보청장치 또는 수화통역을 제공하며, 공립학교 프로그램에 청각장애인의 부모나 보호자가 참가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효과적으로 의사소통을 위해 근본적인 프로그램의 변경이나 부당한 부담이 되지 않는 한 적절한 보청장비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립학교의 경우 청각장애학생을 위한 보청장치 또는 서비스로는 자격증을 갖춘 수화통역 가능자, 청각장애인용 통신 장치, 비디오텍스트 화면 등이 포함되도록 하였다.

미국의 경우 공·사립에 관계없이 청각장애학생들의 학습을 위하여 학교에 보청기 등과 자격이 있는 수화통역사를 배치하여 학습에 불편함을 없도록 지원하고 있다.

2.3.2.2. 프랑스

프랑스의 경우 청각장애학생들은 파비우스 법(1991)에 따라 공교육을 통한 두 가지 언어(수화와 프랑스어 작문 및 말하기) 습득이 가능 하도록 하였다. 또한 프랑스 청각장애학생들은 두 가지 언어 즉, 프랑스 수화언어와 프랑스어 중에서 자신이 배우고자 하는 교육과정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가 있다.

2.3.2.3. 노르웨이

노르웨이는 1997년 초등교육 법령에 규정하는 조항으로 수화로 교육받을 권리가 명시되어 있다. 1998년 유치부와 초·중등부 교육법령 2절 6항에 노르웨이수화를 제1언어로 선택한 학생들은 수화로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하였다.

2.3.2.4. 스웨덴

스웨덴 의회 1999년 청각장애로 인하여 일반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 스웨덴 수화 환경이 필요하다는 안건에 동의했다. 교육법(1998년, 1999년)은 청각장애 학생들과 관련하여 학교가 추구해야 할 목표로 이중 언어 교육체제와 영어 글쓰기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제시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중 언어교육 체제: 스웨덴 수화를 이용하여 스웨덴어로 된 책을 읽고 수화와 글을 통해서 그들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영어 글쓰기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양성한다.

스웨덴의 경우 청각장애학생들이 청각장애학교에 재학할 경우 이중 언어 교육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적용하여 영어로 글쓰기를 할 수 있도록 교육법에 명시하였다. 스웨덴은 청각장애학생들이 언어를 선택할 수 있고 또 선택한 언어에 대한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가지고 바르게 교육하고 있는 나라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청각장애학생이 선택한 언어 환경에 맞게 적절한 언어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2.3.2.5. 독일

청각장애교육에 있어서 구화교육을 강조한 독일의 경우 1990년 초반까지만 해도 학교 수업의 일부만을 수화로 진행했을 뿐 대부분은 구화로 교육을 하였다. 현재 수화 사용이 점점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청각장애학생을 위한 특수교육은 독일 수화로 수업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청각장애학생들에게 구화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한 국가였으나, 현재는 학생들이 선택한 언어를 존중하고 있으며, 선택한 독일수화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체계화한 국가이다.

2.3.2.6. 덴마크

덴마크수화는 1991년 이후 학교의 교과과정에서 독립된 과목으로 자리를 잡아 왔다. 덴마크수화 과목의 목적은 청각장애아동들이 덴마크수화에 대한 이해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들의 언어사용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또한 청각장애 학생들을 가르치는 대부분의 교사들은 처음부터 덴마크수화를 배워야 교직을 할 수 있다.

덴마크 청각장애아동의 교육은 수화를 사용하는 이중 언어 교육체제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교육과 대화 및 표현은 반드시 덴마크수화로 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청각장애아동들은 외국어로 덴마크어를 배운다.

2.3.2.7. 이탈리아

이탈리아 가정의 부모들은 청각장애 자녀를 위해 이중 언어(이탈리아수화와 이탈리아어) 교육시스템을 선택하고 있다. 이탈리아 정부는 수업 진행을 위해 보조교사를 제공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 보조교사는 청각장애인이 하고 있다.

교사자격은 교육부가 인정하는 자격요건에 따라 수화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하며, 보조교사는 수화통역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교사와 같이 조를 이루어 수업진행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게 한다.

유럽연합의 대부분 국가들은 이중 언어 프로그램을 선택하고 있는 것과 같이 이탈리아도 이중 언어 교육을 선택한 청각장애학생들을 위하여 청각장애인보조교사제를 운영하고 있다. 국내의 청각장애학교 중에도 보조교사를 출신학교의 졸업생을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는 학교가 있다.

이상으로 교육관련 국내외 법령과 제도를 조사한 결과 미국과 유럽 등의 국가들은 청각장애학생들이 자유롭게 언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선택한 언어에 대한 지원도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국내의 교육관련 법령과 제도의 조항들은 청각장애인들이 언어를 선택할 수 있으나, 선택한 언어에 대한 지원부분이 빠져있거나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청각장애학생들이 좋은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국내의 법령과 제도를 우리의 교육환경에 맞게 수정 보완할 필요가 있다.

2.4. 청각장애인의 언어 사용 관련 법령 및 제도의 문제점

청각장애인의 언어권과 관련하여 의사소통, 정보이용, 학습을 중심으로 국내외 법령과 제도를 조사한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제시한다.

2.4.1. 의사소통

청각장애인들의 의사소통에 대하여 교육 관련법이나 교육과정, 장애인법 등에서 부분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이에 따른 문제점으로 다음과 같이 생각할 수 있다.

첫째, 청각장애인들 중 수화를 제1언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수화언어를 인정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수화를 아직 언어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의사소통 상황에서 다양한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

둘째, 전문수화통역사 양성에 대한 문제가 있다. 외국의 경우 의료, 법률, 직업, 예술, 교육 등 다양한 영역에서 전문수화통역사 제도와 함께 자격증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전문수화통역사 양성 기간이 부족하여 청각장애인들이 의사소통 시에 불편함과 함께 많은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셋째, 청각장애와 함께 다른 장애를 수반한 사람들을 위한 의사소통의 지원과 전문가 양성이 없다. 외국의 경우 시·청각 중복장애인을 위한 양성과 전문자격증제도인 맹·농통역사 자격증이 있지만 국내는 없는 실정이다. 이에 대한 양성과 지원이 필요하다.

2.4.2. 정보이용

청각장애인들의 정보이용에 대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각장애인들의 정보이용을 위한 교육이 정부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정보문화진흥원에서 2008년까지 전국의 농아인단체에 지원을 하여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2009년부터 정보문화진흥원에서 정보화교육에 대한 강사 인건비만 지원하고 운영에 대한 것은 지방으로 이양되었다. 이에 따라 지방에서 정보화 교육에 비용지원과 관리 및 평가 등을 하여야 한다. 지방으로 이양되어 실시할 경우 지방의 재정 상황에 따라 지원 등이 달라 질 수 있다. 따라서 보다 내실 있는 정보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지원과 관리가 필요하다.

둘째, 텔레비전방송의 자막과 수화통역 방송의 편성이 부족하다. 외국의 경우 자막과 수화통역 방송을 우리보다 월등히 많이 편성하고 있다. 따라서 자막과 수화통역을 보다 많이 편성하여야 한다.

셋째, 정보 관련 강의할 청각장애인 강사의 양성이 없다. 영국이나 일본 등은 공영방송 프로그램에서 청각장애인들이 수화로 방송관련 일들을 직접 한다. 국내에서도 정보와 관련된 강의를 청각장애인 강사들이 수화로 교육할 수 있도록

강사 양성이 필요하다.

2.4.3. 학습

청각장애 학생들의 학습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것을 문제점으로 생각할 수 있다.

첫째, 청각장애학생들을 위한 교육 관련 단일법이 없다. 외국의 사례처럼 청각장애학생의 교육지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제시된 법이 없다. 국내는 교육관련법과 특수학교 교육과정, 장애인 관련법 등에 부분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청각장애학생들의 선택한 언어에 따른 교육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인 교육 관련 지원법이 필요하다.

둘째, 청각장애학생들의 언어선택에 따른 교육 환경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 청각장애 학생들이 선택한 언어에 따라 청각장애학교 중에서 수화를 주된 의사로 사용하는 학교, 결합법 혹은 종합법을 사용하는 학교, 구화법을 사용하는 학교, 그리고 일반학교의 통합학급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을 위한 교육환경의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청각장애학교에서는 청각장애학생들을 위한 교육환경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통합된 청각장애학생들은 일반학생들의 환경에 포함되어 있지 그들을 위한 언어적 지원이 거의 없어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청각장애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을 위한 청각적 지원으로 FM보청기와 인공와우수술 등에 대한 지원이 있지만 수화를 선택한 학생들이 통합학급에 재학할 경우 수화통역은 거의 지원되지 않고 있다. 다만 국내의 아산과 대전 지역의 교육청에서 수업의 일부분만 지원하고 있다. 교육과 함께 청각장애부모와 교사의 상담 등 교육전반에 의사소통이 될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수화통역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셋째, 청각장애학생들을 지도할 교사들의 양성에 대한 문제이다. 청각장애학생들이 주된 언어를 수화로 선택할 경우 외국은 교사양성과정에서 수화를 이수하게 하였다. 그러나 현재 국내의 청각장애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사들은 수화를 대학 특수교사 양성과정에서 대부분 이수를 하지 못하였다. 그것은 대학 양성과정에서 장애영역별로 선택하여 전공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영역을 모두 이수하므로 수화를 대부분 이수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그 중 일부

교사는 교양으로 선택하였거나 관련 청각장애교과목에서 부분적으로 이수하였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청각장애학교 교사들 중에는 수화통역사 자격증을 받은 사람은 대부분 사회교육기관이나 종교기관에서 수화를 개인적으로 배워서 교육과 조금은 다른 수화통역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일이 나타나고 있다. 보다 바람직한 것은 청각장애학교 교사는 교육관련 전문수화를 양성과정에서 이수하게 하여야 하며, 현재 청각장애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사들을 위하여 수화통역사 자격증 취득보다는 보수교육으로 교육수화를 이수하게 하여 수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조사 방법

3.1. 청각장애인의 언어 사용 실태 조사

3.1.1. 조사 대상

이 조사에서는 청각장애인의 언어 사용 실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10대에서 60대까지의 청각장애인 1,300명을 대상으로 면접 조사를 하였다. 조사 대상의 표집은 등록된 청각장애인 203,324명 중 10세 미만과 70세 이상, 그리고 장애등급 4~6급을 제외한 58,123명(보건복지가족부, 2008)을 모집단으로 하여 1,300명을 성별·지역별·연령층별로 층화표집 하였다. 표본 크기를 이와 같이 하였을 때의 표본 오차는 $\pm 2.72(95\%$ 신뢰수준)이다. 표집 된 조사 대상 청각장애인 1,300명의 성별·지역별·연령층별 인원수는 <표 3.1>과 같다.

<표 3.1> 표집 된 조사 대상 청각장애인의 성별·지역별·연령층별 인원수 (단위: 명)

지역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총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서울	6	5	11	8	6	14	13	11	24	26	20	46	29	21	50	42	29	71	216
부산	2	2	4	3	2	5	4	4	8	9	7	16	10	7	17	14	10	24	74
대구	2	1	3	2	2	4	3	3	6	7	5	12	8	6	14	11	7	18	57
인천	2	2	4	2	2	4	4	3	7	8	6	14	9	7	16	13	9	22	67
광주	1	1	2	1	1	2	2	2	4	5	4	9	6	4	10	8	6	14	41
대전	1	1	2	1	1	2	2	2	4	4	3	7	5	4	9	7	5	12	36
울산	1	1	2	1	1	2	2	2	4	4	3	7	4	3	7	6	4	10	32
경기	6	6	12	8	7	15	14	12	26	28	21	49	32	23	55	46	32	78	235
강원	2	1	3	2	2	4	3	3	6	7	5	12	8	6	14	11	8	19	58
충북	1	1	2	2	2	4	3	3	6	6	5	11	7	5	12	10	7	17	52
충남	2	2	4	2	2	4	4	3	7	8	6	14	10	7	17	14	9	23	69
전북	2	2	4	3	2	5	4	4	8	7	7	14	10	7	17	14	10	24	72
전남	3	2	5	3	3	6	5	5	10	11	8	19	13	9	22	18	12	30	92

지역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총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경북	3	2	5	3	3	6	5	5	10	11	8	19	13	9	22	18	12	30	92
경남	2	2	4	3	3	6	5	4	9	11	8	19	12	9	21	17	12	29	88
제주	1	0	1	1	1	2	1	1	2	2	2	4	2	2	4	4	2	6	19
계	37	31	68	45	40	85	74	67	141	154	118	272	178	129	307	253	174	427	1,300

주: 등록장애인 현황(보건복지부, 2008)의 전국장애인(등급·연령·남녀)현황과 시도별 장애인 현황을 분석하여 모집단을 산출하고, 그 집단에서 추출함 표본임.

조사 대상을 표집할 때에 70세 이상을 제외한 이유는, 등록 청각장애인 중 70세 이상이 79,932 명으로 39.3%를 차지한다. 따라서 70세 이상을 포함을 시키게 되면 조사 결과에 70세 이상 고령자의 실태가 지나치게 반영되기 때문이다. 또한 이 조사에서는 어린 아동을 제외하기로 하였는데, 연령 급간을 10년으로 정하였기 때문에 어린 아동을 제외시키기 위해 10세 미만을 조사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그리고 장애등급 4~6급을 제외한 이유는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장애등급 4~6급은 귀로 말을 들을 수 있는 난청이며, 따라서 이들은 청인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 2009).

[청각장애인 장애 등급]

2급: 두 귀의 청력을 각각 90데시벨(dB) 이상 잃은 사람(두 귀가 완전히 들리지 아니하는 사람)

3급: 두 귀의 청력을 각각 8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귀에 입을 대고 큰 소리로 말을 하여도 듣지 못하는 사람)

4급: 1. 두 귀의 청력을 각각 7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귀에 대고 말을 하여야 들을 수 있는 사람)

2.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량(最良)의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

5급: 두 귀의 청력을 각각 6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발생된 말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

6급: 한 귀의 청력을 80데시벨 이상 잃고, 다른 귀 청력을 4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

이들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면접 조사 결과 1,235부의 조사서가 수집되었으며, 이 중에서 기재 사항 등이 누락된 조사서 19부를 제외한 1,216부를 분석 자료로 삼았다. 분석 대상 청각장애인 1,216명의 성별·지역별·연령층별 인원수는 <표 3.2>와 같다.

<표 3.2> 분석 대상 청각장애인의 성별·지역별·연령층별 인원수 (단위: 명)

지역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총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서울	5	4	9	7	5	12	13	11	24	25	21	46	29	21	50	35	24	59	200
부산	0	0	0	3	2	5	4	4	8	9	7	16	10	7	17	14	9	23	69
대구	2	1	3	2	2	4	3	3	6	7	5	12	8	6	14	11	7	18	57
인천	2	2	4	2	2	4	5	3	8	7	4	11	8	9	17	10	8	18	62
광주	0	0	0	2	1	3	1	2	3	5	5	10	8	6	14	5	2	7	37
대전	1	1	2	1	2	3	2	2	4	5	3	8	4	4	8	7	5	12	37
울산	1	1	2	1	1	2	2	2	4	4	3	7	4	3	7	5	3	8	30
경기	5	2	7	11	11	22	18	21	39	31	25	56	23	17	40	26	24	50	214
강원	2	1	3	2	2	4	3	1	4	7	4	11	8	6	14	10	8	18	54
충북	1	1	2	2	1	3	3	3	6	6	5	11	8	5	13	9	7	16	51
충남	1	1	2	2	2	4	4	3	7	6	2	8	1	2	3	14	9	23	47
전북	2	2	4	3	2	5	4	3	7	7	7	14	10	7	17	14	11	25	72
전남	3	1	4	3	4	7	9	4	13	10	11	21	12	9	21	18	8	26	92
경북	3	1	4	3	4	7	5	5	10	11	8	19	13	9	22	17	12	29	91
경남	2	1	3	3	4	7	5	3	8	11	8	19	10	9	19	17	12	29	85
제주	1	0	1	1	1	2	1	1	2	2	2	4	2	2	4	4	1	5	18
계	31	19	50	48	46	94	82	71	153	153	120	273	158	122	280	216	150	366	1,216

그리고 청각장애인의 청력 손실 정도에 따른 언어 사용 실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서울 소재 농학교의 만 3세부터 20세까지의 농학생 201명을 대상으로 면접 조사를 하였다. 이 중에서 기재 사항 등이 누락된 조사서 19부를 제외한 182부를 분석 자료로 삼았다. 분석 대상 농학생 182명의 성별·연령별 인원수는 아래의 <표 3.3>과 같다.

<표 3.3> 분석 대상 농학생의 성별·연령층별 인원수

(단위: 명)

구 분	5세 이하	6~10세	11~15세	16~20세	계
남	13	32	37	19	101
여	13	16	35	17	81
계	26	48	72	36	182

3.1.2. 조사 도구

청각장애인의 언어 사용 실태를 알아보기 위한 조사서는 일반 사항에 관한 문항 6개, 청각장애 정도에 관한 문항 4개, 의사소통에 관한 문항 12개, 가족과의 의사소통에 관한 문항 8개, 자녀 양육에 관한 문항 4개, 한국어 능력에 관한 문항 5개, 수화통역사에 관한 문항 6개, 방송 및 인터넷 정보 접근 실태에 관한 문항 11개, 학교 교육에서의 수화 사용에 관한 문항 6개, 사회생활 속에서의 의사소통에 관한 문항 4개, 보청기와 인공와우의 장단점에 관한 문항 4개로, 11가지 영역에 총 7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부록 참조).

청각장애인의 언어 사용 실태 조사서의 영역별 구성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영역은 조사 대상의 일반 사항을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서, 성별, 연령, 혼인 여부, 학력, 특수학교/일반학교 여부, 직업 등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두 번째 영역은 청각장애 정도에 대하여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서, 이들이 사용하고 있는 재활 보조기구, 청력 손실정도, 청각장애가 일어난 시기, 청각장애의 원인 등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 번째 영역은 의사소통 수단에 대해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타인과 의사소통을 할 때 사용하는 형식, 수화 수준, 수화 습득 시기, 구화(말) 사용 여부, 음성 언어 이해 정도 등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네 번째 영역은 가족과의 의사소통에 관련된 문항으로서, 수화에 대한 가족의 생각, 가족의 수화사용 여부, 가족의 수화 사용 수준, 가족과의 대화 정도 등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섯 번째 영역은 건청 자녀 양육에 대한 문항으로서, 건청 자녀 양육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 등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섯 번째 영역은 한국어 능력에 대해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수화 또는 구화교육이 한국어 습득에 미치는 영향, 한국어 실력, 한국어를 배울 때 어려웠던 점 등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곱 번째 영역은 수화통역사에 관한 문항으로서, 수화 통역사의 통역 경험, 통역 횟수, 통역을 받은 이유, 수화통역의 장단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덟 번째 영역은 방송 및 인터넷 정보 접근 실태에 대해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정보를 얻는 주된 매체, 자막 방송 시청 실태, 수화 통역 방송 시청 실태, 인터넷 정보 이해 정도 등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홉 번째 영역은 학교 교육에서의 수화 사용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열 번째 영역은 사회생활 속에서의 의사소통에 대해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직장생활 및 사회생활에서의 의사소통, 청인과의 교류, 다른 사람과의 통신 등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열한 번째 영역은 재활보조기기의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보청기 착용의 장단점, 인공와우 착용의 장단점 등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3.1.3. 조사 절차

이 조사는 2008년 11월부터 2009년 2월까지 4개월간 진행되었다. 11월에는 연구자들이 모여 연구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조사서를 제작하고 수정·보완하였다. 12월에는 조사서를 전국으로 배부하여 12월 말까지 수거 완료하였고, 1월에는 청각장애인의 언어권에 대한 법령과 제도 조사 및 수거된 자료를 통계 처리하였다. 그리고 2월에는 이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바탕으로 청각장애인의 언어 사용에 대한 정책 제언 및 종합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이 조사의 기간별 조사 진행 내용은 다음의 <표 3.4>와 같다.

이 조사에 참여한 조사원은 조사와 관련된 지침과 면접 조사 방법을 훈련 받

았으며, 조사는 조사 대상자와의 일대일 면접을 통해 이루어졌다. 참여한 조사원은 모두 163명이며 이들 중 146명이 농아인협회 직원으로 구성되었다.

조사원 163명 중 농인이 71명, 수화통역사가 63명, 청인이 29명으로, 조사 대상자 중에서 글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농인에게는 조사서를 수화로 통역하여 문항에 답할 수 있게 하였다. 이들 조사원 중 124명이 조사를 해 본 경험이 있어, 조사가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었다.

<표 3.4> 기간별 조사 진행 내용

기 간	내 용
2008. 11. 1. ~ 2008. 11. 30.	• 연구 위원 구성 • 조사 대상 및 표집 방법 결정 • 청각장애인 언어사용 실태 조사서 개발 및 수정
2008. 12. 1. ~ 2008. 12. 31.	• 자문위원과 조사서 최종 검토 • 조사서 배부 및 수거
2009. 1. 2. ~ 2009. 1. 31.	• 청각장애인의 언어권에 대한 법령과 제도 조사 • 통계 처리 및 해석
2009. 2. 1. ~ 2009. 2. 28.	• 청각장애인의 언어사용에 대한 정책 제안 • 종합 보고서 작성 및 인쇄

3.1.4. 자료 처리

조사 대상의 표집은 층화 표본 추출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등록된 청각장애인 중에서 농아인협회 회원인 청각장애인을 각 지역별·연령대별·성별로 비례 할당하여 표본을 추출하였다.

이 조사에서는 농학생 182명을 별도로 조사하였는데, 그 이유는 대부분의 청각장애인이 자신의 청력을 정확히 알지 못할 뿐더러 보청기 등의 재활보조기구를 착용하였을 때의 청력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들이 답한 조사서의 청력과 관련된 문항의 답은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다. 그러나 농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경우는 정확한 청력에 대한 자료를 얻을 수 있어서 청력과 관련된 조사 문항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조사서의 청력과 관련된 문항의 경우는 농학교 학생의 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수집된 조사서의 기록 오류 및 누락 사항을 점검하여 분석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료를 분류하였으며, 통계 처리를 위해 조사서를 부호화하고 Excel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자료를 입력 하였다. 그리고 SPSS ver 13.0 프로그램으로 통계처리 하였다.

3.2. 수화와 수화 사용자에게 대한 청인의 인식 및 이해도 조사

3.2.1. 조사 대상

이 조사에서는 수화와 수화 사용자에게 대한 청인의 인식 및 이해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만 10세 이상의 청인 1,000명을 대상으로 면접 조사를 하였다. 조사 대상의 표집은 총 인구 47,041,434명 중 10세 미만을 제외한 41,490,197명(통계청, 2005)을 모집단으로 하여 1,000명을 성별·지역별·연령층별로 층화표집 하였다. 표본 크기를 이와 같이 하였을 때의 표본 오차는 $\pm 3.10\%$ (95% 신뢰수준)이다. 표집된 조사 대상 청인 1,000명의 성별·지역별·연령층별 인원수는 <표 3.5>와 같다.

<표 3.5> 표집 된 조사 대상 청인의 성별·지역별·연령층별 인원수 (단위: 명)

지역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 이상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서울	16	14	30	22	22	44	22	21	43	19	20	39	14	14	28	8	9	17	4	6	10	211
부산	6	5	11	7	7	14	6	7	13	7	8	15	6	6	12	3	4	7	1	3	4	76
대구	5	4	9	5	5	10	5	5	10	5	5	10	3	3	6	2	2	4	1	2	3	52
인천	5	4	9	5	5	10	5	6	11	6	6	12	3	3	6	2	2	4	1	2	3	55
광주	3	3	6	3	3	6	3	3	6	3	3	6	2	2	4	1	1	2	0	1	1	31
대전	3	2	5	3	3	6	3	3	6	3	3	6	2	2	4	1	1	2	1	1	2	31
울산	2	2	4	2	2	4	2	2	4	2	2	4	1	1	2	1	1	2	0	0	0	20
경기	19	17	36	19	18	37	24	25	49	23	21	44	12	11	23	7	8	15	4	7	11	215

지역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 이상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강원	2	2	4	3	2	5	3	3	6	3	3	6	2	2	4	2	2	4	1	2	3	32
충북	3	2	5	3	2	5	3	3	6	3	3	6	2	2	4	1	2	3	1	2	3	32
충남	3	3	6	3	3	6	4	3	7	4	3	7	2	2	4	2	2	4	2	3	5	39
전북	3	3	6	3	3	6	3	3	6	3	3	6	2	2	4	2	2	4	1	2	3	35
전남	3	3	6	3	2	5	3	3	6	3	3	6	3	3	6	2	3	5	2	3	5	39
경북	4	4	8	5	4	9	5	5	10	5	5	10	4	4	8	3	3	6	2	4	6	57
경남	5	5	10	5	5	10	6	6	12	6	6	12	4	4	8	3	3	6	2	3	5	63
제주	1	1	2	1	1	2	1	1	2	1	1	2	1	1	2	0	1	1	0	1	1	12
계	83	74	157	92	87	179	98	99	197	96	95	191	63	62	125	40	46	86	23	42	65	1,000

주: 인구 총 조사(통계청, 2005)의 연령·성별 인구 현황을 분석하여 모집단을 산출하고, 그 집단에서 추출한 표본임.

조사 대상을 표집 할 때에 10세 미만을 제외한 이유는, 이 조사에서는 어린 아동을 제외하기로 하였는데, 연령 급간을 10년으로 정하였기 때문에 어린 아동을 제외시키기 위해 10세 미만을 조사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이들 청인을 대상으로 한 면접 조사 결과 948부의 조사서가 수집되었으며, 이 중 기재 사항 등이 누락된 조사서 15부를 제외한 933부를 분석 자료로 삼았다. 분석 대상 청인 933명의 성별·지역별·연령층별 인원수는 <표 3.6>과 같다.

<표 3.6> 분석 대상 청인의 성별·지역별·연령층별 인원수

(단위: 명)

지역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 이상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서울	16	14	30	22	22	44	22	21	43	19	20	39	13	13	26	8	8	16	4	5	9	207
부산	6	5	11	7	6	13	6	7	13	7	8	15	6	7	13	2	4	6	1	3	4	75
대구	5	4	9	5	5	10	5	5	10	5	5	10	3	3	6	2	2	4	1	2	3	52
인천	6	4	10	4	5	9	4	6	10	6	6	12	3	3	6	2	2	4	1	2	3	54
광주	3	3	6	2	4	6	3	3	6	3	3	6	2	3	5	0	1	1	0	1	1	31
대전	3	2	5	3	3	6	4	3	7	1	3	4	2	2	4	1	1	2	0	1	1	29

지역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 이상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울산	2	2	4	2	2	4	2	2	4	2	2	4	1	1	2	1	1	2	0	0	0	20
경기	14	13	27	16	17	33	20	26	46	20	29	49	10	11	21	2	5	7	3	3	6	189
강원	1	2	3	2	1	3	2	1	3	4	5	9	1	2	3	2	2	4	1	2	3	28
충북	3	2	5	3	4	7	3	1	4	3	3	6	2	2	4	1	2	3	1	2	3	32
충남	1	0	1	3	3	6	4	3	7	1	1	2	0	0	0	0	1	1	0	0	0	17
전북	3	3	6	3	3	6	3	3	6	3	2	5	2	2	4	2	2	4	1	2	3	34
전남	1	3	4	3	3	6	4	5	9	2	3	5	2	3	5	2	3	5	2	1	3	37
경북	4	4	8	5	4	9	5	5	10	5	5	10	4	4	8	3	3	6	3	3	6	57
경남	6	4	10	3	4	7	6	7	13	7	9	16	4	4	8	3	3	6	0	0	0	60
제주	1	1	2	0	1	1	1	1	2	1	1	2	1	1	2	0	1	1	0	1	1	11
계	75	66	141	83	87	170	94	99	193	89	105	194	56	61	117	31	41	72	18	28	46	933

3.2.2. 조사 도구

수화와 수화 사용자에 대한 청인의 인식 및 이해도 조사서는 수화에 관한 문항 1개, 수화의 날에 관한 문항 2개, 수화의 사용에 관한 문항 3개, 수화 지도에 관한 문항 2개, 수화통역에 관한 문항 1개, 수화 활용에 관한 문항 4개, 수화사용 청각장애인에 관한 문항 1개로, 7가지 영역에 총 1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부록 참조).

수화와 수화 사용자에 대한 청인의 인식 및 이해도 조사서의 영역별 구성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영역은 수화에 대한 것으로서, 수화를 언어로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두 번째 영역은 수화의 날에 대한 것으로서, 수화의 날을 제정하는 것이 좋은지, 제정한다면 언제가 좋은지에 대한 문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 번째 영역은 수화의 사용에 대한 것으로서, 수화 사용자가 수화로 가정생활·학교생활·직장생활을 할 수 있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네 번째 영역은 수화 지도에 대한 것으로서, 수화 지도 시기, 청인의 수화 교육 등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섯 번째 영역은 수화통역에 대한 것으로서, 수화 사용자는 원하는 곳에서 수화통역을 받을 수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섯 번째 영역은 수화 활용에 대한 것으로서, 수화 사용자를 위한 통신, 방송, 출판물 등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곱 번째 영역은 수화 사용 청각장애인에 대한 것으로서, 청각장애인의 능력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3.2.3. 조사 절차

이 조사는 2008년 11월부터 2009년 2월까지 4개월간 진행되었다. 11월에는 연구자들이 모여 연구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조사서를 제작하고 수정·보완하였다. 12월에는 조사서를 전국으로 배부하여 12월 말까지 수거 완료하였고, 1월에는 수거된 자료를 통계 처리하였다. 그리고 2월에는 이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바탕으로 종합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이 조사의 기간별 조사 진행 내용은 <표 3.7>과 같다.

<표 3.7> 기간별 조사 진행 내용

기 간	내 용
2008. 11. 1. ~ 2008. 11. 30.	· 연구 위원 구성 · 조사 대상 및 표집 방법 결정 · 수화와 수화 사용자에 대한 청인의 인식 및 이해도 조사서 개발 및 수정
2008. 12. 1. ~ 2008. 12. 31.	· 자문위원과 조사서 최종 검토 · 조사서 배부 및 수거
2009. 1. 2 ~ 2009. 1. 31	· 통계 처리 및 해석
2009. 2. 1. ~ 2009. 2. 28.	· 종합 보고서 작성 및 인쇄

이 조사에 참여한 조사원은 조사와 관련된 지침과 면접 조사 방법을 훈련 받았으며, 조사는 조사 대상자와의 일대일 면접을 통해 이루어졌다. 참여한 조사원은 모두 136명이며 이들 중 123명이 농아인협회 직원으로 구성되었다. 조사원 136명 중 농인이 9명, 수화통역사가 93명, 청인이 34명이며, 이들 중 113명이 조사를 해 본 경험이 있어, 조사가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다.

3.2.4. 자료 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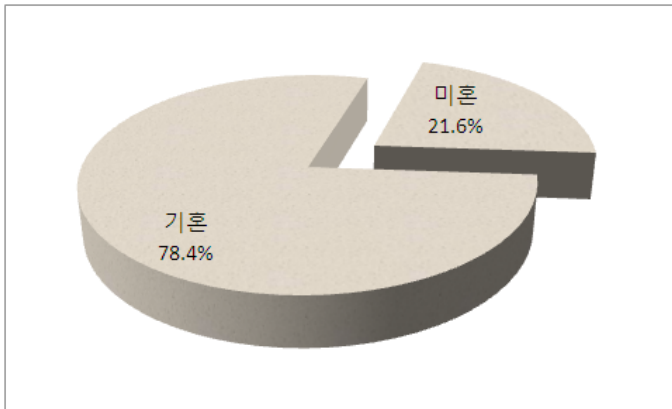
수집된 조사서의 기록 오류 및 누락 사항을 점검하여 분석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료를 분류하였으며, 통계 처리를 위해 조사서를 부호화하고 Excel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자료 입력을 하였다. 그리고 SPSS ver 13.0 프로그램으로 통계처리 하였다.

4. 청각장애인의 언어 사용 실태

4.1. 조사 대상의 특성

4.1.1. 혼인 여부

청각장애인의 혼인 여부에 대한 조사 분석 결과는 <그림 4.1>과 같이, 응답자 1,194명 가운데 78.4%는 결혼을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1.6%는 미혼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1> 청각 장애인의 결혼 여부

연령층별로 혼인 여부를 보면, <표 4.1>과 같이 20대에는 기혼 비율이 30.4%이지만 30대가 되면 73.2%, 60대에는 92.5%로 높게 나타났다.

<표 4.1> 연령층별 혼인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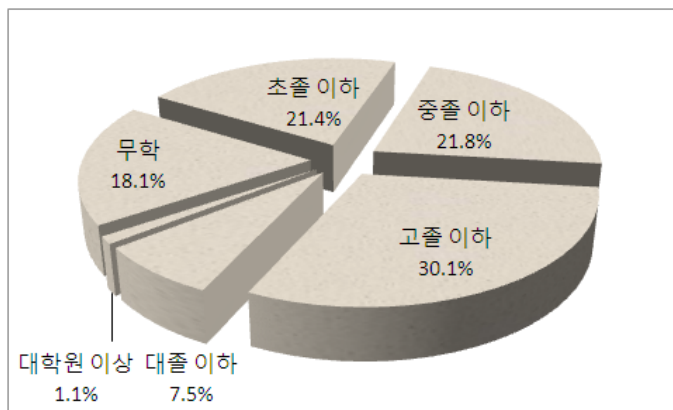
단위: 명(%)

구 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계
기혼	1(2.0)	28(30.4)	112(73.2)	220(81.5)	244(90.0)	331(92.5)	936(78.4)
미혼	49(98.0)	64(69.6)	41(26.8)	50(15.5)	27(10.0)	27(7.5)	258(21.6)
계	50(100)	92(100)	153(100)	270(100)	271(100)	358(100)	1,194(100)

결측치: 22명

4.1.2. 학력

청각장애인의 학력에 대한 조사 분석 결과는 <그림 4.2>와 같이, 응답자 1,205명 중 고등학교 졸업 이하가 30.1%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중학교 졸업 이하가 21.8%로 나타났다. 무학인 경우도 18.1%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2> 청각장애인의 학력

연령층별로 학력 수준을 보면, <표 4.2>와 같이 연령층이 높을수록 학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대의 경우에는 대학에 진학하는 비율이 30% 이상으로 나타났는데, 현재 학령기에 있는 청각장애인들의 진학에 대한 관심과 교육 수준을 볼 때 앞으로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표 4.2> 연령층별 학력

단위: 명(%)

구 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계
대학원 이상	0(0)	2(2.2)	4(2.6)	4(1.5)	1(0.4)	1(0.3)	12(1.0)
대졸 이하	2(4.1)	28(30.1)	28(18.3)	22(8.1)	9(3.3)	2(0.6)	91(7.6)
고졸 이하	30(61.2)	54(58.1)	87(56.9)	87(32.0)	62(22.5)	43(11.9)	363(30.1)
중졸 이하	13(26.5)	4(4.3)	23(15.0)	71(26.1)	79(28.6)	73(20.2)	263(21.8)
초졸 이하	3(6.1)	5(5.4)	7(4.6)	62(22.8)	77(27.9)	104(28.7)	258(21.4)
무학	1(2.0)	0(0)	4(2.6)	26(9.6)	48(17.4)	139(38.4)	218(1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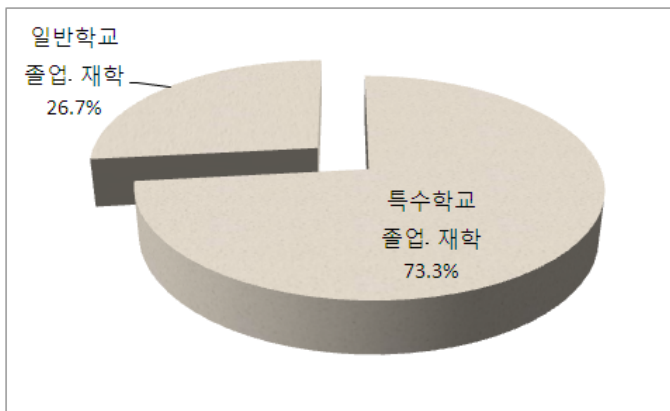
구 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계
계	49(100)	93(100)	153(100)	272(100)	276(100)	362(100)	1,205(100)

결측치: 11명

4.1.3. 특수학교/일반학교 여부

4.1.3.1. 재학/졸업 여부

조사 대상 청각장애인이 특수학교를 졸업(또는 재학 중)을 했는지, 일반학교를 졸업(또는 재학 중) 했는가에 대한 분석 결과는 <그림 4.3>과 같이, 응답자 932명 중에 73.3%가 특수학교를 졸업(재학)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26.7%는 일반학교를 졸업(재학)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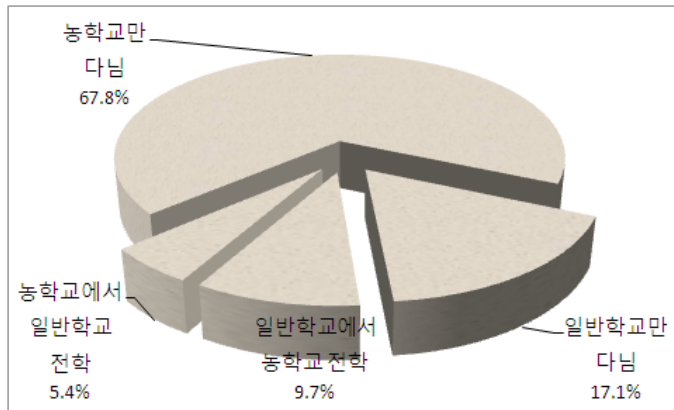


<그림 4.3> 특수학교/일반학교 여부

4.1.3.2. 일반학교/농학교 전학 여부

조사 대상 청각장애인이 농학교 또는 일반학교만 다녔는지, 아니면 전학을 한 경험이 있는가에 대한 조사 분석 결과는 <그림 4.4>와 같이, 응답자 928명 중 67.8%가 농학교만 다닌 것으로 나타났으며, 17.1%는 일반학교만 다닌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9.7%는 일반학교에서 농학교로 전학한 경험이 있으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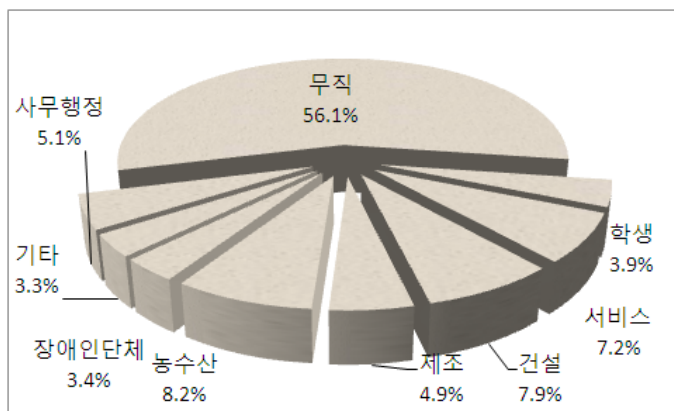
5.4%는 농학교에서 일반학교로 전학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4.4> 일반학교/특수학교 전학 여부

4.1.4. 직업

청각장애인의 직업에 대한 조사 분석 결과는 <그림 4.5>와 같이, 응답자 1,216명 중 직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56.1%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농수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8.2%,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7.9%,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7.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직업에는 종교 관련기관 종사자, 예술인, 사회복지 관련 기관 종사자, 교육 관련 종사자, 환경미화원 등이 있었다.



<그림 4.5> 청각장애인의 직업

연령층별로 종사하는 직업을 보면, <표 4.3>과 같이 연령층이 높을수록 농수산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40대와 50대 연령층에서 건설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20대부터 50대까지 무직이 차지하는 비율은 모두 비슷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3> 연령층별 직업

단위: 명(%)

구 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계
서비스업	1(2.0)	2(2.1)	8(5.2)	22(8.1)	32(11.4)	23(6.3)	88(7.2)
건설업	0(0)	2(2.1)	6(3.9)	31(11.4)	36(12.9)	21(5.7)	96(7.9)
제조업	0(0)	4(4.3)	13(8.5)	26(9.5)	15(5.4)	2(0.5)	60(4.9)
농수산업	0(0)	0(0)	2(1.3)	19(7.0)	27(9.6)	52(14.2)	100(8.2)
장애인단체	0(0)	9(9.6)	15(9.8)	8(2.9)	8(2.9)	1(0.3)	41(3.4)
사무행정	0(0)	16(17.0)	14(9.2)	24(8.8)	7(2.5)	1(0.3)	62(5.1)
학생	37(74.0)	9(9.6)	1(0.7)	0(0)	0(0)	0(0)	47(3.9)
무직	11(22.0)	42(44.7)	82(53.6)	136(49.8)	150(53.6)	261(71.3)	682(56.1)
기타	1(2.0)	14(10.6)	12(7.8)	7(2.5)	5(1.7)	5(1.7)	40(3.3)
계	50(100)	94(100)	153(100)	273(100)	280(100)	366(100)	1,216(100)

학력별로 종사하는 직업을 보면, <표 4.4>와 같이 학력이 낮을수록 농수산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학력이 높을수록 사무행정직 및 장애인단체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4> 학력별 직업

단위: 명(%)

구 분	무학	초졸 이하	중졸 이하	고졸 이하	대졸 이하	대학원이상	계
서비스업	9(4.1)	23(8.9)	28(10.6)	24(6.6)	3(3.3)	1(8.3)	88(7.3)
건설업	13(6.0)	34(13.2)	28(10.6)	20(5.5)	1(1.1)	0(0)	96(8.0)
제조업	6(2.8)	10(3.9)	12(4.6)	28(7.7)	4(4.4)	0(0)	60(5.0)
농수산업	36(16.5)	26(10.1)	23(8.7)	13(3.6)	1(1.1)	0(0)	99(8.2)
장애인단체	0(0)	2(0.8)	4(1.5)	12(3.3)	23(25.3)	0(0)	41(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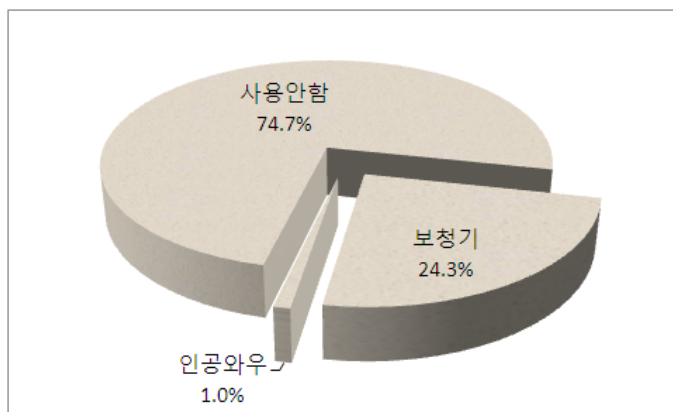
구 분	무학	초졸 이하	중졸 이하	고졸 이하	대졸 이하	대학원이상	계
사무행정	0(0)	5(1.9)	7(2.7)	38(10.5)	12(13.2)	0(0)	62(5.1)
학생	0(0)	3(1.2)	14(5.3)	20(5.5)	6(9.9)	0(0)	46(3.8)
무직	154(70.6)	154(59.7)	142(54.0)	195(53.7)	26(28.6)	2(16.7)	673(55.9)
기타	0(0)	1(0.3)	5(2.0)	13(3.6)	15(13.1)	9(75.0)	40(3.3)
계	218(100)	258(100)	263(100)	363(100)	91(100)	12(100)	1,205(100)

결측치: 11명

4.2. 청각 장애 정도

4.2.1. 재활보조기구 착용 여부

보청기나 인공와우 등의 재활보조기구 착용 여부에 대한 조사 분석 결과는 <그림 4.6>과 같이, 응답자 1,187명 중 아무것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경우가 74.7%로 나타났으며 보청기를 사용하는 사람이 24.3%, 인공와우를 사용하는 사람이 1.0%로 조사되었다.



<그림 4.6> 재활보조기구 착용 여부

연령층별 재활보조기구 착용여부를 보면, <표 4.5>과 같이 연령층이 낮을수록 보청기의 착용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표 4.5> 연령층별 재활보조기구 착용 여부

단위: 명(%)

구 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계
보청기	27(54.0)	33(36.3)	61(40.4)	66(24.4)	54(19.9)	47(13.3)	288(24.3)
인공와우	3(6.0)	1(1.1)	4(2.6)	1(0.4)	1(0.4)	2(0.6)	12(1.0)
사용안함	20(40.0)	57(62.6)	86(57.0)	203(75.2)	217(79.8)	304(86.1)	887(74.7)
계	50(100)	91(100)	151(100)	270(100)	272(100)	353(100)	1,187(100)

결측치: 29명

4.2.2. 청력 손실정도

청력 손실정도에 대한 조사 분석 결과는 <표 4.6>과 같이, 응답자 327명 중 청력 손실정도가 90~99dB인 경우가 38% 정도로 가장 많았으며, 청력 손실정도가 100dB 이상인 경우는 25% 정도로 나타났다.

<표 4.6> 청력 손실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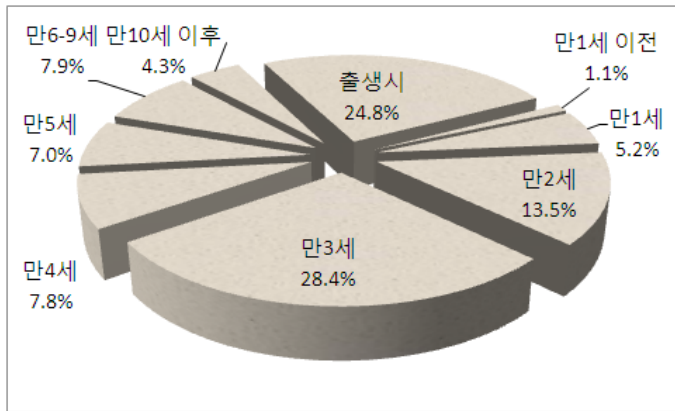
단위: 명(%)

구 분	20~ 29dB	30~ 39dB	40~ 49dB	50~ 59dB	60~ 69dB	70~ 79dB	80~ 89dB	90~ 99dB	100dB 이상	계
오른쪽 귀	2(0.6)	2(0.6)	12(3.7)	7(2.1)	13(4.0)	20(6.1)	55(16.8)	126 (38.5)	90(27.5)	327(100)
왼쪽 귀	2(0.6)	5(1.5)	5(1.5)	11(3.4)	14(4.3)	21(6.4)	64(19.6)	127 (38.8)	78(23.9)	327(100)

결측치: 889명

4.2.3. 청각장애 발생 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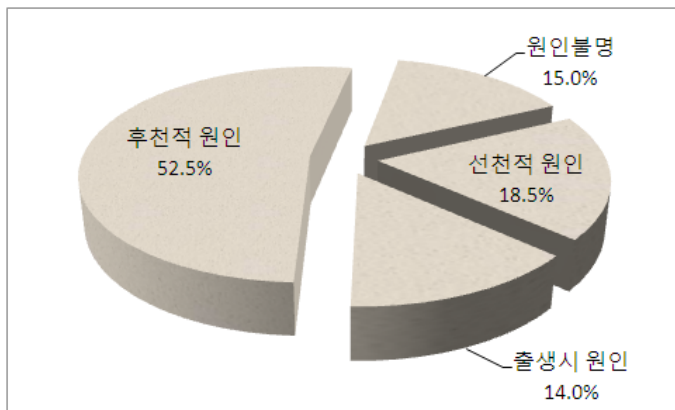
청각장애 발생 시기에 대한 조사 분석 결과는 <그림 4.7>과 같이, 응답자 1,174명 중 만 3세가 28.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출생시가 24.8%, 만 2세가 13.5% 순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4.7> 청각장애 발생 시기

4.2.4. 청각장애의 원인

청각장애의 주된 원인에 대한 조사 분석 결과는 <그림 4.8>과 같이, 응답자 1,125명 중 후천적 원인이 52.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선천적 원인이 18.5%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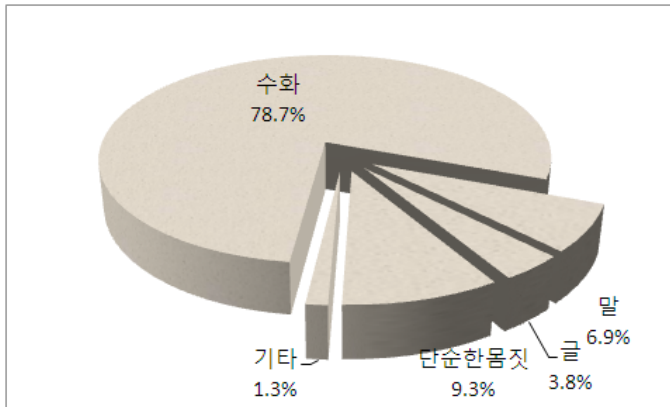


<그림 4.8> 청각장애의 원인

4.3. 의사소통 수단

4.3.1.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전달할 때 사용하는 의사소통 수단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전달할 때 주로 사용하는 의사소통 수단에 대한 조사 분석 결과는 <그림 4.9>와 같이, 응답자 1,199명 중 수화가 78.7%로 대부분의 청각장애인은 자신의 의사를 수화로 표현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4.9>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전달할 때 사용하는 의사소통 수단

연령층별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전달할 때 사용하는 의사소통 수단을 보면 <표 4.7>과 같이 전 연령층에서 수화를 사용하는 빈도가 높을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7> 연령층별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전달할 때 사용하는 수단 단위: 명(%)

구 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계
수화	38(79.2)	73(78.5)	125(82.8)	228(84.1)	226(81.9)	254(70.6)	944(78.7)
말	8(16.7)	8(8.6)	12(7.9)	13(4.8)	12(4.3)	30(8.3)	83(6.9)
글	2(4.2)	5(5.4)	5(3.3)	10(3.7)	11(4.0)	13(3.6)	46(3.8)
단순한 몸짓	0(0)	4(4.3)	7(4.6)	17(6.3)	21(7.6)	62(17.2)	111(9.3)
기타	0(0)	3(3.2)	2(1.3)	3(1.1)	6(2.2)	1(0.3)	15(1.3)
계	48(100)	93(100)	151(100)	271(100)	276(100)	360(100)	1,199(100)

결측치: 17명

학력별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전달할 때 사용하는 의사소통 수단을 보면

<표 4.8>과 같이, 무학의 경우에 그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에 비해 수화 사용빈도가 적고 단순한 몸짓을 사용하는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말을 사용하는 빈도는 대졸 이하가 다른 학력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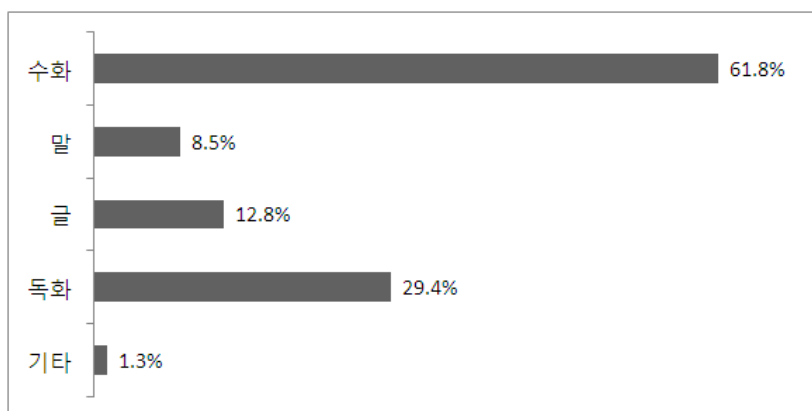
<표 4.8> 학력별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전달할 때 사용하는 수단 단위: 명(%)

구 분	무학	초졸 이하	중졸 이하	고졸 이하	대졸 이하	대학원이상	계
수화	130(61.0)	212(83.5)	225(86.2)	290(81.2)	68(74.7)	10(83.3)	935(78.7)
말	8(3.8)	17(6.7)	16(6.1)	25(7.0)	15(16.5)	1(8.3)	82(6.9)
글	2(0.9)	7(2.8)	15(5.7)	17(4.8)	4(4.4)	1(8.3)	46(3.9)
단순한 몸짓	72(33.8)	16(6.3)	4(1.5)	17(4.8)	1(1.1)	0(0)	110(9.3)
기타	1(0.5)	2(0.8)	1(0.4)	8(2.2)	3(3.3)	0(0)	15(1.3)
계	213(100)	254(100)	261(100)	357(100)	91(100)	12(100)	1,188(100)

결측치: 28명

4.3.2.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때 주로 사용하는 의사소통 수단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때 주로 사용하는 의사소통 수단에 대한 복수 응답 분석 결과는 <그림 4.10>과 같이 응답자의 61.8%가 수화라고 답하였으며 독화는 29.4%, 글은 12.8%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10>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때 주로 사용하는 수단(복수 응답)

연령층별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때 사용하는 의사소통 수단을 보면 <표 4.9>와 같이 연령층별로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9> 연령층별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때 사용하는 의사소통 수단 단위: 명(%)

구 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계
수화	31(62.0)	55(59.1)	85(56.3)	158(59.4)	180(65.9)	229(63.4)	738(61.8)
말	8(16.0)	12(12.9)	11(7.3)	20(7.5)	20(7.3)	31(8.6)	102(8.5)
글	7(14.0)	14(15.1)	19(12.6)	45(16.9)	34(12.5)	34(9.4)	153(12.8)
독화	20(40.0)	31(33.3)	60(39.7)	79(29.7)	61(22.3)	100(27.7)	351(29.4)
기타	0(0)	1(1.1)	1(0.7)	2(0.8)	6(2.2)	5(1.4)	15(1.3)

결측치: 22명

(복수 응답)

학력별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때 사용하는 의사소통 수단을 보면 <표 4.10>과 같이 학력 간에 큰 차이는 없으나, 글을 사용하는 경우는 학력이 높을 수록 그 빈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10 > 학력별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때 사용하는 의사소통 수단 단위: 명(%)

구 분	무학	초졸 이하	중졸 이하	고졸 이하	대졸 이하	대학원이상	계
수화	127(59.6)	179(71.9)	173(66.3)	199(55.7)	46(50.5)	6(50.0)	730(61.7)
말	8(3.8)	20(8.0)	21(8.0)	35(9.8)	14(15.4)	1(8.3)	99(8.4)
글	5(2.3)	31(12.4)	36(13.8)	59(16.5)	17(18.7)	4(33.3)	152(12.8)
독화	85(39.9)	42(16.9)	58(22.2)	123(34.5)	35(38.5)	5(41.7)	348(29.4)
기타	2(0.9)	5(2.0)	3(1.1)	5(1.4)	0(0)	0(0)	15(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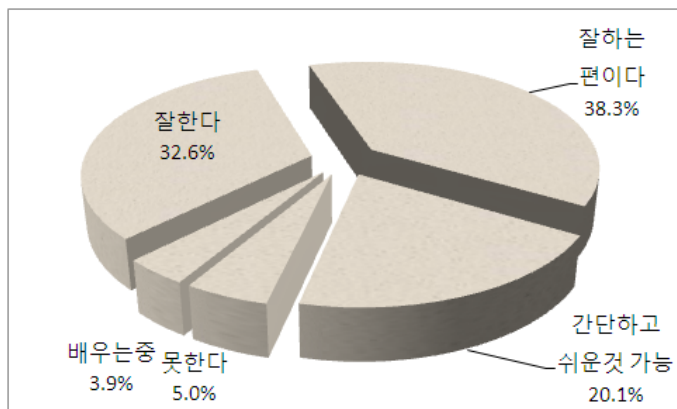
결측치: 33명

(복수 응답)

4.3.3. 수화를 할 수 있는 정도

수화를 할 수 있는 정도에 대한 조사 분석 결과는 <그림 4.11>과 같이, 응답자 1,192명 중 ‘잘하는 편이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38.3%이었으며, ‘잘한다’ 32.6%, ‘간단하고 쉬운 것 가능’ 20.1%, ‘전혀 수화를 하지 못한다’ 5.0%로 나타

나, 대부분의 청각장애인은 수화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4.11> 수화를 할 수 있는 정도

연령층별 수화를 할 수 있는 정도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 4.11>과 같이, 20~50대 연령층에서는 70% 이상이 수화를 비교적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0대 연령층에서는 수화를 못한다고 응답한 빈도가 다른 연령층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다.

<표 4.11> 연령층별 수화를 할 수 있는 정도

단위: 명(%)

구 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계
잘한다	7(14.0)	34(36.2)	58(38.9)	102(38.2)	119(43.6)	68(18.9)	388(32.6)
잘하는 편	27(54.0)	33(35.1)	66(44.3)	108(40.4)	93(34.1)	130(36.2)	457(38.3)
쉬운것 가능	10(20.0)	19(20.2)	21(14.1)	46(17.2)	40(14.7)	104(29.0)	240(20.1)
못한다	2(4.0)	2(2.1)	1(0.7)	5(1.9)	11(4.0)	39(10.9)	60(5.0)
배우는 중	4(8.0)	6(6.4)	3(2.0)	6(2.2)	10(3.7)	18(5.0)	47(3.9)
계	50(100)	94(100)	149(100)	267(100)	273(100)	359(100)	1,192(100)

결측치: 24명

학력별 수화를 할 수 있는 정도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 4.12>과 같이, 학력이 높을수록 수화를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반대로 학력이 낮을수록 수화를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4. 12> 학력별 수화를 할 수 있는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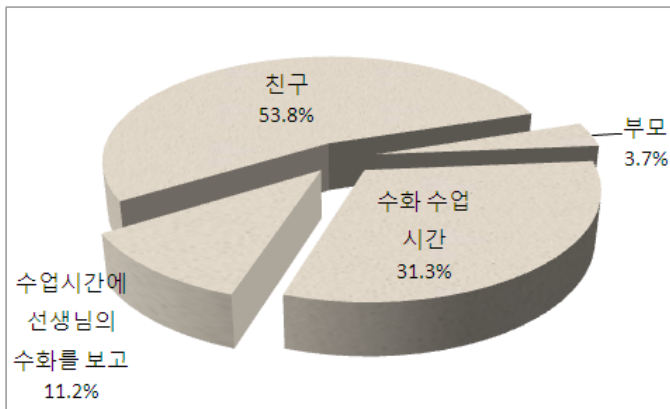
단위: 명(%)

구 분	무학	초졸 이하	중졸 이하	고졸 이하	대졸 이하	대학원이상	계
잘한다	30(14.0)	68(27.6)	102(39.4)	141(39.3)	36(39.6)	7(58.3)	384(32.5)
잘하는 편	52(24.3)	119(48.4)	105(40.5)	144(40.1)	29(31.9)	4(33.3)	453(38.4)
쉬운것 가능	88(41.1)	42(17.1)	34(13.1)	56(15.6)	18(19.8)	0(0)	238(20.2)
못한다	25(11.7)	10(4.1)	11(4.2)	10(2.8)	4(4.4)	0(0)	60(5.1)
배우는 중	19(8.9)	7(2.8)	7(2.7)	8(2.2)	4(4.4)	1(8.3)	46(3.9)
계	214(100)	246(100)	259(100)	359(100)	91(100)	12(100)	1,181(100)

결측치: 35명

4.3.4. 수화를 배운 대상

‘수화를 누구에게 배웠습니까?’에 대한 조사 분석 결과는 <그림 4.12>와 같이, 응답자 1,063명 중 친구라고 응답한 경우가 53.8%로 가장 높았으며, 수화 수업시간에 선생님이 수화를 보고 11.2%, 부모가 3.7%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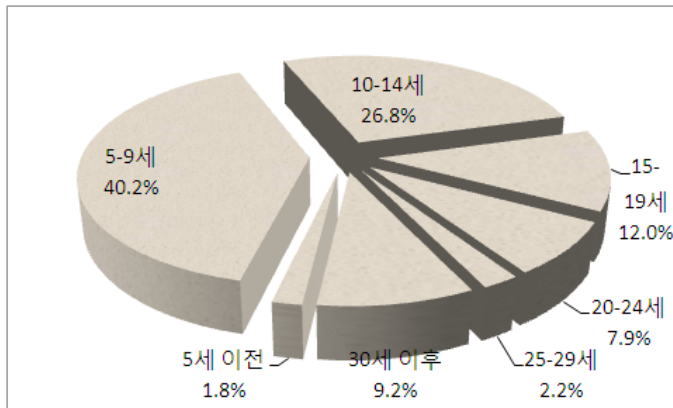


<그림 4.12> 수화를 누구에게 배웠습니까?

4.3.5. 수화를 배우기 시작한 연령

수화를 배우기 시작한 연령에 대한 조사 분석 결과는 <그림 4.13>과 같이, 응답자 1,133명 중 5~9세가 40.2%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10~14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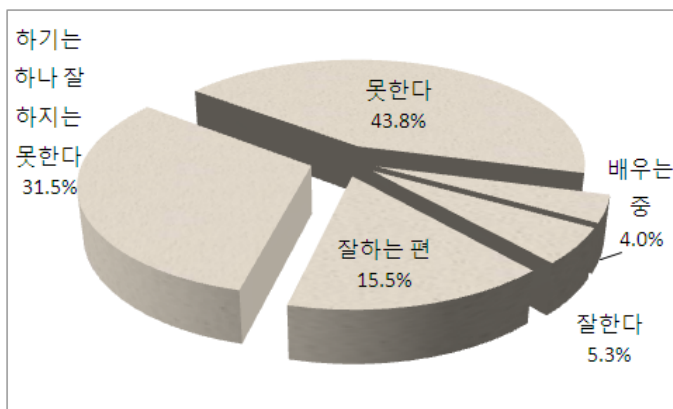
26.8%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30대 이후에 수화를 배우기 시작한 사람이 9.2%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4.13> 수화를 배우기 시작한 연령

4.3.6. 말을 할 수 있는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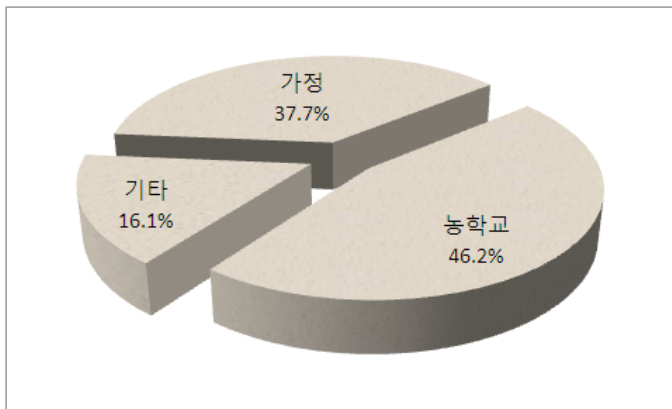
말을 할 수 있는 정도에 대한 조사 분석 결과는 <그림 4.14>와 같이, 응답자 1,154명 중 말을 못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43.8%이었으며, ‘하기는 하나 잘하지는 못한다’ 31.5%, ‘잘 하는 편’ 15.5%로 나타났으며, ‘잘 한다’ 5.3%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14> 말을 할 수 있는 정도

4.3.7. 말을 배우기 시작한 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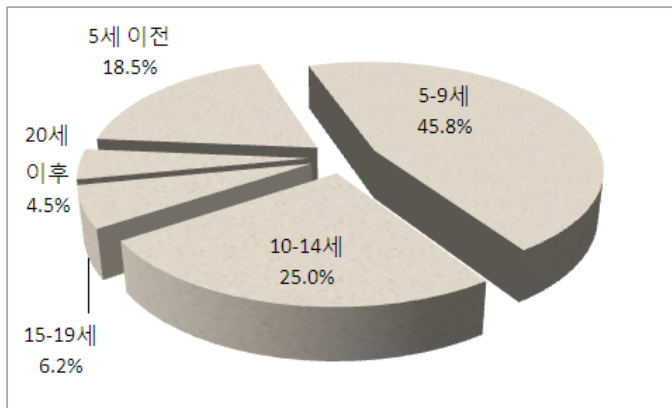
말을 배우기 시작한 곳에 대한 조사 분석 결과는 <그림 4.15>와 같이, 응답자 818명 중 농학교라고 응답한 경우가 46.2%이었고 가정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37.7%이었으며, 그 외의 장소가 16.1%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15> 말을 배우기 시작한 곳

4.3.8. 말을 배우기 시작한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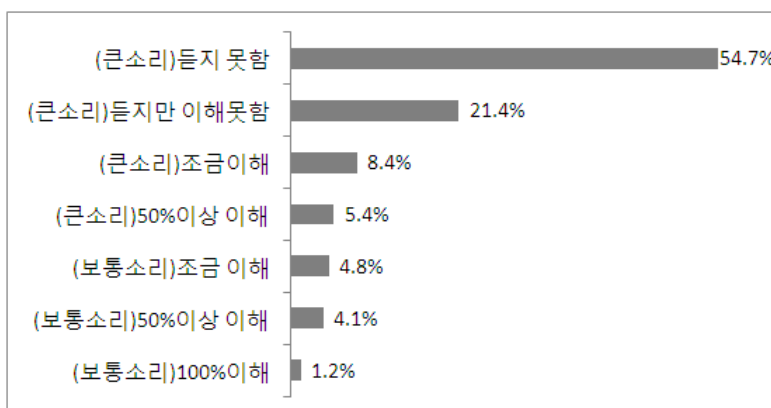
말을 배우기 시작한 연령에 대한 조사 분석 결과는 <그림 4.16>과 같이, 응답자 665명 중 5~9세가 45.8%로 가장 높았으며, 10~14세가 25.0%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20세 이후에 말을 배우기 시작한 빈도는 4.5%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16> 말을 배우기 시작한 연령

4.3.9. 상대방이 하는 말을 듣는 정도

보청기 등의 재활보조기구를 착용한 사람은 그것을 착용한 상태에서, 상대방이 하는 말을 어느 정도 들을 수 있는가에 대한 조사 분석 결과는 <그림 4.17>과 같이, 응답자 1,052명 중 54.7%가 소리를 전혀 듣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21.4%는 큰 소리로 말을 하면 들을 수는 있지만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통 소리를 말을 하였을 때 100%이해하는 경우는 1.2%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4.17> 상대방이 하는 말을 듣는 정도

연령층별 상대방이 하는 말을 듣는 정도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 4.13>과

같이, 큰소리를 전혀 듣지 못하거나 큰소리로 말하면 듣지만 이해하지 못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30대 이하 연령층에 비해 40대 이상의 연령층에서 높게 나타났다.

<표 4.13> 연령층별 상대방이 하는 말을 듣는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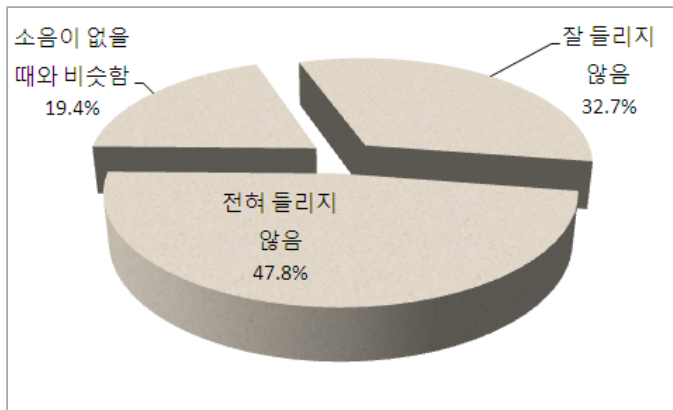
단위: 명(%)

구 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계
(큰소리) 듣지 못함	12(26.1)	27(31.0)	53(37.1)	134(58.3)	144(57.8)	205(69.0)	575(54.7)
(큰소리)듣지만 이해 못함	18(39.1)	22(25.3)	44(30.8)	47(20.4)	52(20.9)	42(14.1)	225(21.4)
(큰소리) 조금 이해	4(8.7)	12(13.8)	12(8.4)	20(8.7)	17(6.8)	23(7.7)	88(8.4)
(큰소리)50% 이상 이해	2(4.3)	7(8.0)	13(9.1)	8(3.5)	10(4.0)	17(5.7)	57(5.4)
(보통소리) 조금 이해	6(13.0)	10(11.5)	10(7.0)	10(4.3)	11(4.4)	4(1.3)	51(4.8)
(보통소리)50% 이상 이해	4(8.7)	6(6.9)	10(7.0)	8(3.5)	12(4.8)	3(1.0)	43(4.1)
(보통소리) 100% 이해	0(0)	3(3.4)	1(0.7)	3(1.3)	3(1.2)	3(1.0)	13(1.2)
계	46(100)	87(100)	143(100)	230(100)	249(100)	297(100)	1052(100)

결측치: 164명

4.3.10. 소음이 있는 곳에서 듣는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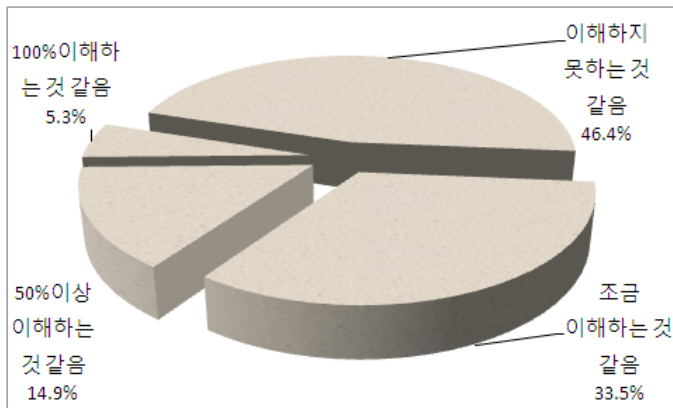
소음이 있는 곳에서 어느 정도 들을 수 있는가에 대한 조사 분석 결과는 <그림 4.18>과 같이, 응답자 1,133명 중 47.8%가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는 것, 32.7%가 잘 들리지 않음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19.4%만이 소음이 없는 곳에서 듣는 정도로 듣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4.18> 소음이 있는 곳에서 듣는 정도

4.3.11. 자기가 하는 말을 상대방이 이해하는 정도

자기가 하는 말을 상대방이 이해하는 정도에 대한 조사 분석 결과는 <그림 4.19>와 같이, 응답자 1,111명 중 46.4%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응답하였으며 33.5%는 조금 이해한다고 응답하였다. 100% 이해하는 것 같다고 응답한 경우는 5.3%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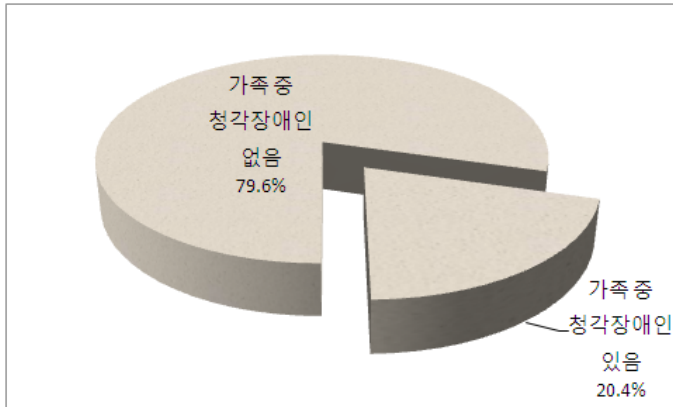


<그림 4.19> 자기가 하는 말을 상대방이 이해하는 정도

4.3.12. 청각장애를 가진 가족 유무

청각장애를 가진 가족이 있는가에 대한 조사 분석 결과는 <그림 4.20>과 같

이, 응답자 714명 중 20.4%가 청각장애를 가진 가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에서 청각장애는 유전적 요인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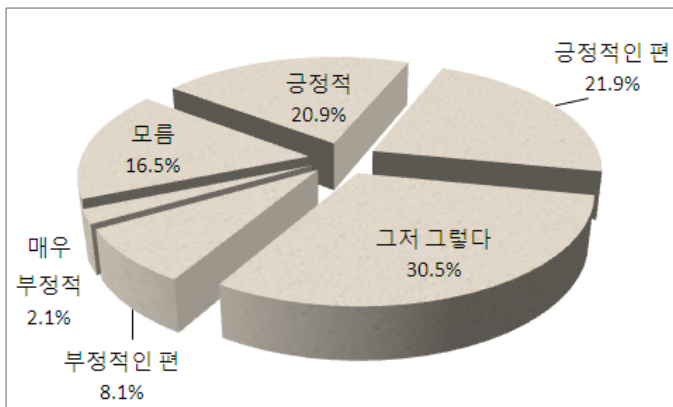


<그림 4. 20> 청각장애를 가진 가족 유무

4.4. 가족과의 의사소통

4.4.1. 수화 사용에 대한 가족의 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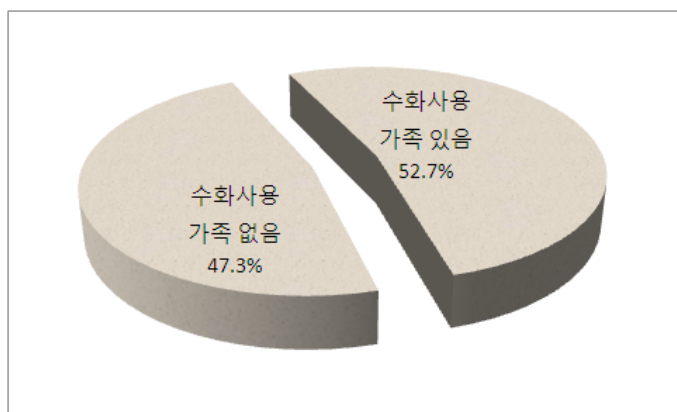
수화 사용에 대해 가족은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조사 분석 결과는 <그림 4.21>과 같이, 응답자 1,174명 중 42.8%가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1%는 매우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21> 수화 사용에 대한 가족의 태도

4.4.2. 수화를 할 수 있는 가족의 유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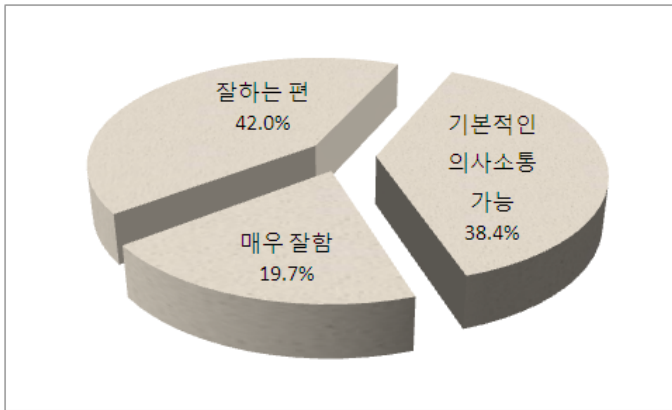
수화를 할 수 있는 가족이 있는가에 대한 조사 분석 결과는 <그림 4.22>와 같이, 응답자 1,183명 중 52.7%가 수화를 할 수 있는 가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4.22> 수화를 할 수 있는 가족의 유무

4.4.3. 수화를 할 수 있는 가족의 수화 능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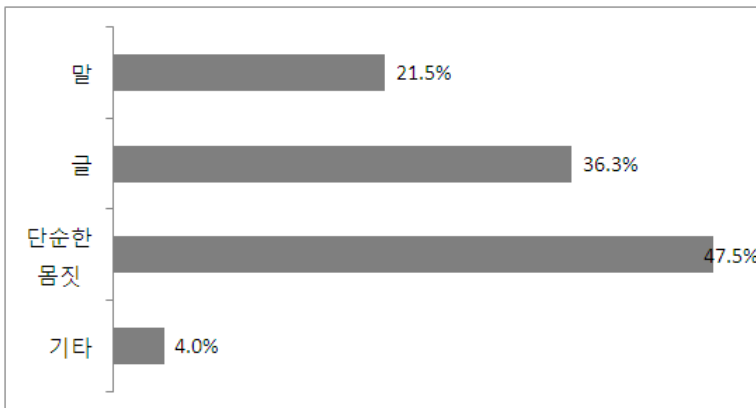
수화를 할 수 있는 가족의 수화 능력에 대한 조사 분석 결과는 <그림 4.23>과 같이, 응답자 624명 중 42.0%가 잘 하는 편이라고 응답하였으며 38.4%는 기본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을 정도라고 응답하였다. 매우 잘한다는 응답은 19.7%(12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23> 수화를 할 수 있는 가족의 수화 능력

4.4.4. 가족과의 의사소통 수단(수화를 할 수 없을 경우)

수화를 할 수 없다면 가족과는 어떤 수단으로 의사소통을 하는가에 대한 복수 응답 분석 결과는 <그림 4.24>과 같이, 응답자의 47.5%가 단순한 몸짓이라고 하였고 36.3%가 글이라고 하였다.



<그림 4.24> 가족과의 의사소통 수단(수화를 할 수 없을 경우, 복수 응답)

연령층별 가족과의 의사소통 수단(수화를 할 수 없을 경우)을 보면, <표 4.14>와 같이 연령층이 낮을수록 말을 사용하는 빈도가 높게 나타났고 연령층이 높아질수록 단순한 몸짓을 사용하는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표 4.14> 연령층별 가족과의 의사소통 수단(수화를 할 수 없을 경우)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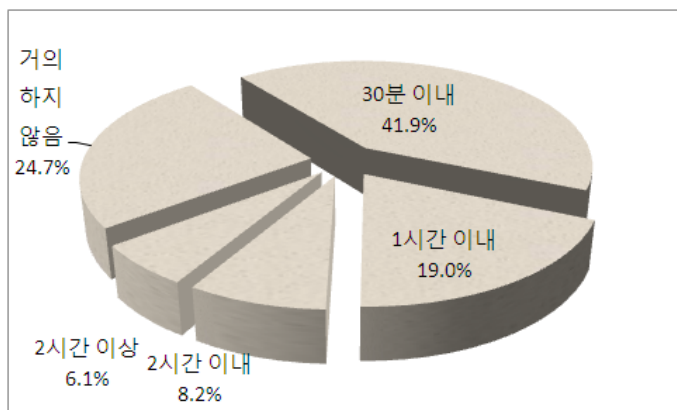
구 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계
말	19(47.5)	34(37.8)	40(27.4)	54(23.5)	35(15.0)	42(13.9)	224(21.5)
글	15(37.5)	37(41.1)	64(43.8)	95(41.3)	98(42.1)	69(22.8)	378(36.3)
단순한 몸짓	13(32.5)	31(34.4)	54(37.0)	92(40.0)	103(44.2)	201(66.6)	494(47.5)
기타	1(2.5)	4(4.4)	5(3.4)	11(4.8)	12(5.2)	9(3.0)	42(4.0)

결측치: 175명

(복수 응답)

4.4.5. 하루 평균 가족과 대화하는 시간

가족과 대화하는 시간은 하루 평균 얼마나 되는가에 대한 조사 분석 결과는 <그림 4.25>와 같이, 응답자 1,173명 중 41.9%가 하루 평균 30분 이내라고 응답하였으며, 24.7%는 대화를 거의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25> 하루 평균 가족과 대화하는 시간

의사소통 수단별 가족과의 대화하는 시간을 보면, <표 4.15>와 같이 단순한 몸짓 사용자의 대화를 거의 하지 않는다고 답한 빈도가 다른 수단으로 의사소통을 하는 사람들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말 사용자가 비교적 가족과 대화를 오래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15> 의사소통 수단별 가족과 대화하는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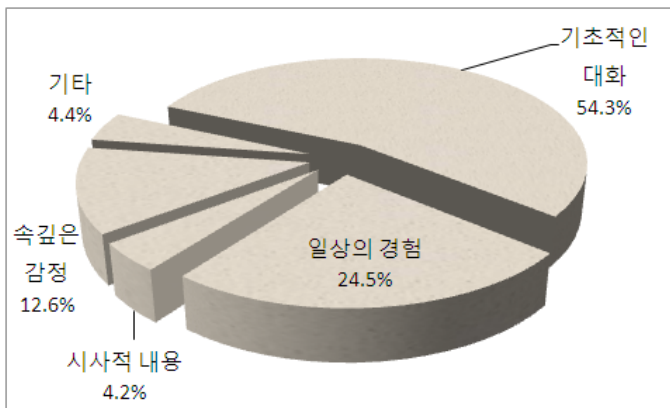
단위: 명(%)

구 분	수화 사용자	말 사용자	글 사용자	단순한 몸짓 사용자	기타	계
거의하지않음	225(24.6)	12(15.4)	10(22.7)	38(35.5)	3(20.0)	288(24.9)
30분 이내	380(41.6)	27(34.6)	21(47.7)	49(45.8)	5(33.3)	482(41.7)
1시간 이내	178(19.5)	20(25.6)	6(13.6)	12(11.2)	5(33.3)	221(19.1)
2시간 이내	70(7.7)	14(17.9)	6(13.6)	5(4.7)	0(0)	95(8.2)
2시간 이상	60(6.6)	5(6.4)	1(2.3)	3(2.8)	2(13.3)	71(6.1)
계	913(100)	78(100)	44(100)	107(100)	15(100)	1,157(100)

결측치: 59명

4.4.6. 가족과의 대화 정도(대화 내용)

가족과의 대화 정도에 대한 조사 분석 결과는 <그림 4.26>과 같이, 응답자 1,109명 중 54.2%가 기초적인 대화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2.6%은 속 깊은 감정이나 생각을 나누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26> 가족과의 대화 정도

의사소통 수단별 가족과의 대화하는 내용을 보면, <표 4.16>과 같이 속 깊은 감정을 이야기하는 빈도는 말 사용자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단순한 몸짓 사용자는 기초적 대화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6> 의사소통 수단별 가족과의 대화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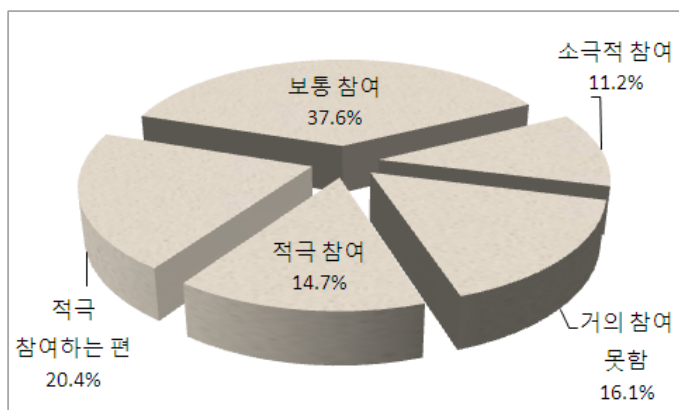
단위: 명(%)

구분	수화 사용자	말 사용자	글 사용자	단순한 몸짓 사용자	기타	계
기초적 대화	476(55.0)	29(38.2)	25(59.5)	63(63.6)	3(25.0)	596(54.5)
일상의 경험	212(24.5)	23(30.3)	9(21.4)	22(22.2)	2(16.7)	268(24.5)
시사적 내용	38(4.4)	2(2.6)	2(4.8)	1(1.0)	0(0)	43(3.9)
속 깊은 감정	106(12.3)	18(23.7)	5(11.9)	7(7.1)	2(16.7)	138(12.6)
기타	33(3.8)	4(5.3)	1(2.4)	6(6.1)	5(41.7)	49(4.5)
계	865(100)	76(100)	42(100)	99(100)	12(100)	1,094(100)

결측치: 122명

4.4.7. 가정에서 하는 중요 결정에 참여하는 정도

가정에서 하는 중요 결정에 참여하는 정도에 대한 조사 분석 결과는 <그림 4.27>과 같이, 응답자 1,154명 중 37.6%가 보통으로 참여하며, 16.1%는 거의 참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27> 가정에서 하는 중요 결정에 참여하는 정도

의사소통 수단별 가정에서 하는 중요 결정에 참여하는 정도를 보면, <표 4.17>과 같이 단순한 몸짓 사용자가 거의 참여 못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다른 사용자에게 비해 높게 나타났다.

<표 4.17> 의사소통 수단별 가정에서 하는 중요 결정에 참여하는 정도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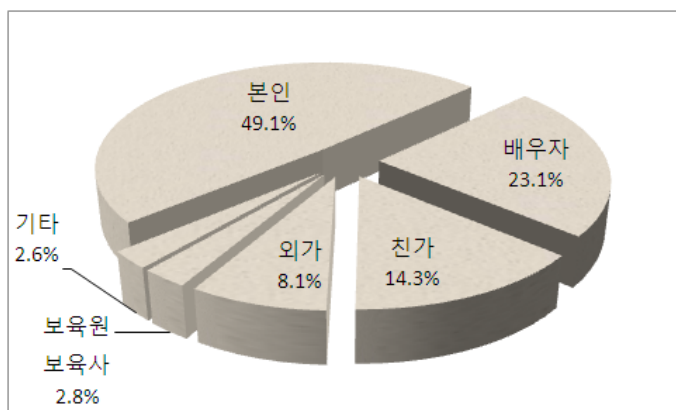
구 분	수화 사용자	말 사용자	글 사용자	단순한 몸짓 사용자	기타	계
적극 참여	145(16.1)	13(16.7)	4(9.3)	7(6.6)	0(0)	169(14.8)
적극 참여하는 편	182(20.3)	22(28.2)	13(30.2)	12(11.3)	3(21.4)	232(20.4)
보통으로 참여	339(37.8)	29(37.2)	14(32.6)	35(33.0)	10(71.4)	427(37.5)
소극적 참여	90(10.0)	8(10.3)	5(11.6)	23(21.7)	1(7.1)	127(11.2)
거의 참여 못함	142(15.8)	6(7.7)	7(16.3)	29(27.4)	0(0)	184(16.2)
계	898(100)	78(100)	43(100)	106(100)	14(100)	1,139(100)

결측치: 77명

4.5. 건청 자녀 양육

4.5.1. 건청 자녀가 학교에 입학하기 전 주로 양육한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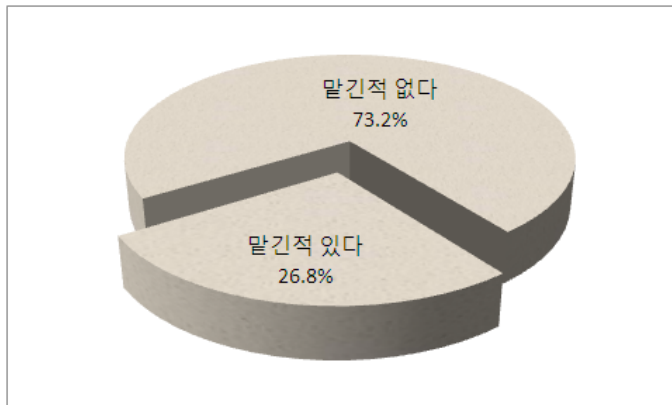
건청 자녀가 학교에 입학하기 전 주로 양육한 사람에 대한 조사 분석 결과는 <그림 4.28>과 같이, 응답자 848명 중 49.1%가 본인이었으며, 배우자가 23.1%, 보육원 보육사가 2.8%로 조사되었다.



<그림 4.28> 건청 자녀가 학교에 입학하기 전 주로 양육한 사람

4.5.2. 건청 자녀를 일정 기간 다른 사람 혹은 시설이나 기관에 맡긴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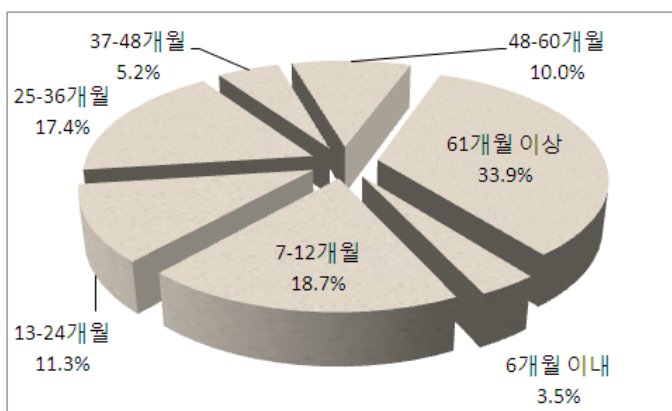
건청 자녀를 일정 기간 다른 사람 혹은 시설이나 기관에 맡긴 적이 있는가에 대한 조사 분석 결과는 <그림 4.29>와 같이, 응답자 851명 중 26.8%가 건청 자녀를 다른 사람 혹은 기관에 맡긴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4.29> 건청 자녀를 일정 기간 다른 사람 혹은 시설이나 기관에 맡긴 적이 있는가

4.5.3. 건청 자녀를 다른 사람에게 맡긴 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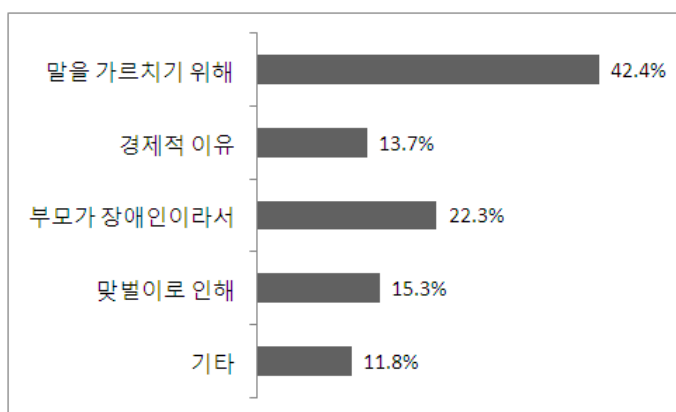
건청 자녀를 일정 기간 다른 사람에게 맡긴 기간에 대한 조사 분석 결과는 <그림 4.30>과 같이, 응답자 230명 중 33.9%가 60개월 이상 장기간 다른 사람에게 맡겼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6~12개월이 18.7%, 25~36개월이 17.4%로 조사되었다.



<그림 4.30> 건청 자녀를 다른 사람에게 맡긴 기간

4.5.4. 건청 자녀를 다른 사람에게 맡긴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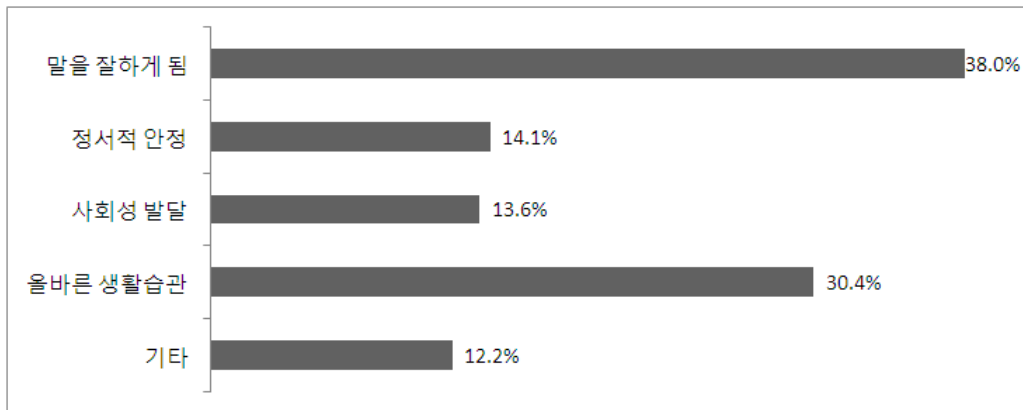
건청 자녀를 다른 사람에게 맡긴 이유 대한 복수 응답 분석 결과는 <그림 4.31>과 같이, 42.4%가 아이에게 말을 가르치기 위해서, 22.3%가 부모가 장애인이라서, 그리고 15.3%가 맞벌이로 인해 자녀를 다른 사람에게 맡겼다고 응답하였다.



<그림 4.31> 건청 자녀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 이유(복수 응답)

4.5.5. 건청 자녀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나서 받은 도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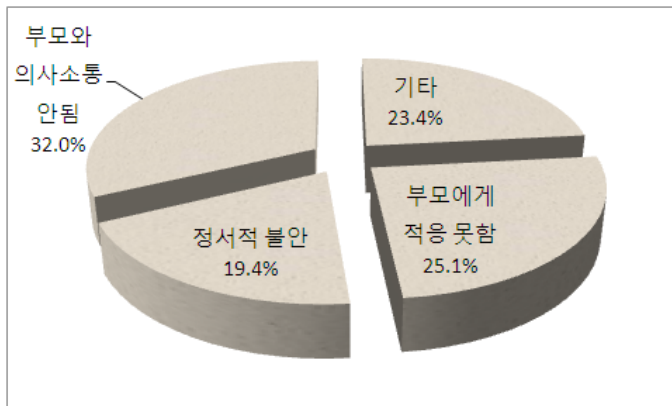
건청 자녀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어떤 도움을 받았는지에 대한 복수 응답 분석 결과는 <그림 4.32>와 같이, 38.0%가 자녀가 말을 잘하게 되었다고 응답하였고, 30.4%가 자녀가 올바른 생활습관을 가지게 되었다고 응답하였으며 14.1%는 자녀가 정서적으로 안정되었다고 응답하였다.



<그림 4.32> 건청 자녀를 다른 사람에게 말기고 나서 받은 도움(복수 응답)

4.5.6. 건청 자녀를 다른 사람에게 말기고 나서 어려웠던 점

건청 자녀를 다른 사람에게 말기고 나서 어려웠던 점에 대한 조사 분석 결과는 <그림 4.33>과 같이, 응답자 866명 중 32.0%가 자녀가 돌아왔을 때 부모와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으며 25.1%는 부모에게 적응하지 못하였다고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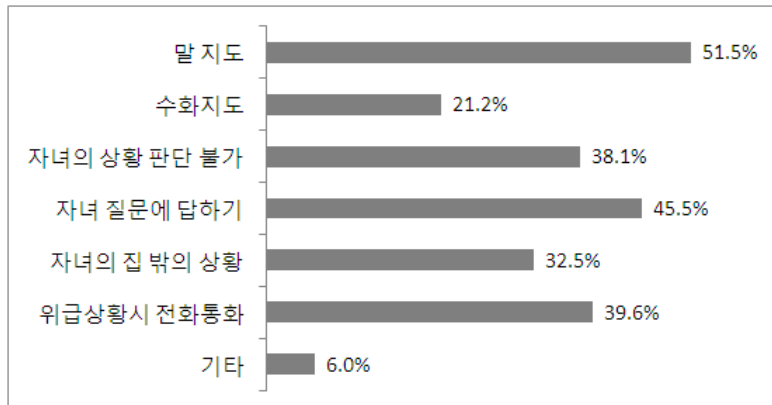


<그림 4.33> 건청 자녀를 다른 사람에게 말기고 나서 어려웠던 점

4.5.7. 건청 자녀를 (학령 전에) 양육하면서 어려웠던 점

건청 자녀를 양육하면서 어려웠던 점에 대한 복수 응답 분석 결과는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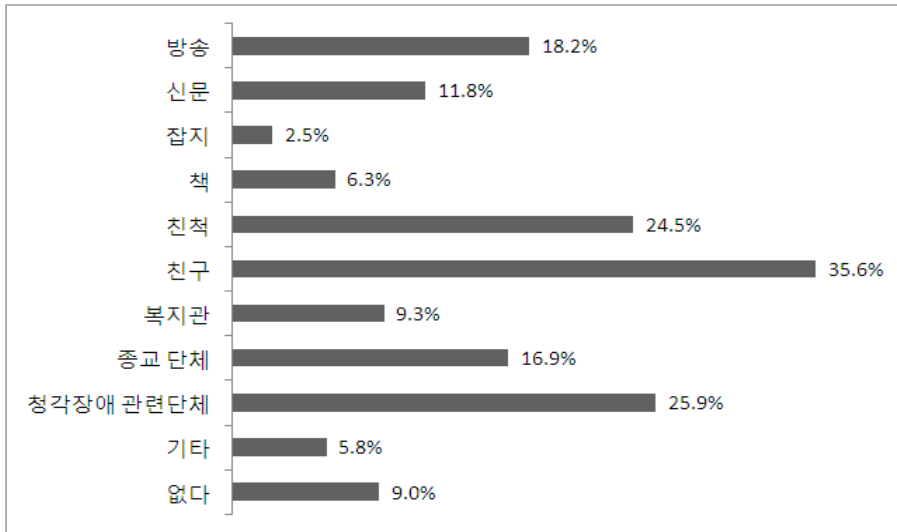
4.34>와 같이, 말하기 지도가 51.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자녀의 질문에 답하기 어려움이 45.5%, 자녀가 위급 시 전화통화의 어려움이 39.6% 등으로 나타났다.



<그림 4.34>건청 자녀를 양육하면서 어려웠던 점(복수 응답)

4.5.8. 국내외에서 얻는 건청 자녀 양육 정보의 주된 매체

자녀 양육에 대한 정보를 얻는 주된 매체에 대한 복수 응답 분석 결과는 <그림 4.35>와 같이, 친구라고 응답한 경우가 35.6%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청각장애 관련 단체(25.9%), 친척(24.5%), 방송(18.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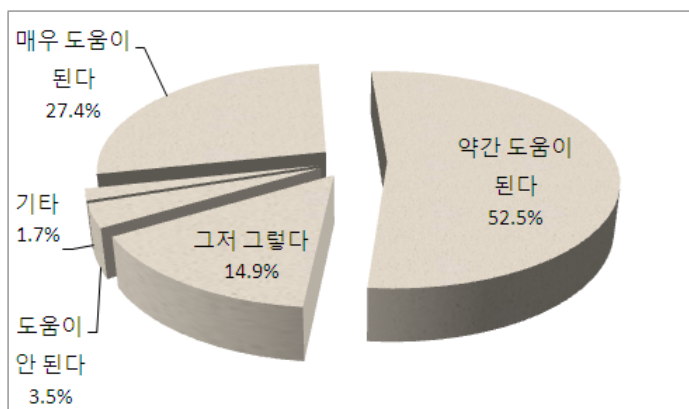


<그림 4.35> 건청 자녀 양육 정보의 주된 매체(복수 응답)

4.6. 한국어 능력

4.6.1. 수화를 배우는 것이 한국어 습득에 도움이 되는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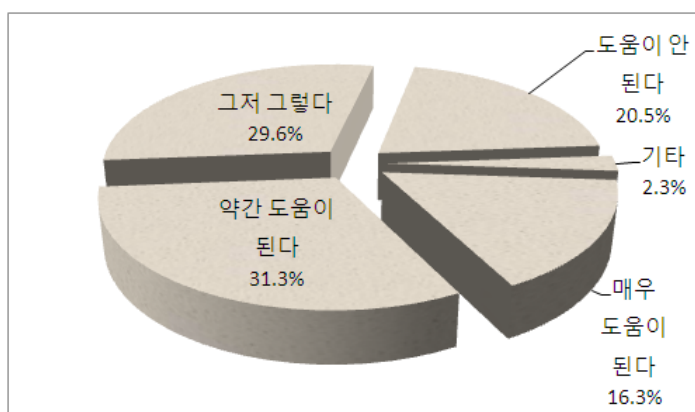
수화를 배우는 것이 한국어 습득에 도움이 되는 정도에 대한 분석 결과는 <그림 4.36>과 같이, 응답자 1,148명 중 27.4%가 매우 도움이 된다, 52.5%가 약간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으며, 3.5%는 도움이 안 된다고 응답하였다.



<그림 4.36> 수화를 배우는 것이 한국어 습득에 도움이 되는 정도

4.6.2. 구화 교육이 한국어(말) 습득에 도움이 되는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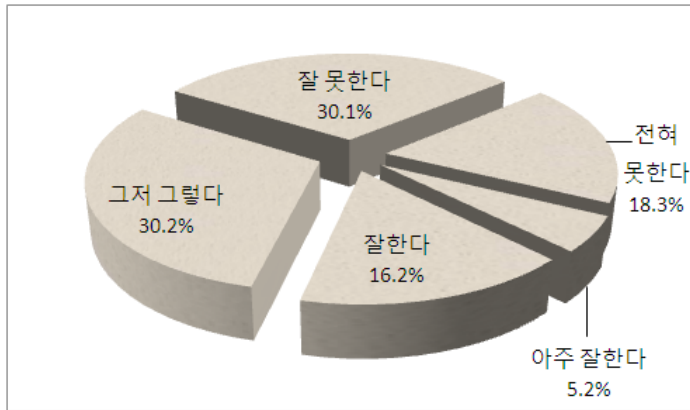
구화 교육이 한국어(말) 습득에 도움이 되는 정도에 대한 분석 결과는 <그림 4.37>과 같이, 응답자 1,092명 중 16.3%가 매우 도움이 된다, 31.3%가 약간 도움이 된다, 29.6%가 그저 그렇다고 응답하였으며 20.5%는 도움이 안 된다고 응답하였다.



<그림 4.37> 구화 교육이 한국어(말) 습득에 도움이 되는 정도

4.6.3. 자신이 생각하는 한국어(말) 실력

자신이 생각하는 한국어(말) 실력에 대한 분석 결과는 <그림 4.38>과 같이, 응답자 1,168명 중 5.2%가 아주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8.3%는 한국어를 전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38> 자신이 생각하는 한국어(말) 실력

의사소통 수단별 자신이 생각하는 한국어(말) 실력을 보면, <표 4.18>과 같이 수화 사용자는 한국어 실력이 그저 그렇거나 잘 못한다고 응답한 빈도가 높았으며, 말 사용자는 아주 잘하거나 잘한다고 응답한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글 사용자는 그저 그렇거나 잘한다고 응답한 빈도가 높았으며, 몸짓 사용자는 말을 전혀 못한다고 응답한 빈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표 4.18> 의사소통 수단별 자신이 생각하는 한국어(말) 실력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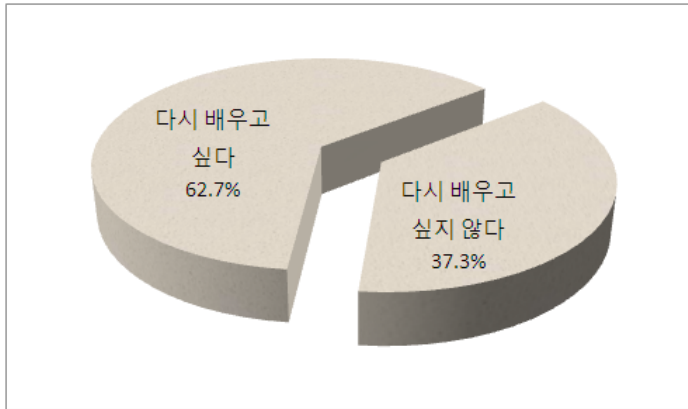
구 분	수화 사용자	말 사용자	글 사용자	단순한 몸짓 사용자	기타	계
아주 잘한다	32(3.5)	25(32.1)	0(0)	1(1.0)	2(14.3)	60(5.2)
잘한다	138(15.1)	25(32.1)	11(26.2)	5(4.8)	5(35.7)	184(16.0)
그저 그렇다	297(32.6)	19(24.4)	16(38.1)	15(14.3)	2(14.3)	349(30.3)
못한다	291(31.9)	4(5.1)	9(21.4)	40(38.1)	3(21.4)	347(30.1)
전혀 못한다	154(16.9)	5(6.4)	6(14.3)	44(41.9)	2(14.3)	211(18.3)
계	912(100)	78(100)	42(100)	105(100)	14(100)	1,151(100)

결측치: 65명

4.6.4. 기회가 된다면 한국어(말)를 다시 배울 의향

기회가 된다면 한국어를 다시 배우고 싶은가에 대한 조사 분석 결과는 <그림 4.39>과 같이, 응답자 1,145명 중 62.7%가 그렇다고 응답했으며, 37.3%는 한

국어를 다시 배우고 싶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39> 한국어(말)를 다시 배우고 싶습니까?

의사소통 수단별 한국어를 다시 배우고 싶은 의향을 분석해 보면, <표 4.19>와 같이 의사소통 수단별로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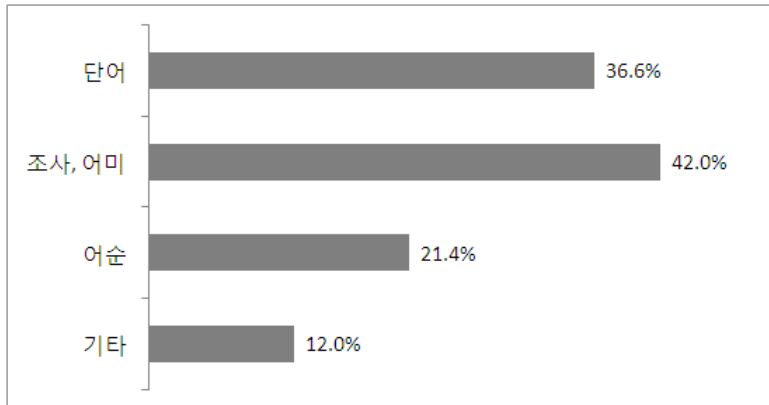
<표 4.19> 의사소통 수단별 한국어를 다시 배우고 싶은 의향 단위: 명(%)

구 분	수화 사용자	말 사용자	글 사용자	단순한 몸짓 사용자	기타	계
다시 배우고 싶다	561(62.4)	48(64.0)	27(65.9)	63(62.4)	9(64.3)	708(62.7)
다시 배우고 싶지 않다	338(37.6)	27(36.0)	14(34.1)	38(37.6)	5(35.7)	422(37.3)
계	899(100)	75(100)	41(100)	101(100)	14(100)	1,130(100)

결측치: 86명

4.6.5. 한국어(말)를 배울 때 가장 어려웠던 것

한국어(말)를 배울 때 가장 어려웠던 것에 대한 복수 응답 분석 결과는 <그림 4.40>과 같이, 42.0%가 조사·어미라고 응답하였으며, 36.6%가 단어, 21.4%가 어순이라고 응답하였다.



<그림 4.40> 한국어(말)를 배울 때 가장 어려웠던 것(복수 응답)

의사소통 수단별 한국어를 배울 때 가장 어려웠던 것을 보면, <표 4.20>과 같이 수화 사용자와 말 사용자는 조사·어미 습득이 가장 어려웠으며, 글 사용자와 단순한 몸짓 사용자는 단어 습득이 가장 어려웠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20> 의사소통 수단별 한국어(말)를 배울 때 가장 어려웠던 것 단위: 명(%)

구 분	수화 사용자	말 사용자	글 사용자	단순한 몸짓 사용자	기타	계
단어	310(36.3)	18(27.3)	17(45.9)	43(47.8)	3(21.4)	391(36.9)
조사, 어미	378(44.3)	20(30.3)	10(27.0)	32(35.6)	4(28.6)	444(41.9)
어순	195(22.9)	13(19.7)	8(21.6)	11(12.2)	1(7.1)	228(21.5)
기타	88(10.3)	15(22.7)	2(5.4)	15(16.7)	6(42.9)	126(1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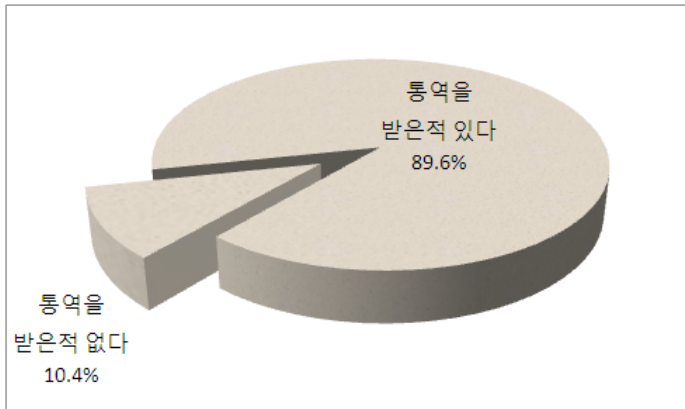
결측치: 156명

(복수 응답)

4.7. 수화통역사

4.7.1. 수화통역사의 수화 통역을 받은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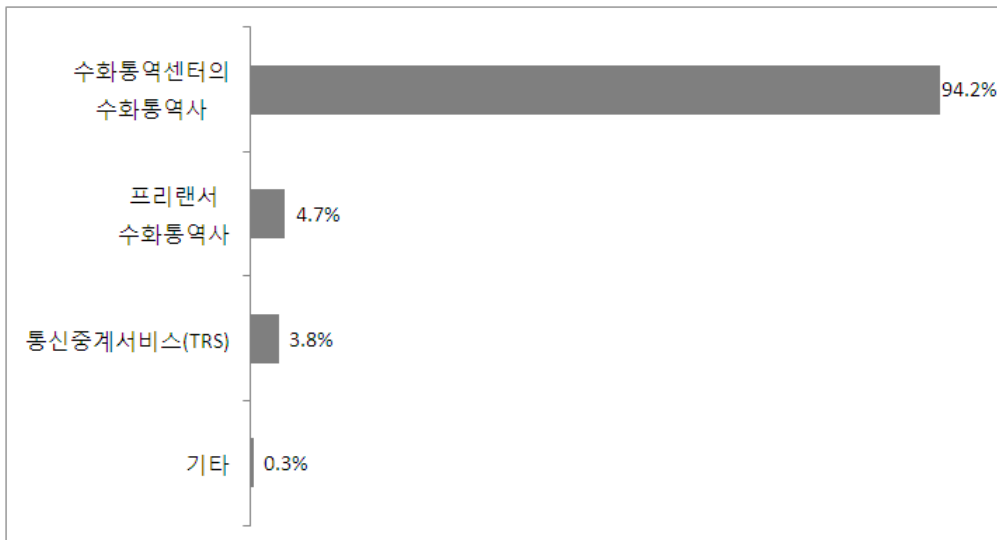
수화통역사의 수화 통역을 받은 경험에 대한 조사 분석 결과는 <그림 4.41>과 같이, 응답자 1,167명 중 89.6%가 수화통역사의 통역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10.4%는 통역을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4.41> 수화통역사의 통역을 받은 경험

4.7.2. (수화 통역을 받은 적이 있다면) 수화통역을 한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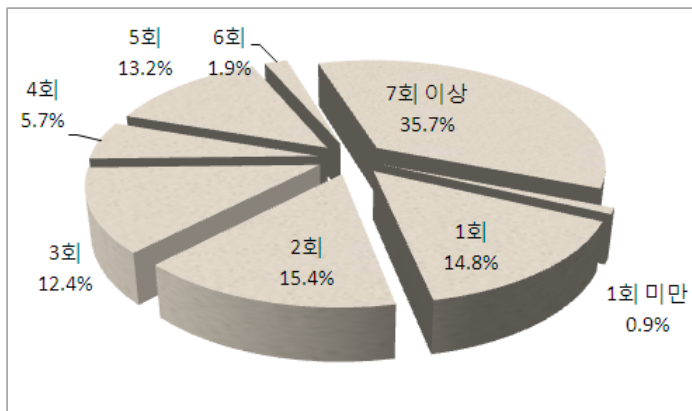
수화통역을 한 사람에 대한 복수 응답 분석 결과는 <그림 4.42>와 같이, 94.2%가 수화통역센터의 수화통역사에게 수화통역을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통신 중계서비스(TRS)를 이용하는 경우는 3.8%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그림 4.42> 수화통역을 한 사람(복수 응답)

4.7.3. 수화통역을 받은 횟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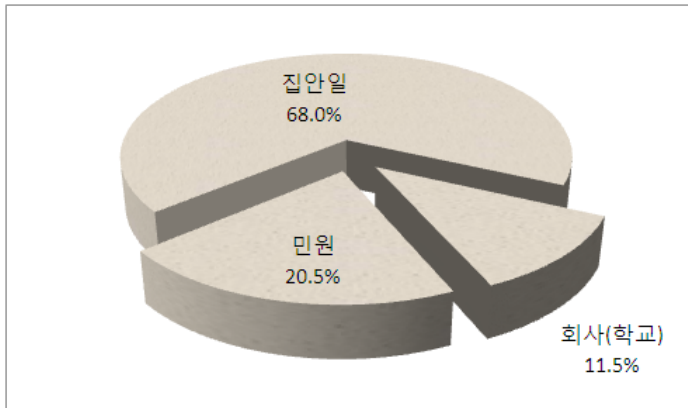
수화통역을 받은 횟수에 대한 조사 분석 결과는 <그림 4.43>과 같이, 응답자 1,017명 중 35.7%가 월 평균 7회 이상 수화통역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월 평균 2회 수화통역을 받는 경우가 15.7%, 1회 받고 있는 경우가 14.8%로 조사되었다.



<그림 4.43> 수화 통역을 받은 횟수(월평균)

4.7.4. 수화통역을 받은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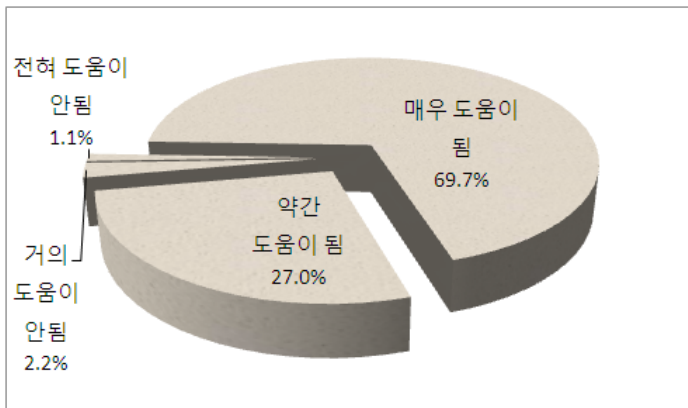
수화통역을 받은 경우에 대한 조사 분석 결과는 <그림 4.44>와 같이, 68%가 집안일로 수화통역을 받았으며, 20.5%는 민원문제로, 11.5%는 회사 또는 학교 일로 수화통역을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4.44> 수화통역을 받은 경우

4.7.5. 수화통역이 도움이 된 정도

수화통역이 도움이 된 정도에 대한 조사 분석 결과는 <그림 4.45>와 같이, 응답자 1,094명 중 69.7%가 매우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1.1%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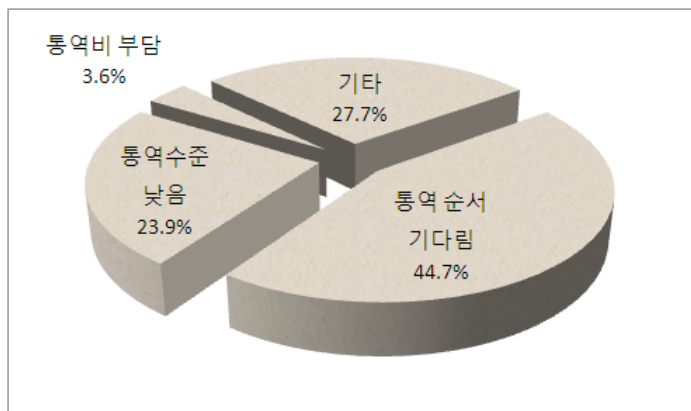


<그림 4.45> 수화통역이 도움이 된 정도

4.7.6. 수화통역을 받을 때 불편했던 점

수화통역을 받을 때 불편했던 점에 대한 조사 분석 결과는 <그림 4.46>과 같이, 응답자 937명 중 44.7%가 순서를 기다려야 하는 것이 불편하였다고 응답

하였으며, 23.9%가 수화통역사의 통역 수준이 낮았다고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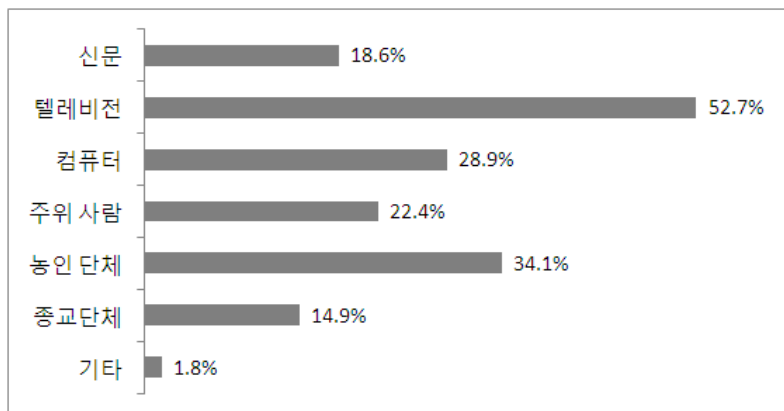


<그림 4.46> 수화통역을 받을 때 불편했던 점

4.8. 방송 및 인터넷 정보 접근 실태

4.8.1. 국내외에서 일어나는 생활정보를 얻는 주된 매체

국내외에서 일어나는 생활정보를 얻는 주된 매체에 대한 복수 응답 분석 결과는 <그림 4.47>과 같이, 텔레비전이 52.7%로 가장 높았으며, 농인단체가 34.1%, 컴퓨터가 28.9%, 주위 사람이 22.4%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4.47> 생활 정보를 얻는 주된 매체(복수 응답)

의사소통 수단별 생활정보를 얻는 주된 매체를 보면, <표 4.21>과 같이 수화 사용자와 단순한 몸짓 사용자는 텔레비전과 농인 단체에서 주로 정보를 얻고, 말 사용자와 글 사용자는 텔레비전과 컴퓨터를 통해 주로 정보를 얻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21> 의사소통 수단별 생활정보를 얻는 주된 매체

단위: 명(%)

구 분	수화 사용자	말 사용자	글 사용자	단순한 몸짓 사용자	기타	계
신문	182(19.8)	14(17.5)	10(21.7)	10(9.3)	4(28.6)	220(18.8)
텔레비전	495(53.7)	44(55.0)	25(54.3)	47(43.9)	6(42.9)	617(52.8)
컴퓨터	270(29.3)	30(37.5)	19(41.3)	14(13.1)	4(28.6)	337(28.9)
주위 사람	205(22.3)	18(22.5)	5(10.9)	32(29.9)	1(7.1)	261(22.3)
농인 단체	324(35.2)	15(18.8)	11(23.9)	47(43.9)	4(28.6)	401(34.3)
종교 단체	154(16.7)	5(6.3)	2(4.3)	12(11.2)	2(14.3)	175(15.0)
기타	12(1.3)	1(1.3)	3(6.5)	3(2.8)	2(14.3)	21(1.8)

결측치 :48명

(복수 응답)

학력별로 생활정보를 얻는 주된 매체를 보면, <표 4.22>와 같이 무학·초졸 이하·중졸 이하의 학력을 가진 사람은 텔레비전과 농인 단체인 경우가 많고, 고졸 이하, 대졸 이하의 학력을 가진 사람은 텔레비전과 컴퓨터인 경우가 많으며, 대학원 재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은 신문을 통해 생활정보를 많이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2> 학력별 생활 정보를 얻는 주된 매체

단위: 명(%)

구 분	무학	초졸 이하	중졸 이하	고졸 이하	대졸 이하	대학원이상	계
신문	14(6.6)	38(15.2)	53(20.6)	74(20.9)	32(35.6)	8(66.7)	219(18.6)
텔레비전	94(44.3)	150(60.0)	137(53.3)	185(52.3)	43(47.8)	7(58.3)	616(52.4)
컴퓨터	11(5.2)	30(12.0)	57(22.2)	166(46.9)	69(76.7)	7(58.3)	340(28.9)
주위 사람	67(31.6)	48(19.2)	59(23.0)	67(18.9)	19(21.1)	2(16.7)	262(22.3)
농인 단체	95(44.8)	102(40.8)	87(33.9)	85(24.0)	28(31.1)	4(33.3)	401(34.1)
종교 단체	39(18.4)	46(18.4)	32(12.5)	48(13.6)	7(7.8)	4(33.3)	176(1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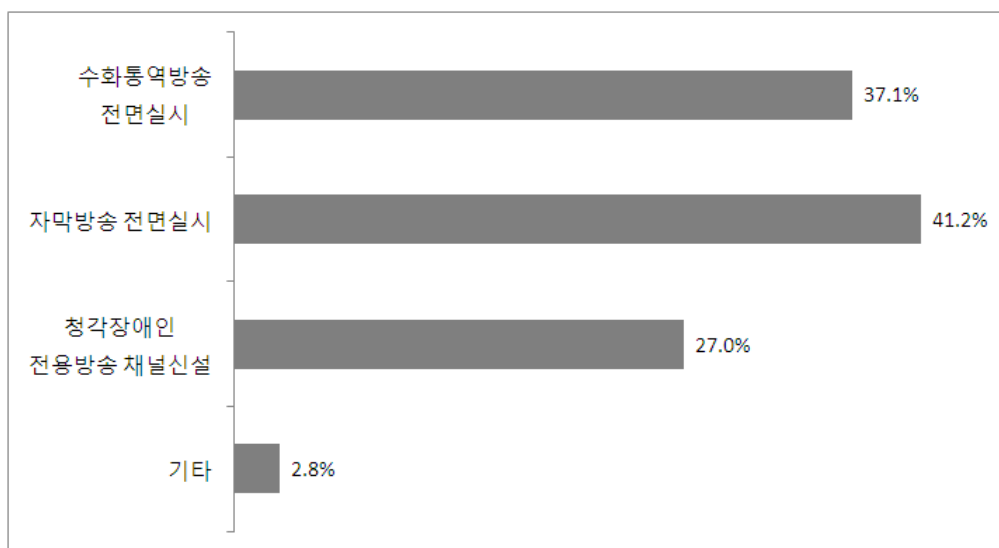
구 분	무학	초졸 이하	중졸 이하	고졸 이하	대졸 이하	대학원이상	계
기타	5(2.4)	3(1.2)	6(2.3)	5(1.4)	2(2.2)	0(0)	21(1.8)

결측치: 41명

(복수 응답)

4.8.2. 방송에서 청각장애인을 위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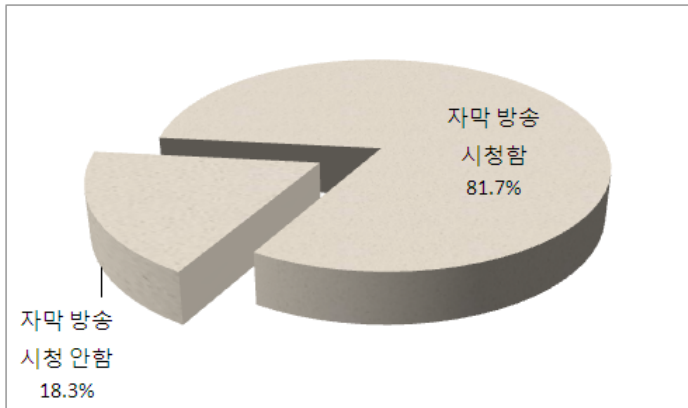
방송에서 청각장애인을 위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에 대한 복수 응답 분석 결과는 <그림 4.48>과 같이, 자막방송을 전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41.2%로 가장 많았으며, 수화통역 방송을 전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37.1%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48> 방송에서 청각장애인을 위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복수 응답)

4.8.3. 자막 방송 시청 여부

자막 방송 시청 여부에 대한 조사 분석 결과는 <그림 4.49>와 같이, 응답자 1,161명 중 81.7%가 자막 방송을 시청하고 있으며, 18.3%는 시청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4.49> 자막 방송 시청 여부

의사소통 수단별 자막 방송 시청 여부를 보면, <표 4.23>과 같이 말 사용자의 91.3%가 자막 방송을 시청하고 있으며, 단순한 몸짓 사용자는 56.2%가 자막 방송을 시청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23> 의사소통 수단별 자막 방송 시청 여부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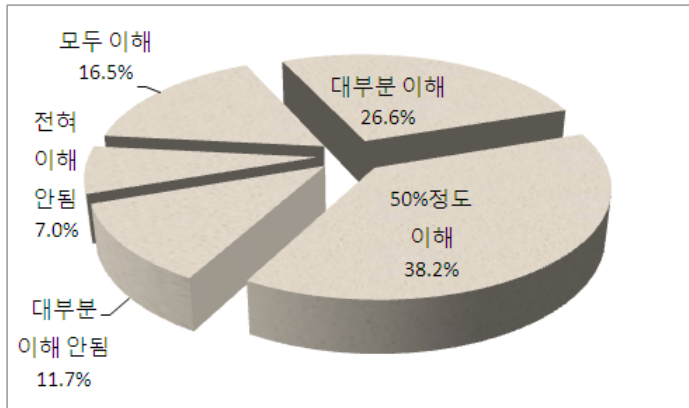
구 분	수화 사용자	말 사용자	글 사용자	단순한 몸짓 사용자	기타	계
자막방송 시청함	762(84.7)	61(78.2)	42(91.3)	59(56.2)	11(73.3)	935(81.7)
자막방송 시청 안함	138(15.3)	17(21.8)	4(8.7)	46(43.8)	4(26.7)	209(18.3)
계	900(100)	78(100)	46(100)	105(100)	15(100)	1,144(100)

결측치: 72명

(복수 응답)

4.8.4. 자막 방송 내용 이해 정도

자막 방송 내용 이해 정도에 대한 조사 분석 결과는 <그림 4.50>과 같이, 응답자 1,079명 중 38.2%가 방송 내용의 50% 정도를 이해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모두 이해한다는 응답은 16.5%, 전혀 이해가 안 된다는 응답은 7.0%로 나타났다.



<그림 4.50> 자막 방송 내용 이해 정도

의사소통 수단별 자막 방송 내용 이해 정도를 보면, <표 4.24>와 같이 수화 사용자는 50% 정도 이해된다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말 사용자는 대부분 이해된다고 응답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글 사용자는 모두 이해된다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단순한 몸짓 사용자는 전혀 이해 안 된다고 응답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24> 의사소통 수단별 자막 방송 내용 이해 정도

단위: 명(%)

구 분	수화 사용자	말 사용자	글 사용자	단순한 몸짓 사용자	기타	계
모두 이해	137(16.0)	16(24.2)	16(35.6)	4(4.7)	1(7.1)	174(16.4)
대부분 이해	225(26.3)	27(40.9)	14(31.1)	13(15.3)	7(50.0)	286(26.9)
50% 이해	347(40.6)	17(25.8)	11(24.4)	23(27.1)	5(35.7)	403(37.9)
대부분 이해 안됨	97(11.4)	4(6.1)	3(6.7)	21(24.7)	0(0)	125(11.7)
전혀 이해 안됨	48(5.6)	2(3.0)	1(2.2)	24(28.2)	1(7.1)	76(7.1)
계	854(100)	66(100)	45(100)	85(100)	14(100)	1,064(100)

결측치 :152명

학력별로 자막 방송 내용 이해 정도를 보면, <표 4.25>와 같이 대학원 재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은 내용 모두를 이해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대졸 이하와 고졸 이하의 학력을 가진 사람은 대부분 이해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하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은 50% 정도 이

해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많았다.

<표 4.25> 학력별 자막 방송 내용 이해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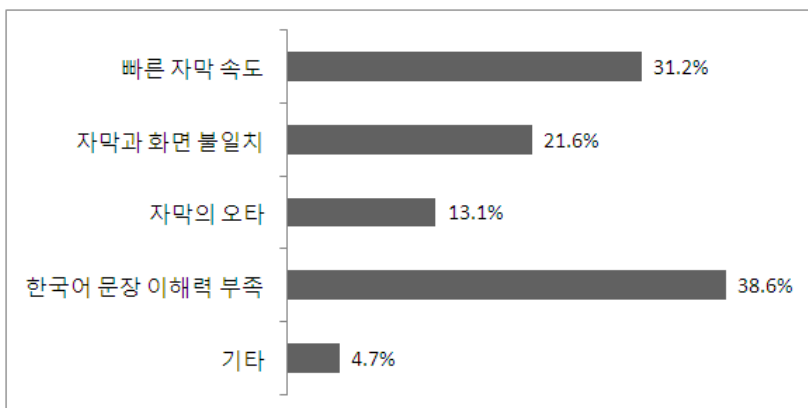
단위: 명(%)

구 분	무학	초졸 이하	중졸 이하	고졸 이하	대졸 이하	대학원이상	계
모두 이해	5(2.9)	26(12.1)	43(17.8)	62(18.0)	34(40.5)	8(66.7)	178(16.6)
대부분 이해	13(7.4)	43(20.0)	54(22.3)	138(40.1)	35(41.7)	2(16.7)	285(26.6)
50% 이해	56(32.0)	96(44.7)	116(47.9)	126(36.6)	14(16.7)	1(8.3)	409(38.2)
대부분 이해 안됨	57(32.6)	32(14.9)	21(8.7)	14(4.1)	0(0)	0(0)	124(11.6)
전혀 이해 안됨	44(25.1)	18(8.4)	8(3.3)	4(1.2)	1(1.2)	1(8.3)	76(7.1)
계	175(100)	215(100)	242(100)	344(100)	84(100)	12(100)	1,072(100)

결측치: 144명

4.8.5. 자막 방송 내용이 이해가 잘 안 되는 이유

자막 방송 내용이 이해가 잘 안 되는 이유에 대한 복수 응답 분석 결과는 <그림 4.51>과 같이, 응답자 중 38.6%가 한국어 문장 이해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답하였으며, 31.2%는 빠른 자막 속도로 인해, 21.6%는 자막과 화면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



<그림 4.51> 자막 방송 내용이 이해가 잘 안 되는 이유(복수 응답)

의사소통 수단별 자막 방송 내용이 이해가 잘 안 되는 이유를 보면, <표

4.26>과 같이 수화 사용자와 단순한 몸짓 사용자는 문장 이해력 부족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말 사용자는 빠른 자막 속도 때문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많았다.

<표 4.26> 의사소통 수단별 자막 방송 내용이 이해가 잘 안 되는 이유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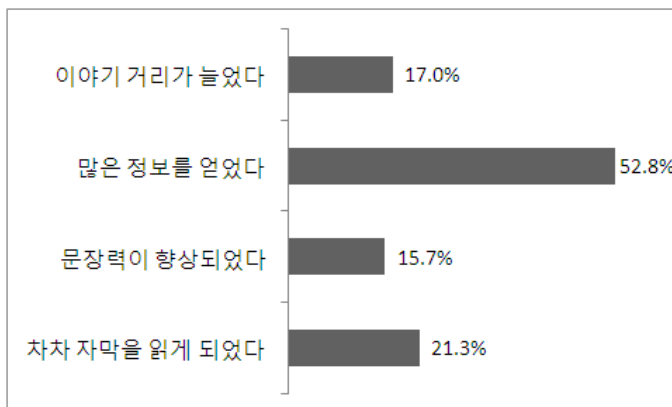
구 분	수화 사용자	말 사용자	글 사용자	단순한 몸짓 사용자	기타	계
빠른자막속도	258(31.0)	25(42.4)	12(27.3)	23(27.7)	5(41.7)	323(31.4)
자막과 화면 불일치	183(22.0)	18(30.5)	10(22.7)	12(14.5)	2(16.7)	225(21.9)
자막의 오타	114(13.7)	7(11.9)	10(22.7)	2(2.4)	1(8.3)	134(13.0)
문장 이해력 부족	328(39.5)	10(16.9)	11(25.0)	44(53.0)	2(16.7)	395(38.4)
기타	30(3.6)	3(5.1)	4(9.1)	8(9.6)	3(2.5)	48(4.7)

결측치 :187명

(복수 응답)

4.8.6. 자막 방송을 보고 좋아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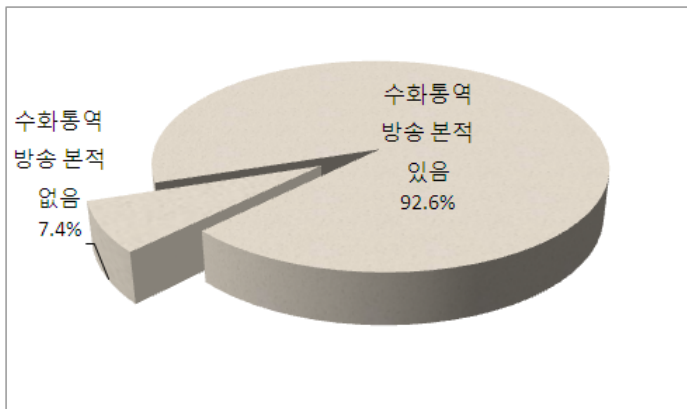
자막 방송을 보고 좋아진 점에 대한 복수 응답 분석 결과는 <그림 4.52>와 같이, 응답자 중 52.8%가 많은 정보를 얻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21.3%가 차차 자막을 읽게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그림 4.52> 자막 방송을 보고 좋아진 점(복수 응답)

4.8.7. 방송에서 수화통역을 본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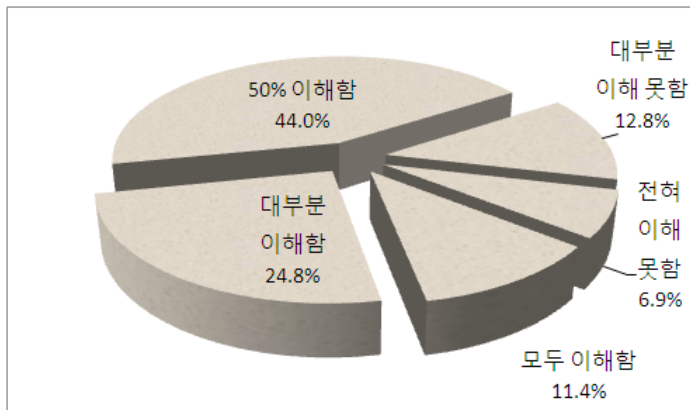
방송에서 하는 수화통역을 본 적이 있는가에 대한 조사 분석 결과는 <그림 4.53>과 같이, 응답자 1,178명 중 92.6%가 수화통역 방송을 본 적이 있고 7.4%는 본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53> 방송에서 수화통역을 본 경험

4.8.8. 방송에서 하는 수화통역의 이해 정도

방송에서 하는 수화통역의 이해정도에 대한 조사 분석 결과는 <그림 4.54>와 같이, 응답자 1,155명 중 44.0%가 수화통역 방송의 50% 정도를 이해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모두 이해한다는 응답은 11.4%, 전혀 이해가 안 된다는 응답은 6.9%로 나타났다.



<그림 4.54> 방송에서 하는 수화통역의 이해 정도

의사소통 수단별 방송에서 하는 수화통역의 이해 정도를 보면, <표 4.27>과 같이 수화 사용자는 수화통역 방송을 50% 정도 이해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단순한 몸짓 사용자는 대부분 이해 못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27> 의사소통 수단별 방송에서 하는 수화통역의 이해 정도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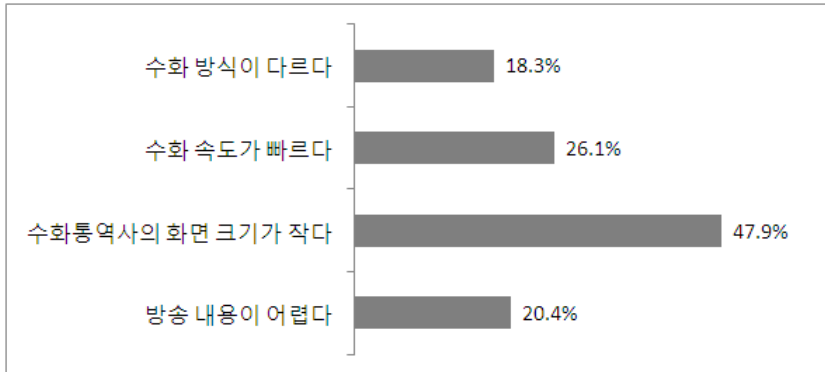
구 분	수화 사용자	말 사용자	글 사용자	단순한 몸짓 사용자	기타	계
모두 이해	110(12.2)	8(11.3)	8(17.8)	3(2.9)	0(0)	129(11.3)
대부분 이해	242(26.7)	18(25.4)	7(15.6)	12(11.5)	4(28.6)	283(24.8)
50% 이해	423(46.7)	21(29.6)	21(46.7)	30(28.8)	6(42.9)	501(44.0)
대부분 이해 못함	96(10.6)	10(14.1)	7(15.6)	33(31.7)	1(7.1)	147(12.9)
전혀 이해 못함	34(3.8)	14(19.7)	2(4.4)	26(25.0)	3(21.4)	79(6.9)
계	905(100)	71(100)	45(100)	104(100)	14(100)	1,139(100)

결측치 : 77명

4.8.9. 방송에서 하는 수화통역이 이해가 안 되는 이유

방송에서 하는 수화통역이 이해가 안 되는 이유에 대한 복수 응답 분석 결과는 그림 <그림 4.55>와 같이, 응답자 중 47.9%가 수화통역사의 크기가 작다고 응답하였으며 26.1%는 수화 속도가 빠르다고 응답하였고 18.3%는 수화 방식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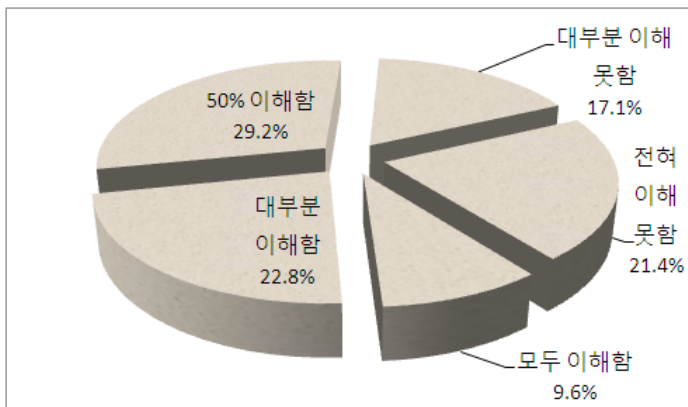
다르다고 응답하였다.



<그림 4.55> 방송에서 하는 수화통역이 이해가 안 되는 이유(복수 응답)

4.8.10. 인터넷에 나오는 정보 이해 정도

인터넷에 나오는 정보 이해 정도에 대한 조사 분석 결과는 <그림 4.56>과 같이, 응답자 1,149명 중 29.2%가 인터넷 정보의 50% 정도를 이해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모두 이해한다는 응답은 9.6%, 전혀 이해가 안 된다는 응답은 21.4%로 나타났다.



<그림 4.56> 인터넷에 나오는 정보 이해 정도

의사소통 수단별 인터넷에 나오는 정보 이해 정도를 보면, <표 4.28>과 같이

수화 사용자는 수화통역 방송을 50% 정도 이해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말이나 글 사용자는 대부분 이해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많았으며 단순한 몸짓 사용자는 대부분 이해 못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28> 의사소통 수단별 인터넷에 나오는 정보 이해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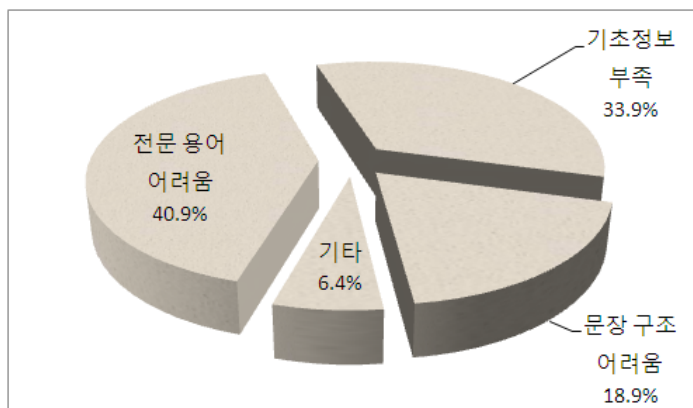
단위: 명(%)

구 분	수화 사용자	말 사용자	글 사용자	단순한 몸짓 사용자	기타	계
모두 이해	90(10.1)	11(13.9)	5(11.1)	3(3.0)	0(0)	109(9.6)
대부분 이해	207(23.2)	25(31.6)	13(28.9)	8(8.1)	9(60.0)	262(23.1)
50% 이해	266(29.8)	20(25.3)	12(26.7)	24(24.2)	3(20.0)	325(28.7)
대부분 이해 못함	160(17.9)	8(10.1)	5(11.1)	21(21.2)	1(6.7)	195(17.2)
전혀 이해 못함	171(19.1)	15(19.0)	10(22.2)	43(4.34)	2(13.3)	241(21.3)
계	894(100)	79(100)	45(100)	99(100)	15(100)	1,132(100)

결측치 : 84명

4.8.11. 인터넷에 나오는 정보가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

인터넷에 나오는 정보가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에 대한 조사 분석 결과는 그림 <그림 4.57>과 같이, 응답자 1,023명 중 40.9%가 전문적인 용어(외래어, 외국어)가 이해하기 어렵다고 응답하였고, 33.9%는 기초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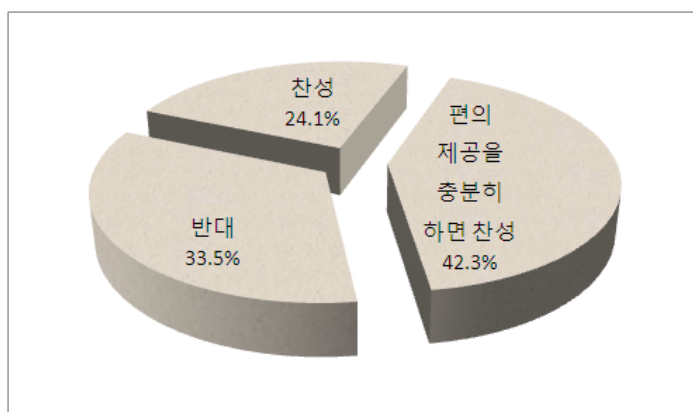


<그림 4.57> 인터넷에 나오는 정보가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

4.9. 학교 교육에서 수화

4.9.1. 청각장애인의 통합 교육에 대한 생각

청각장애인의 통합 교육에 대한 조사 분석 결과는 그림 <그림 4.58>과 같이, 응답자 1,136명 중 24.1%가 찬성한다, 42.3%가 편의 제공을 충분히 하면 찬성한다고 응답하였으며 33.5%는 반대한다고 응답하였다.



<그림 4.58> 청각장애인의 통합 교육에 대한 생각

의사소통 수단별 청각장애인의 통합 교육에 대한 생각을 보면, <표 4.29>와 같이 말 사용자의 통합교육 찬성 비율은 높게 나타난 반면, 다른 수단으로 의사소통을 하는 사람들의 찬성 비율은 낮은 편으로 조사되었다.

<표 4.29> 의사소통 수단별 청각장애인의 통합 교육에 대한 생각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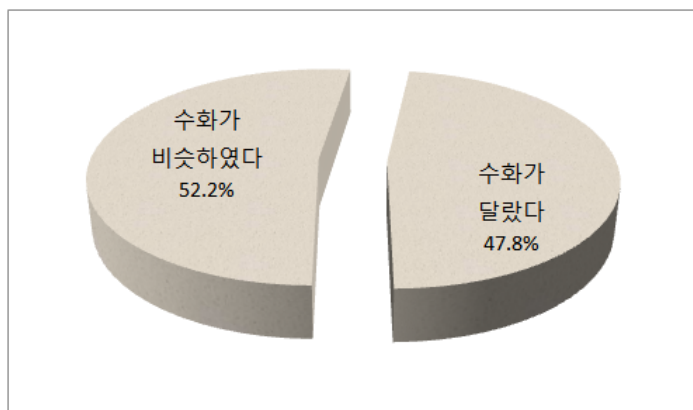
구 분	수화 사용자	말 사용자	글 사용자	단순한 몸짓 사용자	기타	계
찬성	198(22.1)	30(41.7)	13(28.3)	26(27.7)	4(30.8)	271(24.2)
편의 제공시 찬성	380(42.5)	28(38.9)	23(50.0)	37(39.4)	6(46.2)	474(42.4)
반대	316(35.3)	14(19.4)	10(21.7)	31(33.0)	3(23.1)	374(33.4)

구 분	수화 사용자	말 사용자	글 사용자	단순한 몸짓 사용자	기타	계
계	894(100)	72(100)	46(100)	94(100)	13(100)	1,119(100)

결측치 : 97명

4.9.2. 자기의 수화와 농학교 선생님의 수화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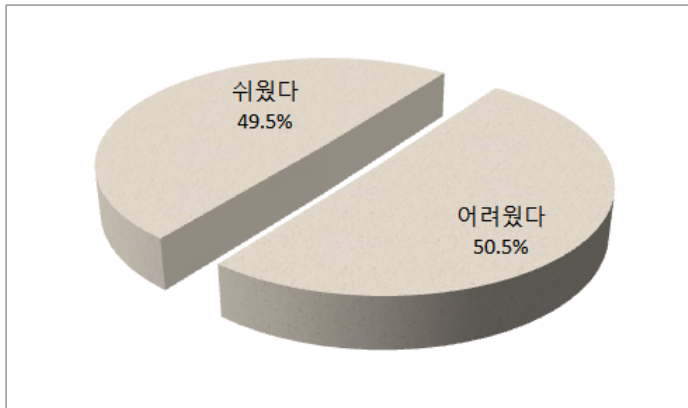
자기의 수화와 농학교 선생님의 수화가 비슷했는가에 대한 조사 분석 결과는 그림 <그림 4.59>와 같이, 응답자 824명 중 52.2%가 선생님의 수화와 자기의 수화가 비슷하다고 응답하였고 47.8%는 서로 다르다고 응답하였다.



<그림 4.59> 자기의 수화와 농학교 선생님의 수화가 비슷했는가?

4.9.3. 수화로 하는 농학교 선생님의 수업 내용 이해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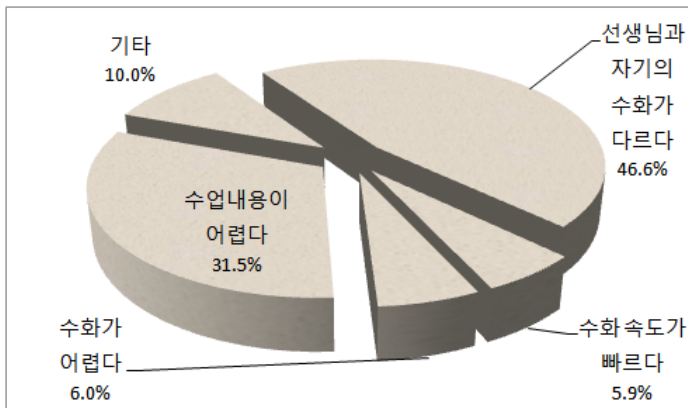
수화로 하는 농학교 선생님의 수업 내용 이해하기에 대한 조사 분석 결과는 그림 <그림 4.60>과 같이, 응답자 819명 중 49.5%가 이해하기 쉬웠다고 응답하였고 50.5%는 어려웠다고 응답하였다.



<표 4.60> 수화로 하는 농학교 선생님의 수업 내용 이해하기

4.9.4. 농학교 선생님의 수화를 이해하기 어려웠던 이유

농학교 선생님의 수화를 이해하기 어려웠던 이유에 대한 조사 분석 결과는 그림 <그림 4.61>과 같이, 응답자 699명 중 46.6%가 선생님의 수화와 자신의 수화와 다르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으며, 31.5%는 수업내용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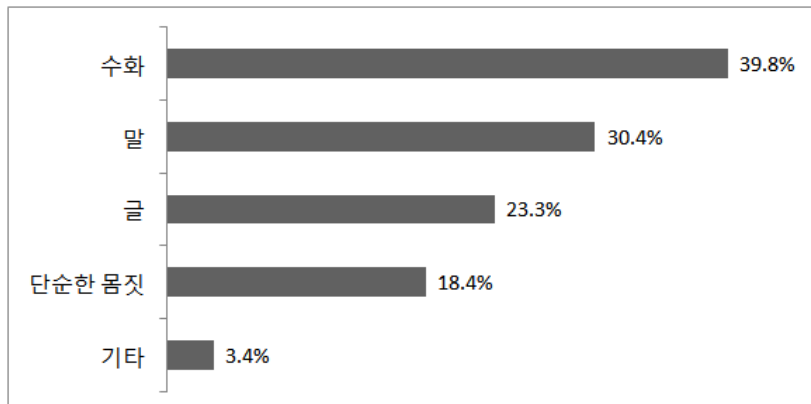


<그림 4.61> 농학교 선생님의 수화를 이해하기 어려웠던 이유

4.9.5. 통합학교에서 사용한 친구나 선생님의 대화 수단

통합학교에서 사용한 친구나 선생님의 대화 수단에 대한 복수 응답 분석 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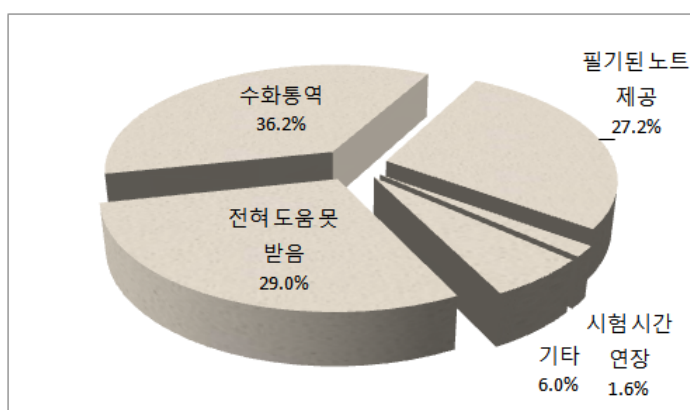
과는 그림 <그림 4.62>와 같이, 응답자 중 39.8%가 수화인 것으로 나타났고 30.4%는 말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23.3%는 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62> 통합학교에서 사용한 친구나 선생님과 대화 수단(복수 응답)

4.9.6. 통합학교에서 선생님의 수업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받은 도움

통합학교에서 선생님의 수업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받은 도움에 대한 조사 분석 결과는 <그림 4.63>과 같이, 응답자 448명 중 36.2%가 수화 통역을 받았으며, 29.0%는 어떠한 도움도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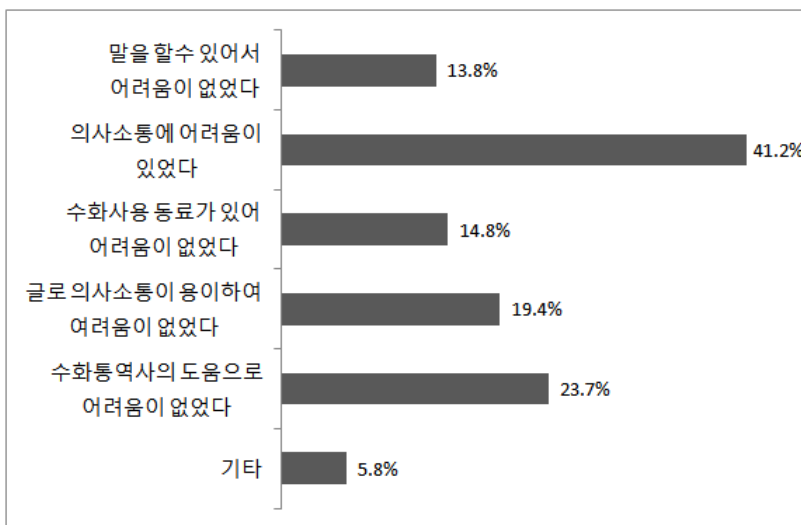


<그림 4.63> 통합학교에서 선생님의 수업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받은 도움

4.10. 사회활동 속에서의 의사소통

4.10.1. 직장생활에서 겪는 의사소통의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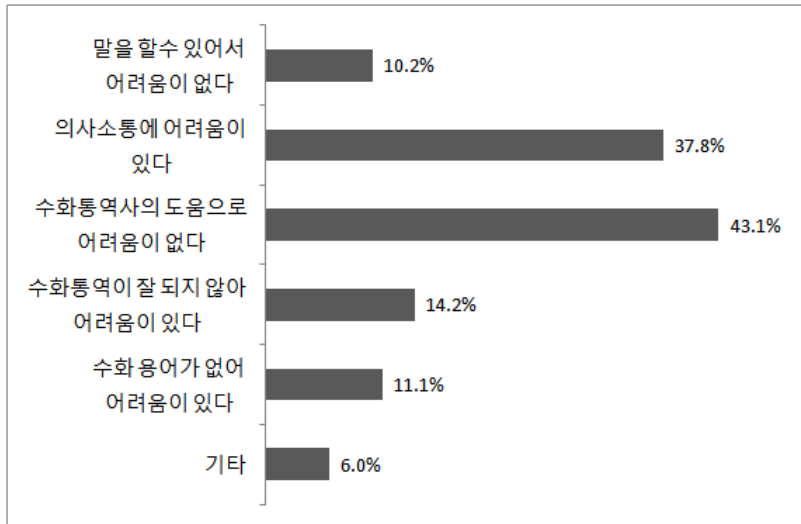
직장생활에서 겪는 의사소통의 어려움에 대한 복수 응답 분석 결과는 그림 <그림 4.64>와 같이, 응답자 중 41.2%가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응답했으며, 수화통역사, 수화사용 동료, 글 또는 말의 사용으로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4.64> 직장생활에서 겪는 의사소통의 어려움(복수 응답)

4.10.2. 사회생활(법정, 선거, 의료 등)에서 겪는 의사소통의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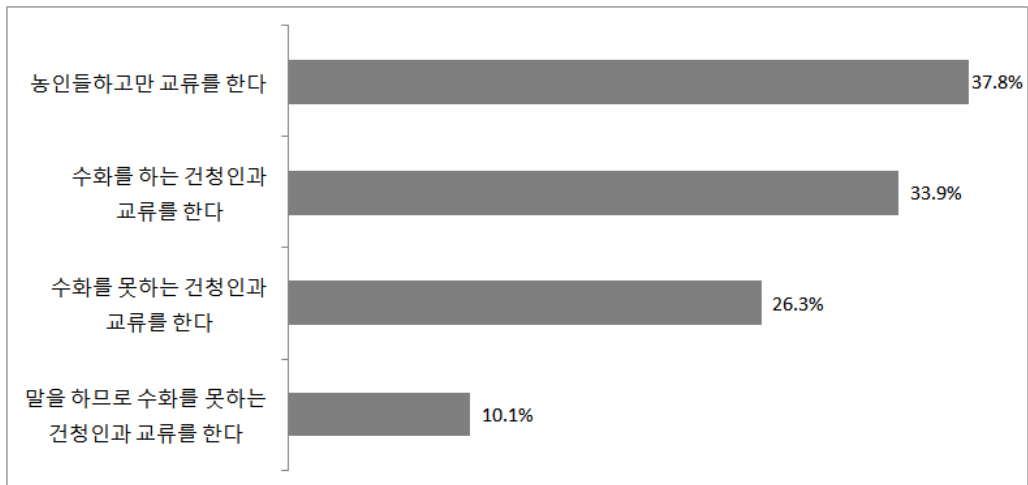
사회생활에서 겪는 의사소통의 어려움에 대한 복수 응답 분석 결과는 그림 <그림 4.65>와 같이, 응답자 중 43.1%가 수화통역사의 도움으로 어려움이 없다고 응답했으며, 10.2%는 말을 할 수 있어서 어려움이 없다고 응답했다. 그 밖의 경우에는 수화통역의 문제, 수화용어의 부재 등의 이유로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그림 4.65> 사회생활에서 겪는 의사소통의 어려움(복수 응답)

4.10.3. 청인과의 교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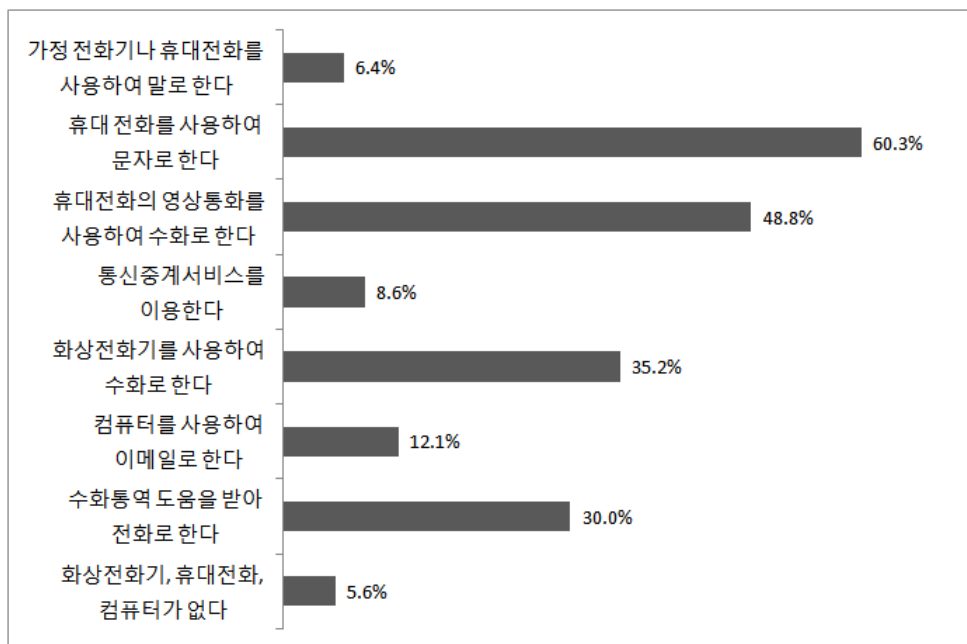
청인과의 교류에 대한 복수 응답 분석 결과는 그림 <그림 4.66>과 같이, 응답자 중 37.8%가 농인들하고만 교류를 한다고 응답했으며, 26.3%는 수화를 하지 못하는 청인과도 교류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66> 청인과의 교류(복수 응답)

4.10.4. 다른 사람들과의 통신 수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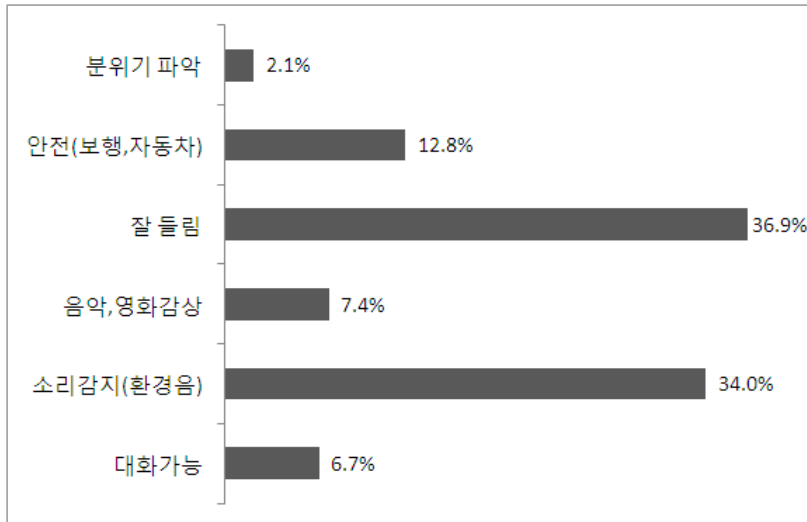
다른 사람들과의 통신 수단에 대한 복수 응답 분석 결과는 그림 <그림 4.67>과 같이, 응답자 중 60.3%가 휴대 전화를 사용하여 문자로 한다고 응답하였고, 48.8%는 휴대 전화의 영상통화를 사용하여 수화로 한다고 응답하였다. 그 밖에 화상전화기를 사용하거나 수화통역을 받아 전화로 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과 통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6.47> 다른 사람들과의 통신 수단(복수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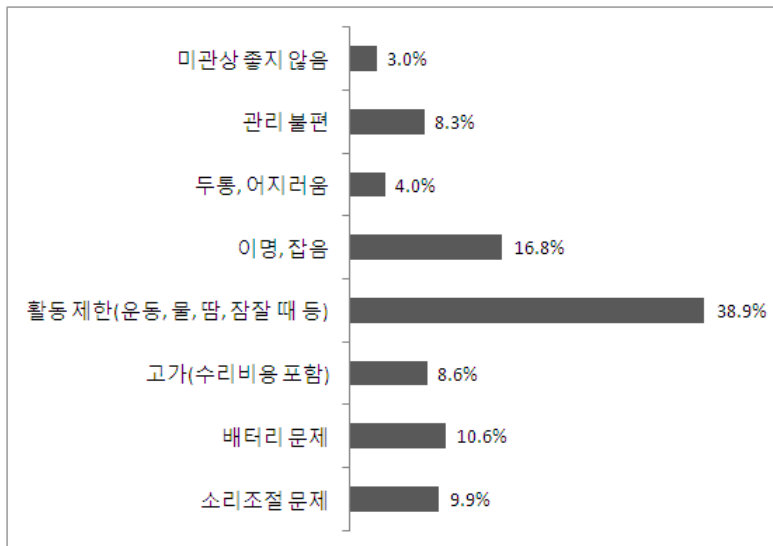
4.11. 보청기와 인공와우의 장단점

보청기를 착용하기 때문에 좋은 점에 대한 조사 분석 결과는 <그림 4.68>과 같이, 농학교 학생을 포함한 조사 대상 청각장애인의 전체 의견 중 36.9%가 ‘잘 들린다’로 나타났고, 34.0%는 ‘환경음 등의 소리를 감지할 수 있다’로 나타났다. 그 밖에 음악 감상, 보행 시 안전, 분위기 파악 등이 보청기를 착용하기 때문에 좋은 점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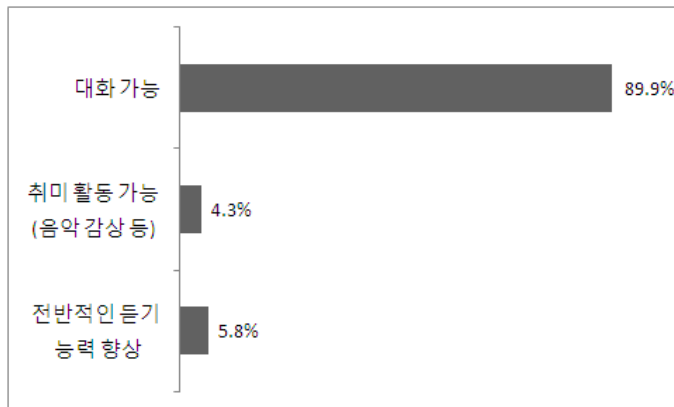
<그림 4.68> 보청기 착용의 장점

보청기를 착용하기 때문에 나쁜 점에 대한 조사 분석 결과는 <그림 4.69>과 같이, 농학교 학생을 포함한 조사 대상 청각장애인의 전체 의견 중 38.9%가 운동이나 물과 관련된 행동 등 전반적인 활동에 제한을 받는 것이 불편하다고 응답하였다. 그 밖에 이명·잡음, 배터리 문제, 관리 불편, 비용, 미관 등으로 인한 불편함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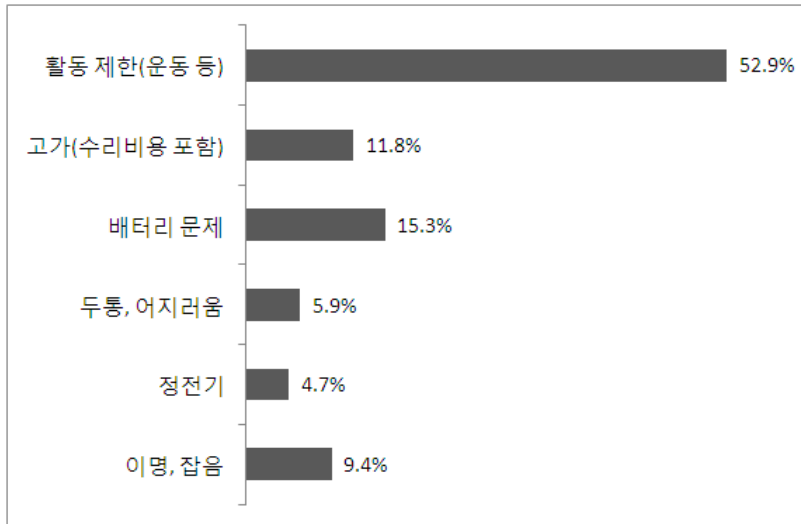
<그림 4.69> 보청기 착용의 단점

인공와우를 착용하기 때문에 좋은 점에 대한 조사 분석 결과는 <그림 4.70>과 같이, 농학교 학생을 포함한 조사 대상 청각장애인의 전체 의견 중 89.9%가 대화가 가능해서 좋다고 응답하였고 4.3%는 음악 감상 등의 취미활동을 할 수 있어서 좋다고 응답하였다.



<그림 4.70> 인공와우 착용의 장점

보청기를 착용하기 때문에 나쁜 점에 대한 조사 분석 결과는 <그림 4.71>과 같이, 농학교 학생을 포함한 조사 대상 청각장애인의 전체 의견 중 52.9%가 운동이나 물과 관련된 행동 등 전반적인 활동에 제한을 받는 것이 불편하다고 응답하였다. 그 밖에 가격, 이명·잡음, 배터리 문제, 두통과 어지러움, 정전기 등으로 인한 불편함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4.71> 인공와우 착용의 단점

4.12. 청력 손실 정도에 따른 언어 사용 실태(농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4.12.1. 보청기 착용 전후의 청력 손실도

보청기 착용 전후의 청력 손실 정도를 분석한 결과 <표 4.30>과 같이 보청기 착용 후 오른쪽 귀는 청력 손실도가 평균 94.92dB에서 56.19dB로 청력이 38dB 정도 향상되었으며, 왼쪽 귀는 97.50dB에서 55.26dB로 청력이 42dB 정도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0> 보청기 착용 전후의 청력 손실도

구 분	착용 전		착용 후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오른쪽 귀	94.92 dB	13.96	56.19 dB	16.23
왼쪽 귀	97.50 dB	55.26	55.26 dB	16.34

(보청기 착용 전후의 청력이 모두 기록된 자료만 사용함, 우 82명, 좌 81명)

4.12.2. 인공와우 착용 전후의 청력 손실도

인공와우 착용 전후의 청력 손실 정도를 분석한 결과 <표 4.31>과 같이 인공와우 착용 후 오른쪽 귀는 청력 손실도가 평균 110.32dB에서 37.14dB로 청력이 73dB 정도 향상되었으며, 왼쪽 귀는 104.62dB에서 37.85dB로 청력이 67dB 정도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공와우가 보청기를 착용했을 때 보다 청력 향상 효과가 2배 정도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1> 인공와우 착용 전후의 청력 손실도

구 분	착용 전		착용 후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오른쪽 귀	110.32 dB	13.06	37.14 dB	8.61
왼쪽 귀	104.62 dB	15.84	37.85 dB	10.85

(인공와우 착용 전후의 청력이 모두 기록된 자료만 사용함, 우 40명, 좌 19명)

4.12.3. 청력손실도별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전달할 때 주로 사용하는 수단

청력손실도별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전달할 때 주로 사용하는 수단을 보면, <표 4.32>와 같이 청력손실도가 30dB 미만일 때에는 주로 말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청력 손실도가 클수록 수화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2 > 청력손실도별 자신의 생각을 전달할 때 주로 사용하는 수단 단위: 명(%)

구 분	30dB 미만	30~49dB	50~69dB	70~89dB	90dB 이상	계
수화	1(7.7)	44(51.8)	37(77.1)	9(81.8)	11(73.3)	102(59.3)
말	12(92.3)	30(35.3)	8(16.7)	2(18.2)	1(6.7)	53(30.8)
글	0(0)	1(1.2)	1(2.1)	0(0)	0(0)	2(1.2)
단순한 몸짓	0(0)	10(11.8)	2(4.2)	0(0)	3(20.0)	15(8.7)
계	13(100)	85(100)	48(100)	11(100)	15(100)	172(100)

결측치: 10명. (상기의 청력손실도는 보청기나 인공와우를 착용한 상태의 것임)

4.12.4. 청력손실도별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때 주로 사용하는 수단

청력손실도별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때 주로 사용하는 보면, <표 4.33>과 같이 청력손실도가 30dB 미만일 때에는 주로 말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30~49dB인 경우는 수화와 말을 사용하고 있으며, 50dB 이상인 경우에는 수화와 단순한 몸짓으로 상대방의 말을 알아듣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3> 청력손실도별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때 주로 사용하는 수단 단위: 명(%)

구 분	30dB 미만	30~49dB	50~69dB	70~89dB	90dB 이상	계
수화	1(7.7)	36(42.4)	29(60.4)	8(72.7)	9(60.0)	83(48.3)
말	10(76.9)	39(45.9)	13(27.1)	3(27.3)	3(20.0)	68(40.0)
글	0(0)	2(2.4)	4(8.3)	1(9.1)	1(6.7)	8(4.7)
단순한 몸짓	3(23.1)	23(27.1)	20(41.7)	3(27.3)	7(46.7)	56(32.6)
기타	0(0)	2(2.4)	1(2.1)	0(0)	0(0)	3(1.7)

결측치10명.(상기의 청력손실도는 보청기나 인공와우를 착용한 상태의 것임. 복수 응답)

4.12.5. 청력손실도별 수화를 할 수 있는 정도

청력손실도별 수화를 할 수 있는 정도를 보면, <표 4.34>와 같이 청력손실도가 30dB 미만은 수화를 못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30~49dB은 간단하고 쉬운 것을 할 수 있다는 응답이 많았으며, 50dB 이상은 수화를 잘하는 편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4> 청력손실도별 수화를 할 수 있는 정도 단위: 명(%)

구 분	30dB 미만	30~49dB	50~69dB	70~89dB	90dB 이상	계
잘 한다	1(7.7)	9(10.7)	6(12.2)	1(9.1)	0(0)	17(9.9)
잘 하는 편이다	0(0)	17(20.2)	21(42.9)	5(42.5)	8(53.3)	51(29.7)
간단하고 쉬운 것 함	2(15.4)	32(38.1)	18(36.7)	2(18.2)	4(26.7)	58(33.7)
못 한다	9(69.2)	23(27.4)	4(8.2)	2(18.2)	3(20.0)	41(23.8)
배우는 중이다	1(7.7)	3(3.6)	0(0)	1(9.1)	0(0)	5(2.9)
계	13(100)	84(100)	49(100)	11(100)	15(100)	172(100)

결측치: 10명 (상기의 청력손실도는 보청기나 인공와우를 착용한 상태의 것임)

4.12.6. 청력손실도별 말을 할 수 있는 정도

청력손실도별 말을 할 수 있는 정도를 보면, <표 4.35>와 같이 청력손실도가 30dB 미만은 수화를 못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30~49dB은 간단하고 쉬운 것은 할 수 있다는 응답이 많았으며, 50dB 이상은 수화를 잘하는 편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5> 청력손실도별 말을 할 수 있는 정도

단위: 명(%)

구 분	30dB 미만	30~49dB	50~69dB	70~89dB	90dB 이상	계
잘 한다	5(38.5)	10(11.8)	5(10.2)	2(18.2)	1(6.7)	23(13.3)
잘 하는 편이다	5(38.5)	28(32.9)	6(12.2)	1(9.1)	3(20.0)	43(24.9)
잘 하지는 못한다	2(15.4)	33(38.8)	29(59.2)	4(36.4)	6(40.0)	74(42.8)
못한다	1(7.7)	7(8.2)	7(14.3)	3(27.3)	4(26.7)	22(12.7)
배우는중이다	0(0)	7(8.2)	2(4.1)	1(9.1)	1(6.7)	11(6.4)
계	13(100)	85(100)	49(100)	11(100)	15(100)	173(100)

결측치: 9명

(상기의 청력손실도는 보청기나 인공와우를 착용한 상태의 것임)

4.12.7. 청력손실도별 상대방이 하는 말을 알아듣는 정도

청력손실도별 상대방이 하는 말을 알아듣는 정도를 보면, <표 4.36>과 같이 청력손실도가 49dB 이하는 보통소리를 50% 이상 이해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50~69dB은 큰소리를 들을 수는 있지만 이해하지 못한다는 응답이 많았으며, 70dB 이상은 큰소리도 듣지 못하거나 듣더라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6> 청력손실도별 상대방이 하는 말을 듣는 정도

단위: 명(%)

구 분	30dB 미만	30~49dB	50~69dB	70~89dB	90dB 이상	계
(큰소리)듣지 못함	0(0)	2(2.4)	2(4.1)	4(36.4)	4(28.6)	12(7.0)
(큰소리)듣지만 이해 못함	1(7.7)	22(26.2)	21(42.9)	2(18.2)	6(42.9)	52(30.4)
(큰소리)조금 이해	0(0)	12(14.3)	5(10.2)	1(9.1)	2(14.3)	20(11.7)

구 분	30dB 미만	30~49dB	50~69dB	70~89dB	90dB 이상	계
(큰소리)50%이상 이해	0(0)	5(6.0)	3(6.1)	0(0)	0(0)	8(4.7)
(보통소리)조금 이해	0(0)	11(13.1)	12(24.5)	3(27.3)	2(14.3)	28(16.4)
(보통소리)50%이상 이해	8(61.5)	29(34.5)	4(8.2)	0(0)	0(0)	41(24.0)
(보통소리)100% 이해	4(30.8)	3(3.6)	2(4.1)	1(9.1)	0(0)	10(5.8)
계	13(100)	84(100)	49(100)	11(100)	14(100)	171(100)

결측치: 11명 (상기의 청력손실도는 보청기나 인공와우를 착용한 상태의 것임)

4.12.8. 청력손실도별 소음이 있는 곳에서 듣는 정도

청력손실도별 소음이 있는 곳에서 듣는 정도를 보면, <표 4.37>과 같이 청력 손실도가 30dB 미만은 소음이 없는 곳에서 듣는 정도로 듣는다는 응답이 많았으며, 30dB 이상은 잘 들리지 않는다고 응답이 많았다.

<표 4.37> 청력손실도별 소음이 있는 곳에서 듣는 정도

단위: 명(%)

구 분	30dB 미만	30~49dB	50~69dB	70~89dB	90dB 이상	계
소음 없는 곳과 비슷함	7(53.8)	23(27.7)	7(14.3)	1(9.1)	2(13.3)	40(23.4)
잘 들리지 않음	5(38.5)	49(59.0)	34(69.4)	6(54.5)	9(60.0)	103(60.2)
전혀 들리지 않음	1(7.7)	11(13.3)	8(16.3)	4(36.4)	4(26.7)	28(16.4)
계	13(100)	83(100)	49(100)	11(100)	15(100)	171(100)

결측치: 11명 (상기의 청력손실도는 보청기나 인공와우를 착용한 상태의 것임)

4.12.9. 청력손실도별 자기가 하는 말을 상대방이 이해하는 정도

청력손실도별 자기가 하는 말을 상대방이 이해하는 정도를 보면, <표 4.38>과 같이 청력손실도가 30dB 미만은 50% 또는 100% 이해하는 것 같다는 응답이 많았고, 30~49dB은 조금 이해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50~89dB은 조금 이해하거나 또는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는 응답이 많았으며 90dB 이상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는 응답이 많았다.

<표 4.38> 청력손실도별 자기가 하는 말을 상대방이 이해하는 정도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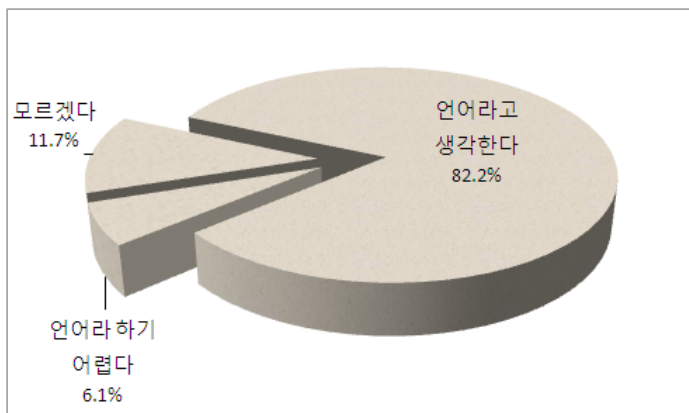
구 분	30dB 미만	30~49dB	50~69dB	70~89dB	90dB 이상	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음	0(0)	21(24.7)	19(38.8)	5(45.5)	8(53.3)	53(30.6)
조금 이해하는 것 같음	3(23.1)	37(43.5)	20(40.8)	5(45.5)	5(33.3)	70(40.5)
50%이상 이해하는 것 같음	5(38.5)	25(29.4)	8(16.3)	0(0)	2(13.3)	40(23.1)
100%이해하는 것 같음	5(38.5)	2(2.4)	2(4.1)	1(9.1)	0(0)	10(5.8)
계	13(100)	85(100)	49(100)	11(100)	15(100)	173(100)

결측치: 9명 (상기의 청력손실도는 보청기나 인공와우를 착용한 상태의 것임)

5. 수화와 수화 사용자에 대한 청인의 인식 및 이해도

5.1. 수화에 대한 청인의 인식 및 이해도

‘수화는 언어이다’에 대한 청인의 인식 및 이해도를 분석한 결과, <그림 5.1>과 같이 ‘수화는 언어라고 생각 한다’가 82.2%, ‘수화는 언어라 하기 어렵다’는 6.1% ‘모르겠다’는 11.7%로 나타났다.



<그림 5.1> ‘수화는 언어이다’에 대한 청인의 인식 및 이해도

‘수화는 언어이다’에 대한 연령층별 청인의 인식 및 이해도를 분석하면 <표 5.1>과 같이, 20~50대 연령층은 80% 이상 ‘수화는 언어이다’라고 응답하였으며, 60대와 70대 이상의 연령층은 ‘모르겠다’는 응답이 많았다.

<표 5.1> ‘수화는 언어이다’에 대한 연령층별 청인의 인식 및 이해도 단위: 명(%)

구 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계
수화는 언어라고 생각 한다	104(74.3)	150(88.2)	180(93.3)	165(85.5)	94(80.3)	48(66.7)	24(52.2)	765(82.2)
수화는 언어라 하기 어렵다	13(9.3)	8(4.7)	10(5.2)	14(7.3)	9(7.7)	1(1.4)	2(4.3)	57(6.1)
모르겠다	23(16.4)	12(7.1)	3(1.6)	14(7.3)	14(12.0)	23(31.9)	20(43.5)	109(11.7)
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931(100)

무응답: 2명

‘수화는 언어이다’에 대한 학력별 청인의 인식 및 이해도를 분석하면, <표 5.2>와 같이 학력이 높을수록 수화가 언어라는 응답이 많았으며, 학력이 낮을수록 ‘모르겠다’는 응답이 많았다.

<표 5.2> ‘수화는 언어이다’에 대한 학력별 청인의 인식 및 이해도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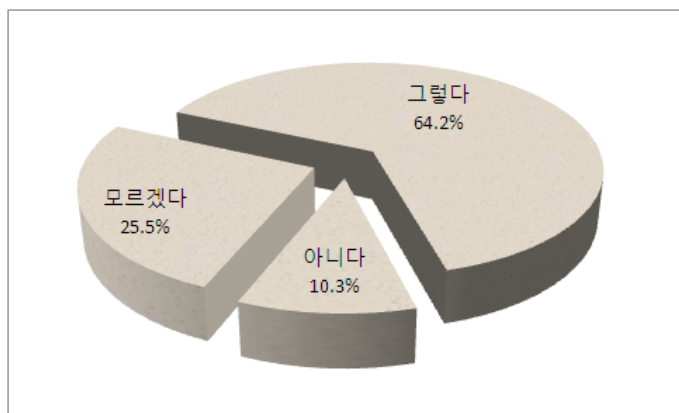
구 분	무학	초졸 이하	중졸 이하	고졸 이하	대졸 이하	대학원이상	계
수화는 언어라고 생각한다	5(28.7)	54(60.0)	73(70.2)	212(82.2)	379(90.9)	42(95.5)	765(82.2)
수화는 언어라 하기 어렵다	1(5.6)	6(6.7)	15(14.4)	18(7.0)	16(3.8)	1(2.3)	57(6.1)
모르겠다	12(66.7)	30(33.3)	16(15.4)	28(10.9)	22(5.3)	1(2.3)	109(11.7)
계	18(100)	90(100)	104(100)	258(100)	417(100)	44(100)	931(100)

무응답: 2명

5.2. 수화의 날에 대한 청인의 인식 및 이해도

5.2.1. ‘수화의 날을 정하는 것이 좋다’에 대한 청인의 인식 및 이해도

한글날처럼 ‘수화의 날을 정하는 것이 좋다’에 대한 청인의 인식 및 이해도를 분석한 결과, <그림 5.2>와 같이 ‘그렇다’가 64.2%, ‘아니다’는 10.3% ‘모르겠다’는 25.5%로 나타났다.



<그림 5.2> ‘수화의 날을 정하는 것이 좋다’에 대한 청인의 인식 및 이해도

‘수화의 날을 정하는 것이 좋다’에 대한 연령층별 청인의 인식 및 이해도를 분석하면 <표 5.3>과 같이, 20대와 30대 연령층에서 ‘그렇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5.3> ‘수화의 날을 정하는 것이 좋다’에 대한 연령층별 청인의 인식 및 이해도
단위: 명(%)

구 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계
그렇다	80(56.7)	121(71.2)	146(76.4)	126(64.9)	64(54.7)	36(50.0)	25(54.3)	598(64.2)
아니다	21(14.9)	14(8.2)	16(8.4)	23(11.9)	12(10.3)	8(11.1)	2(4.3)	96(10.3)
모르겠다	40(28.4)	35(20.6)	29(15.2)	45(23.2)	41(35.0)	28(38.9)	19(41.3)	237(25.5)
계	141(100)	170(100)	191(100)	194(100)	117(100)	72(100)	46(100)	931(100)

무응답: 2명

‘수화의 날을 정하는 것이 좋다’에 대한 학력별 청인의 인식 및 이해도를 분석하면, <표 5.4>와 같이 학력이 높을수록 ‘그렇다’는 응답이 많았으며, 학력이 낮을수록 ‘모르겠다’라는 응답이 많이 나타났다.

<표 5.4> ‘수화의 날을 정하는 것이 좋다’에 대한 학력별 청인의 인식 및 이해도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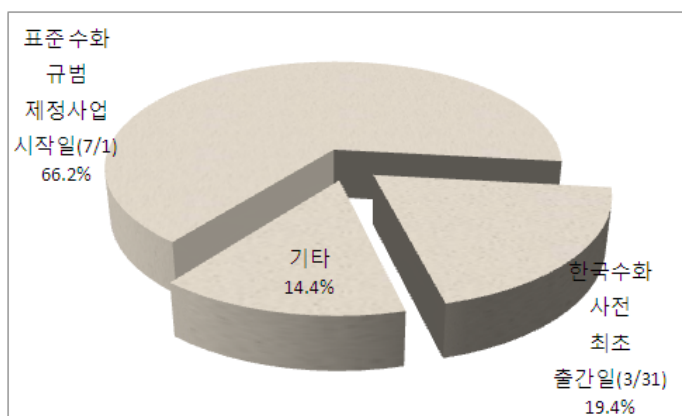
구 분	무학	초졸 이하	중졸 이하	고졸 이하	대졸 이하	대학원이상	계
그렇다	7(38.9)	48(53.3)	58(55.2)	166(64.1)	282(68.0)	37(84.1)	598(64.2)
아니다	0(0)	10(11.1)	13(12.4)	28(10.8)	40(9.6)	5(11.4)	96(10.3)
모르겠다	11(61.1)	32(35.6)	34(32.4)	65(25.1)	93(22.4)	2(4.5)	237(25.5)
계	18(100)	90(100)	105(100)	259(100)	415(100)	44(100)	931(100)

무응답: 2명

5.2.2. ‘수화의 날을 정한다면’에 대한 청인의 인식 및 이해도

‘수화의 날을 정한다면’ 언제가 좋을가에 대한 청인의 인식 및 이해도를 분석

한 결과, <그림 5.3>과 같이 ‘한국 표준 수화 규범 제정 사업을 시작한 날(7월 1일)’이 66.2%, ‘한국수화 사전을 처음 출간한 날(3월 31일)’이 19.4% ‘기타’가 14.4%로 나타났다. 기타 응답으로는 ‘농인의 날’, ‘농인이 원하는 날’, ‘수화교육을 시작한 날’, ‘한글날’ 등이 있었다.



<그림 5.3> ‘수화의 날을 정한다면’에 대한 청인의 인식 및 이해도

‘수화의 날을 정한다면’에 대한 연령층별 청인 인식 및 이해도는, <표 5.5>에 나타난 바와 같다.

<표 5.5> ‘수화의 날을 정한다면’에 대한 연령층별 청인 인식 및 이해도 단위: 명(%)

구 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계
표준수화 규범제정사업 시작일(7/1)	74(56.9)	120(76.9)	132(75.4)	114(67.9)	60(59.4)	32(55.2)	17(41.5)	549(66.2)
한국수화사전 출간일(3/31)	37(28.5)	23(14.7)	23(13.1)	34(20.2)	21(20.8)	13(22.4)	10(24.4)	161(19.4)
기타	19(14.6)	13(8.3)	20(11.4)	20(11.9)	20(19.8)	13(22.4)	14(34.1)	119(14.4)
계	130(100)	156(100)	175(100)	168(100)	101(100)	58(100)	41(100)	829(100)

무응답: 104명

‘수화의 날을 정한다면’에 대한 학력별 청인 인식 및 이해도 분석하면, <표 5.6>에 나타난 바와 같다.

<표 5.6> ‘수화의 날을 정한다면’에 대한 학력별 청인 인식 및 이해도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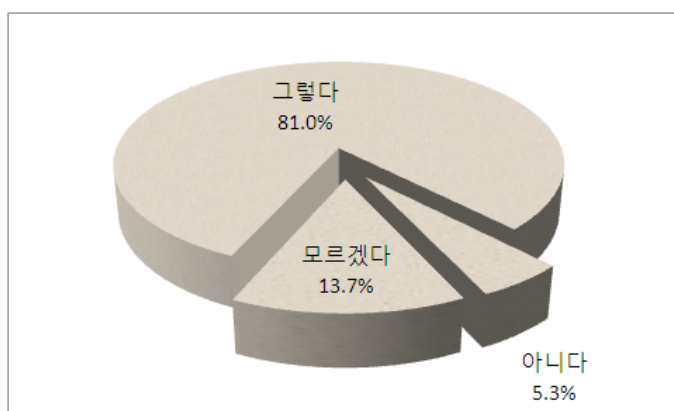
구 분	무학	초졸 이하	중졸 이하	고졸 이하	대졸 이하	대학원이상	계
표준수화 규범제정사업 시작일(7/1)	10(58.8)	36(46.2)	59(62.8)	150(64.7)	267(72.4)	27(69.2)	549(66.2)
한국 수화사전 출간일(3/31)	3(17.6)	25(32.1)	26(27.7)	51(22.0)	50(13.6)	6(15.4)	119(19.4)
기타	4(23.5)	17(21.8)	9(9.6)	31(13.4)	52(14.1)	6(15.4)	119(14.4)
계	17(100)	78(100)	94(100)	232(100)	369(100)	39(100)	829(100)

무응답: 104명

5.3. 수화의 사용에 대한 청인의 인식 및 이해도

5.3.1. ‘수화 사용자는 수화로 가정생활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에 대한 청인의 인식 및 이해도

‘수화 사용자는 수화로 가정생활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에 대한 청인의 인식 및 이해도는, <그림 5.4>와 같이 ‘그렇다’가 81.0%, ‘아니다’는 5.3% ‘모르겠다’는 13.7%로 나타났다.



<그림 5.4> ‘수화 사용자는 수화로 가정생활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에 대한 청인의 인식 및 이해도

‘수화 사용자는 수화로 가정생활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에 대한 연령층별

청인의 인식 및 이해도는, <표 5.7>에 나타난 바와 같다.

<표 5.7> ‘수화 사용자는 수화로 가정생활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에 대한 연령층별 청인의 인식 및 이해도
단위: 명(%)

구 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계
그렇다	104(73.8)	143(84.1)	170(88.5)	154(79.8)	98(83.8)	55(76.4)	30(65.2)	754(81.0)
아니다	7(5.0)	7(4.1)	11(5.7)	15(7.8)	3(2.6)	4(5.6)	2(4.3)	49(5.3)
모르겠다	30(21.3)	20(11.8)	11(5.7)	24(12.4)	16(13.7)	13(18.1)	14(30.4)	128(13.7)
계	141(100)	170(100)	192(100)	193(100)	117(100)	72(100)	46(100)	931(100)

무응답: 2명

‘수화 사용자는 수화로 가정생활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에 대한 학력별 청인의 인식 및 이해도는, <표 5.8>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학력이 높을수록 ‘그렇다’는 응답이 많고, 학력이 낮을수록 ‘모르겠다’는 응답이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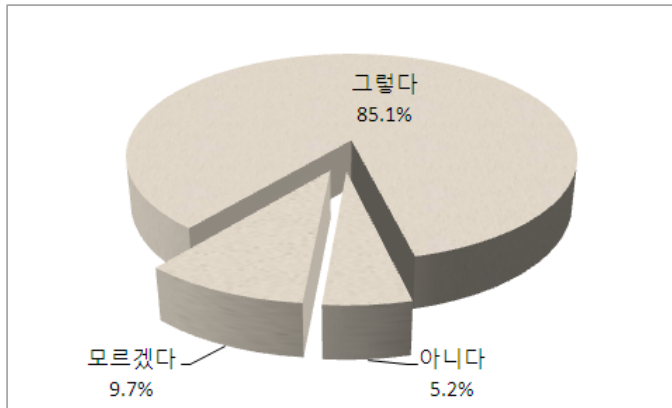
<표 5.8> ‘수화 사용자는 수화로 가정생활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에 대한 학력별 청인의 인식 및 이해도
단위: 명(%)

구 분	무학	초졸 이하	중졸 이하	고졸 이하	대졸 이하	대학원이상	계
그렇다	9(50.0)	63(70.0)	83(79.0)	216(83.4)	341(82.2)	42(95.5)	754(81.0)
아니다	1(5.6)	4(4.4)	3(2.9)	16(6.2)	25(6.0)	0(0.0)	49(5.3)
모르겠다	8(44.4)	23(25.6)	19(18.1)	27(10.4)	49(11.8)	2(4.5)	128(13.7)
계	18(100)	90(100)	105(100)	259(100)	415(100)	44(100)	931(100)

무응답: 2명

5.3.2. ‘수화 사용자는 수화로 학교생활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에 대한 청인의 인식 및 이해도

‘수화 사용자는 수화로 학교생활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에 대한 청인의 인식 및 이해도를 분석한 결과, <그림 5.5>와 같이 ‘그렇다’가 85.1%, ‘아니다’는 5.2% ‘모르겠다’는 9.7%로 나타났다.



<그림 5.5> ‘수화 사용자는 수화로 학교생활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에 대한 청인의 인식 및 이해도

‘수화 사용자는 수화로 학교생활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에 대한 연령층별 청인의 인식 및 이해도는, <표 5.9>에 나타난 바와 같다.

<표 5.9> ‘수화 사용자는 수화로 학교생활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에 대한 연령층별 청인의 인식 및 이해도
단위: 명(%)

구 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계
그렇다	113(80.7)	153(90.0)	174(90.2)	164(85.0)	99(84.6)	60(83.3)	29(64.4)	792(85.1)
아니다	8(5.7)	6(3.5)	9(4.7)	14(7.3)	6(5.1)	5(6.9)	0(0)	48(5.2)
모르겠다	19(13.6)	11(6.5)	10(5.2)	15(7.8)	12(10.3)	7(9.7)	16(35.6)	90(9.7)
계	140(100)	170(100)	193(100)	193(100)	117(100)	72(100)	45(100)	930(100)

무응답: 3명

‘수화 사용자는 수화로 학교생활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에 대한 학력별 청인의 인식 및 이해도는, <표 5.10>에 나타난 바와 같다.

<표 5.10> ‘수화 사용자는 수화로 학교생활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에 대한 학력별 청인의 인식 및 이해도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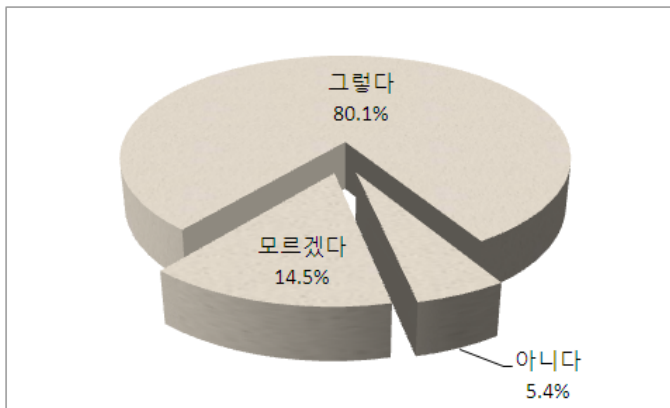
구 분	무학	초졸 이하	중졸 이하	고졸 이하	대졸 이하	대학원이상	계
그렇다	6(33.3)	67(75.3)	86(81.9)	227(88.0)	366(88.0)	40(90.9)	792(85.2)

구 분	무학	초졸 이하	중졸 이하	고졸 이하	대졸 이하	대학원이상	계
아니다	2(11.1)	5(5.6)	3(2.9)	13(5.0)	24(5.8)	1(2.3)	48(5.2)
모르겠다	10(55.6)	17(19.1)	16(15.2)	18(7.0)	26(6.3)	3(6.8)	90(9.7)
계	18(100)	89(100)	105(100)	258(100)	416(100)	44(100)	930(100)

무응답: 3명

5.3.3. ‘수화 사용자는 수화로 직장생활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에 대한 청인의 인식 및 이해도

‘수화 사용자는 수화로 직장생활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에 대한 청인의 인식 및 이해도를 분석한 결과, <그림 5.6>과 같이 ‘그렇다’가 80.1%, ‘아니다’는 5.4% ‘모르겠다’는 14.5%로 나타났다.



<그림 5.6> ‘수화 사용자는 수화로 직장생활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에 대한 청인의 인식 및 이해도

‘수화 사용자는 수화로 직장생활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에 대한 연령층별 청인의 인식 및 이해도는, <표 5.11>에 나타난 바와 같다.

<표 5.1> ‘수화 사용자는 수화로 직장생활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에 대한 연령층 청인의 인식 및 이해도
단위: 명(%)

구 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계
그렇다	109(77.9)	140(82.4)	163(84.5)	154(80.2)	95(81.2)	53(74.6)	30(65.2)	744(80.1)

구 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계
아니다	3(2.1)	9(5.3)	6(3.1)	15(7.8)	8(6.8)	8(11.3)	1(2.2)	50(5.4)
모르겠다	28(20.0)	21(12.4)	24(12.4)	23(12.0)	14(12.0)	10(14.1)	15(32.6)	135(14.5)
계	140(100)	170(100)	193(100)	192(100)	117(100)	71(100)	46(100)	929(100)

무응답: 4명

‘수화 사용자는 수화로 직장생활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에 대한 학력별 청인의 인식 및 이해도는, <표 5.12>에 나타난 바와 같다.

<표 5.12> ‘수화 사용자는 수화로 직장생활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에 대한 학력별 청인의 인식 및 이해도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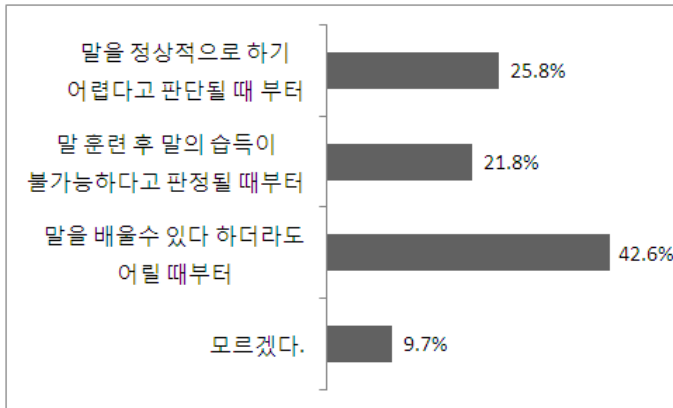
구 분	무학	초졸 이하	중졸 이하	고졸 이하	대졸 이하	대학원이상	계
그렇다	7(38.9)	67(74.4)	79(76.0)	210(81.7)	341(82.0)	40(90.9)	744(80.1)
아니다	3(16.7)	3(3.3)	5(4.8)	15(5.8)	22(5.3)	2(4.5)	50(5.4)
모르겠다	8(44.4)	20(22.2)	20(19.2)	32(12.5)	53(12.7)	2(4.5)	135(14.5)
계	18(100)	90(100)	104(100)	257(100)	416(100)	44(100)	929(100)

무응답: 4명

5.4. 수화 지도에 대한 청인의 인식 및 이해도

5.4.1. 수화지도 시기에 대한 청인의 인식 및 이해도

수화지도 시기에 대한 청인의 인식 및 이해도를 분석한 결과, <그림 5.7>과 같이 ‘말을 배울 수 있다 하더라도 어릴 때부터 한다’가 42.6%, ‘말을 정상적으로 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부터 한다’는 25.8%, 그리고 ‘말 훈련 후 말의 습득이 불가능하다고 판정될 때부터 한다’가 21.8%로 나타났다.



<그림 5.7> 수화지도 시기에 대한 청인의 인식 및 이해도

수화지도 시기에 대한 연령층별 청인의 인식 및 이해도는 <표 5.13>과 같이, 10대와 70대 이상의 연령층은 ‘말을 정상적으로 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부터 한다’는 응답이 많았으며, 20대부터 60대 연령층은 ‘말을 배울 수 있다 하더라도 어릴 때부터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표 5.13> 수화지도 시기에 대한 연령층별 청인의 인식 및 이해도 단위: 명(%)

구 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계
답 1	44(31.7)	38(22.4)	49(25.7)	50(25.9)	24(20.7)	17(23.9)	17(37.8)	239(25.8)
답 2	36(25.9)	43(25.3)	41(21.5)	42(21.8)	25(21.6)	13(18.3)	2(4.4)	202(21.8)
답 3	41(29.5)	81(47.6)	92(48.2)	86(44.6)	55(47.4)	28(39.4)	11(24.4)	394(42.6)
모르겠다	18(12.9)	8(4.7)	9(4.7)	15(7.8)	12(10.3)	13(18.3)	15(33.3)	90(9.7)
계	139(100)	170(100)	191(100)	193(100)	116(100)	71(100)	45(100)	925(100)

답1. 말을 정상적으로 하기 어렵다고 판정될 때부터 해야 한다.

무응답: 8명

답2. 말 훈련을 해 보고 말의 습득이 불가능하다고 판정될 때부터 해야 한다.

답3. 청각장애 아동은 말을 배울 수 있다 하더라도 어릴 때부터 해야 한다.

수화지도 시기에 대한 학력별 청인의 인식 및 이해도는 <표 5.14>와 같이, 학력이 높아질수록 ‘말을 배울 수 있다 하더라도 어릴 때부터 한다’는 응답을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4> 수화지도 시기에 대한 학력별 청인의 인식 및 이해도

단위: 명(%)

구 분	무학	초졸 이하	중졸 이하	고졸 이하	대졸 이하	대학원이상	계
답 1	4(22.2)	29(33.0)	28(26.7)	77(30.2)	92(22.2)	9(20.5)	239(25.8)
답 2	2(11.1)	15(17.0)	23(21.9)	50(19.6)	107(25.8)	5(11.4)	202(21.8)
답 3	3(16.7)	22(25.0)	44(41.9)	111(43.5)	185(44.6)	29(65.9)	394(42.6)
모르겠다	9(50.0)	22(25.0)	10(9.5)	17(6.7)	31(7.5)	1(2.3)	90(9.7)
계	18(100)	88(100)	105(100)	255(100)	415(100)	44(100)	925(100)

답1. 말을 정상적으로 하기 어렵다고 판정될 때부터 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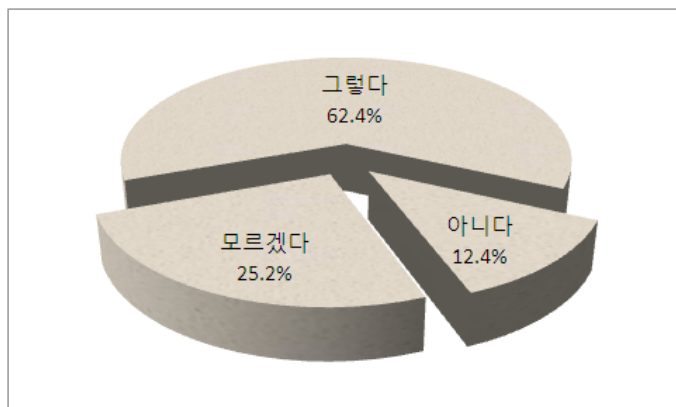
무응답: 8명

답2. 말 훈련을 해 보고 말의 습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부터 해야 한다.

답3. 청각장애 아동은 말을 배울 수 있다 하더라도 어릴 때부터 해야 한다.

5.4.2. ‘청인 교육에서 한국수화를 제2외국어로 개설하는 것이 좋다’에 대한 청인의 인식 및 이해도

‘청인 교육에서 한국수화를 제2외국어로 개설하는 것이 좋다’에 대한 청인의 인식 및 이해도를 분석한 결과, <그림 5.8>과 같이 ‘그렇다’가 62.4%, ‘아니다’는 12.4% ‘모르겠다’는 25.2%로 나타났다.



<그림 5.8> ‘청인 교육에서 한국수화를 제2외국어로 개설하는 것이 좋다’에 대한 청인의 인식 및 이해도

‘청인 교육에서 한국수화를 제2외국어로 개설하는 것이 좋다’에 대한 연령층별 청인의 인식 및 이해도는 <표 5.15>에 나타난 바와 같다.

<표 5.15> ‘청인 교육에서 한국수화를 제2외국어로 개설하는 것이 좋다’에 대한 청인의 인식 및 이해도 단위: 명(%)

구 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계
그렇다	74(52.5)	122(72.2)	143(74.1)	117(60.3)	67(57.8)	37(51.4)	21(45.7)	581(62.4)
아니다	23(16.3)	11(6.5)	21(10.9)	30(15.5)	15(12.9)	11(15.3)	4(8.7)	115(12.4)
모르겠다	44(31.2)	36(21.3)	29(15.0)	47(24.2)	34(29.3)	24(33.3)	21(45.7)	235(25.2)
계	141(100)	169(100)	193(100)	194(100)	116(100)	72(100)	46(100)	931(100)

무응답: 2명

‘청인 교육에서 한국수화를 제2외국어로 개설하는 것이 좋다’에 대한 학력별 청인의 인식 및 이해도는 <표 5.16>과 같이 학력이 높을수록 ‘그렇다’는 응답이 많았으며, 학력이 낮을수록 ‘모르겠다’는 응답이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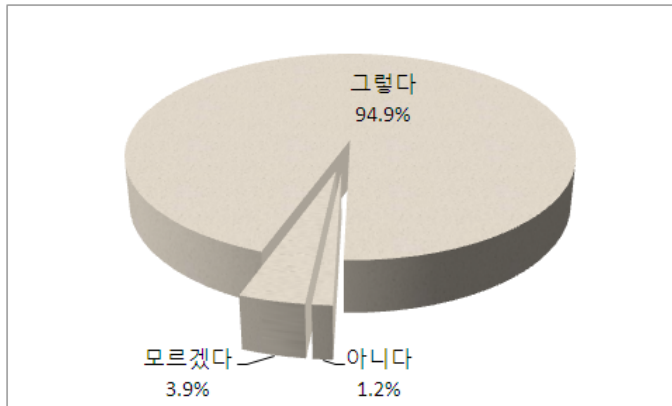
<표 5.16> ‘청인 교육에서 한국수화를 제2외국어로 개설하는 것이 좋다’에 대한 학력별 청인의 인식 및 이해도 단위: 명(%)

구 분	무학	초졸 이하	중졸 이하	고졸 이하	대졸 이하	대학원이상	계
그렇다	6(33.3)	40(44.4)	56(53.3)	163(62.9)	280(67.3)	36(83.7)	581(62.4)
아니다	3(16.7)	14(15.6)	10(9.5)	35(13.5)	48(11.5)	5(11.6)	115(12.4)
모르겠다	9(50.0)	36(40.0)	39(37.1)	61(23.6)	88(21.2)	2(4.7)	235(25.2)
계	18(100)	90(100)	105(100)	259(100)	416(100)	43(100)	931(100)

무응답: 2명

5.5. 수화통역에 대한 청인의 인식 및 이해도

‘수화통역은 원하는 곳에서 수화통역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에 대한 청인의 인식 및 이해도를 분석한 결과, <그림 5.9>와 같이 ‘그렇다’가 94.9%, ‘아니다’는 1.2% ‘모르겠다’는 3.9%로 나타났다.



<그림 5.9> ‘수화통역은 원하는 곳에서 수화통역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에 대한 청인의 인식 및 이해도

‘수화통역은 원하는 곳에서 수화통역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에 대한 연령층별 청인의 인식 및 이해도는 <표 5.17>에 나타난 바와 같다.

<표 5.17> ‘수화통역은 원하는 곳에서 수화통역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에 대한 연령층별 청인의 인식 및 이해도
단위: 명(%)

구 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계
그렇다	127(90.2)	163(96.4)	191(99.0)	185(95.4)	111(94.9)	67(94.4)	38(86.4)	882(94.9)
아니다	2(1.4)	3(1.8)	0(0)	1(0.5)	3(2.6)	1(1.4)	1(2.3)	11(1.2)
모르겠다	12(8.5)	3(1.8)	2(1.0)	8(4.1)	3(2.6)	3(4.2)	5(11.4)	36(3.9)
계	141(100)	169(100)	193(100)	194(100)	117(100)	71(100)	44(100)	929(100)

무응답: 4명

‘수화통역은 원하는 곳에서 수화통역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에 대한 학력별 청인의 인식 및 이해도는 <표 5.18>에 나타난 바와 같다.

<표 5.18> ‘수화통역은 원하는 곳에서 수화통역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에 대한 학력별 청인의 인식 및 이해도
단위: 명(%)

구 분	무학	초졸 이하	중졸 이하	고졸 이하	대졸 이하	대학원이상	계
그렇다	14(77.8)	78(88.6)	98(93.3)	243(94.2)	405(97.4)	44(100)	882(9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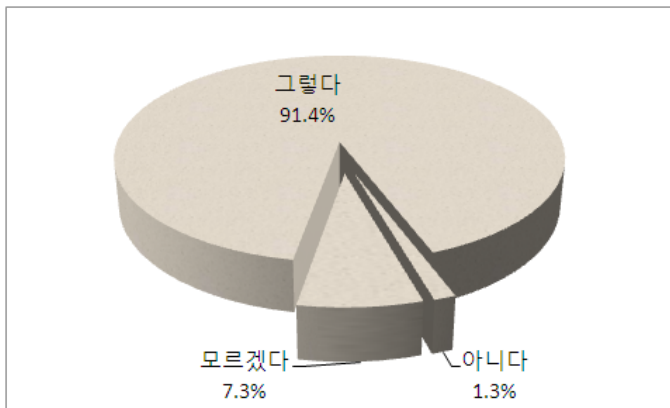
구 분	무학	초졸 이하	중졸 이하	고졸 이하	대졸 이하	대학원이상	계
아니다	1(5.6)	2(2.3)	2(1.9)	4(1.6)	2(0.5)	0(0)	11(1.2)
모르겠다	3(16.7)	8(9.1)	5(4.8)	11(4.3)	9(2.2)	0(0)	36(3.9)
계	18(100)	88(100)	105(100)	258(100)	416 (100)	44(100)	929(100)

무응답: 4명

5.6. 수화의 활용에 대한 청인의 인식 및 이해도

5.6.1. ‘문자나 수화 메시지를 가정전화나 휴대전화로 주고받을 수 있어야 한다’에 대한 청인의 인식 및 이해도

‘문자나 수화 메시지를 가정전화나 휴대전화로 주고받을 수 있어야 한다’에 대한 청인의 인식 및 이해도를 분석한 결과, <그림 5.10>과 같이 ‘그렇다’가 91.4%, ‘아니다’는 1.3% ‘모르겠다’는 7.3%로 나타났다.



<그림 5.10> ‘문자나 수화 메시지를 가정전화나 휴대전화로 주고받을 수 있어야 한다’에 대한 청인의 인식 및 이해도

‘문자나 수화 메시지를 가정전화나 휴대전화로 주고받을 수 있어야 한다’에 대한 연령층별 청인의 인식 및 이해도는 <표 5.19>에 나타난 바와 같다.

<표 5.19> ‘문자나 수화 메시지를 가정전화나 휴대전화로 주고받을 수 있어야 한다’에 대한 연령층별 청인의 인식 및 이해도 단위: 명(%)

구 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계
그렇다	125(88.7)	159(94.1)	179(92.7)	180(93.3)	112(95.7)	58(80.6)	37(82.2)	850(91.4)
아니다	3(2.1)	3(1.8)	1(0.5)	3(1.6)	0(0)	2(2.8)	0(0)	12(1.3)
모르겠다	13(9.2)	7(4.1)	13(6.7)	10(5.2)	5(4.3)	12(16.7)	8(17.8)	68(7.3)
계	141(100)	169(100)	193(100)	193(100)	117(100)	72(100)	45(100)	930(100)

무응답: 3명

‘문자나 수화 메시지를 가정전화나 휴대전화로 주고받을 수 있어야 한다’에 대한 학력별 청인의 인식 및 이해도는 <표 5.20>에 나타난 바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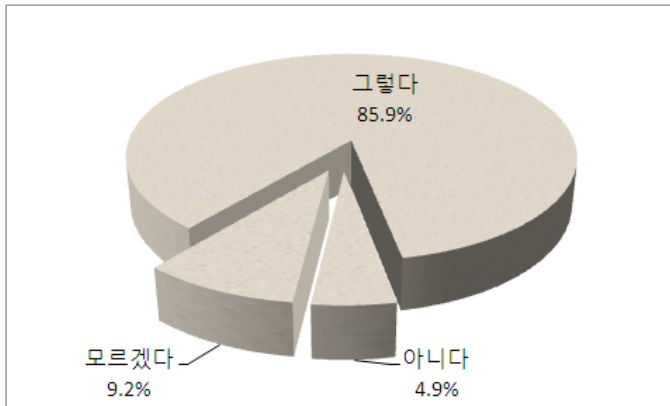
<표 5.20> ‘문자나 수화 메시지를 가정전화나 휴대전화로 주고받을 수 있어야 한다’에 대한 학력별 청인의 인식 및 이해도 단위: 명(%)

구 분	무학	초졸 이하	중졸 이하	고졸 이하	대졸 이하	대학원이상	계
그렇다	12(66.7)	77(85.6)	93(89.4)	243(93.8)	383(92.1)	42(97.7)	850(91.4)
아니다	0(0)	2(2.2)	2(1.9)	3(1.2)	5(1.2)	0(0)	12(1.3)
모르겠다	6(33.3)	11(12.2)	9(8.7)	13(5.0)	28(6.7)	1(2.3)	68(7.3)
계	18(100)	90(100)	104(100)	259(100)	416(100)	43(100)	930(100)

무응답: 3명

5.6.2. ‘모든 TV방송 프로그램을 수화로 통역하거나 폐쇄자막으로 설명해야 한다’에 대한 청인의 인식 및 이해도

‘모든 TV방송 프로그램을 수화로 통역하거나 폐쇄자막으로 설명해야 한다’에 대한 청인의 인식 및 이해도를 분석한 결과, <그림 5.11>과 같이 ‘그렇다’가 85.8%, ‘아니다’는 4.9% ‘모르겠다’는 9.2%로 나타났다.



<그림 5.11> ‘모든 TV방송 프로그램을 수화로 통역하거나 폐쇄자막으로 설명해야 한다’에 대한 청인의 인식 및 이해도

‘모든 TV방송 프로그램을 수화로 통역하거나 폐쇄자막으로 설명해야 한다’에 대한 연령층별 청인의 인식 및 이해도는 <표 5.21>에 나타난 바와 같다.

<표 5.21> ‘모든 TV방송 프로그램을 수화로 통역하거나 폐쇄자막으로 설명해야 한다’에 대한 연령층별 청인의 인식 및 이해도
단위: 명(%)

구 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계
그렇다	110(78.0)	147(87.0)	185(95.9)	168(87.0)	105(89.7)	49(68.1)	34(75.6)	798(85.8)
아니다	10(7.1)	8(4.7)	5(2.6)	9(4.7)	5(4.3)	6(8.3)	3(6.7)	46(4.9)
모르겠다	21(14.9)	14(8.3)	3(1.6)	16(8.3)	7(6.0)	17(23.6)	8(17.8)	86(9.2)
계	141(100)	169(100)	193(100)	193(100)	117(100)	72(100)	45(100)	930(100)

무응답: 3명

‘모든 TV방송 프로그램을 수화로 통역하거나 폐쇄자막으로 설명해야 한다’에 대한 학력별 청인의 인식 및 이해도는 <표 5.22>에 나타난 바와 같다.

<표 5.22> ‘모든 TV방송 프로그램을 수화로 통역하거나 폐쇄자막으로 설명해야 한다’에 대한 학력별 청인의 인식 및 이해도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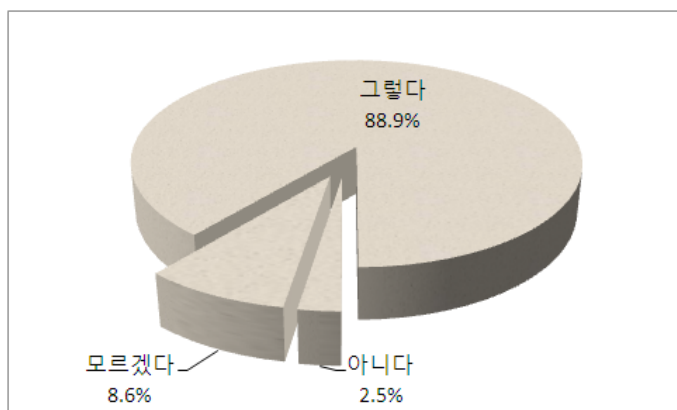
구 분	무학	초졸 이하	중졸 이하	고졸 이하	대졸 이하	대학원이상	계
그렇다	13(72.2)	59(66.3)	93(88.6)	227(88.0)	364((87.5)	42(95.5)	798(85.8)
아니다	2(11.1)	10(11.2)	1(1.0)	12(4.7)	19(4.6)	2(4.5)	46(4.9)

구 분	무학	초졸 이하	중졸 이하	고졸 이하	대졸 이하	대학원이상	계
모르겠다	3(16.7)	20(22.5)	11(10.5)	19(7.4)	33(7.9)	0(0)	86(9.2)
계	18(100)	89(100)	105(100)	258(100)	416(100)	44(100)	930(100)

무응답: 3명

5.6.3. ‘수화 사용자에게 수화로 된 출판물과 영상물을 제공해야 한다’에 대한 청인의 인식 및 이해도

‘수화 사용자에게 수화로 된 출판물과 영상물을 제공해야 한다’에 대한 청인의 인식 및 이해도를 분석한 결과, <그림 5.12>와 같이 ‘그렇다’가 88.9%, ‘아니다’는 2.5% ‘모르겠다’는 8.6%로 나타났다.



<그림 5.12> ‘수화 사용자에게 수화로 된 출판물과 영상물을 제공해야 한다’에 대한 청인의 인식 및 이해도

‘수화 사용자에게 수화로 된 출판물과 영상물을 제공해야 한다’에 대한 연령층별 청인의 인식 및 이해도는 <표 5.23>에 나타난 바와 같다.

<표 5.23> ‘수화 사용자에게 수화로 된 출판물과 영상물을 제공해야 한다’에 대한 연령층별 청인의 인식 및 이해도
단위: 명(%)

구 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계
그렇다	124(879)	154(911)	183(953)	170(876)	104(889)	56(778)	37(804)	828(889)

아니다	2(14)	4(24)	3(16)	6(31)	6(51)	2(28)	0(0)	23(25)
모르겠다	15(106)	11(65)	6(31)	18(93)	7(60)	14(194)	9(196)	80(86)
계	141(100)	169(100)	192(100)	194(100)	117(100)	72(100)	46(100)	931(100)

무응답: 2명

‘수화 사용자에게 수화로 된 출판물과 영상물을 제공해야 한다’에 대한 학력별 청인의 인식 및 이해도는 <표 5.24>에 나타난 바와 같다.

<표 5.24> ‘수화 사용자에게 수화로 된 출판물과 영상물을 제공해야 한다’에 대한 학력별 청인의 인식 및 이해도
단위: 명(%)

구 분	무학	초졸 이하	중졸 이하	고졸 이하	대졸 이하	대학원이상	계
그렇다	12(66.7)	73(81.1)	92(87.6)	236(91.1)	374(90.1)	41(93.2)	828(88.9)
아니다	2(11.1)	2(2.2)	2(1.9)	6(2.3)	10(2.4)	1(2.3)	23(2.5)
모르겠다	4(22.2)	15(16.7)	11(10.5)	17(6.6)	31(7.5)	2(4.5)	80(8.6)
계	18(100)	90(100)	105(100)	259(100)	415(100)	44(100)	931(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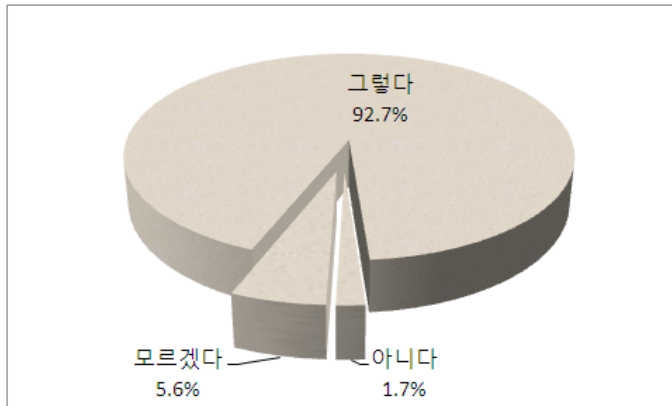
무응답: 2명

5.6.4. ‘수화 사용자가 문화 공연이나 문화 유적, 기념물 등에 수화로 접근하여 볼 수 있어야 한다’에 대한 청인의 인식 및 이해도

‘수화 사용자가 문화 공연이나 문화 유적, 기념물 등에 수화로 접근하여 볼 수 있어야 한다’에 대한 청인의 인식 및 이해도를 분석한 결과, <그림 5.13>과 같이 ‘그렇다’가 92.7%, ‘아니다’는 1.7% ‘모르겠다’는 5.6%로 나타났다.

<그림 5.13> ‘수화 사용자가 문화 공연이나 문화 유적, 기념물 등에 수화로 접근하여 볼 수 있어야 한다’에 대한 청인의 인식 및 이해도

‘수화 사용자가 문화 공연이나 문화 유적, 기념물 등에 수화로 접근하여 볼 수 있어야 한다’에 대한 연령층별 청인의 인식 및 이해도는 <표 5.25>에 나타난 바와 같다.



<표 5.25> ‘수화 사용자가 문화 공연이나 문화 유적, 기념물 등에 수화로 접근하여 볼 수 있어야 한다’에 대한 연령층별 청인의 인식 및 이해도
단위: 명(%)

구 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계
그렇다	131(92.9)	161(95.3)	191(99.0)	178(92.2)	106(90.6)	58(80.6)	38(82.6)	863(92.7)
아니다	2(1.4)	2(1.2)	1(0.5)	6(3.1)	2(1.7)	3(4.2)	0(0)	16(1.7)
모르겠다	8(5.7)	6(3.6)	1(0.5)	9(4.7)	9(7.7)	11(15.3)	8(17.4)	52(5.6)
계	141(100)	169(100)	193(100)	193(100)	117(100)	72(100)	46(100)	931(100)

무응답: 2명

‘수화 사용자가 문화 공연이나 문화 유적, 기념물 등에 수화로 접근하여 볼 수 있어야 한다’에 대한 학력별 청인의 인식 및 이해도는 <표 5.26>에 나타난 바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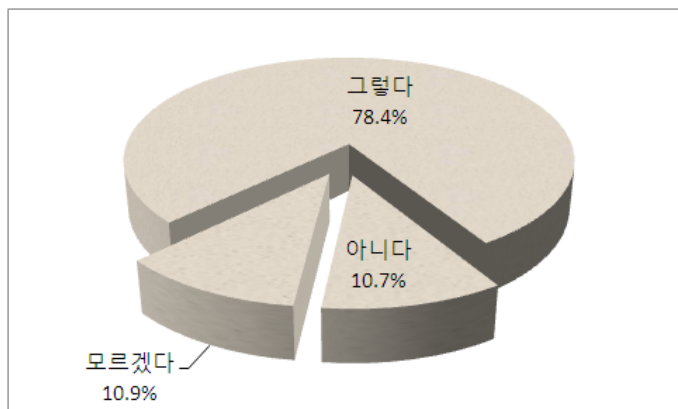
<표 5.26> ‘수화 사용자가 문화 공연이나 문화 유적, 기념물 등에 수화로 접근하여 볼 수 있어야 한다’에 대한 학력별 청인의 인식 및 이해도
단위: 명(%)

구 분	무학	초졸 이하	중졸 이하	고졸 이하	대졸 이하	대학원이상	계
그렇다	11(61.1)	73(82.0)	95(90.5)	248(95.8)	392(94.2)	44(100)	863(92.7)
아니다	1(5.6)	3(3.4)	1(1.0)	3(1.2)	8(1.9)	0(0)	16(1.7)
모르겠다	6(33.3)	13(14.6)	9(8.6)	8(3.1)	16(3.8)	0(0)	52(5.6)
계	18(100)	89(100)	105(100)	259(100)	416(100)	44(100)	931(100)

무응답: 2명

5.6.5. 수화 사용 청각장애인에 대한 청인의 인식 및 이해도

‘수화 사용 청각장애인은 사용 언어만 다르고 기타 능력은 청인과 다를없다고 생각한다’에 대한 청인의 인식 및 이해도를 분석한 결과, <그림 5.14>와 같이 ‘그렇다’가 78.4%, ‘아니다’는 10.7% ‘모르겠다’는 10.9%로 나타났다.



<그림 5.14> ‘수화 사용 청각장애인은 사용 언어만 다르고 기타 능력은 청인과 다를없다고 생각한다’에 대한 청인의 인식 및 이해도

‘수화 사용 청각장애인은 사용 언어만 다르고 기타 능력은 청인과 다를없다고 생각한다’에 대한 연령층별 청인의 인식 및 이해도는 <표 5.27>에 나타난 바와 같다.

<표 5.27> ‘수화 사용 청각장애인은 사용 언어만 다르고 기타 능력은 청인과 다를없다고 생각한다’에 대한 연령층별 청인의 인식 및 이해도
단위: 명(%)

구 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계
그렇다	100(70.9)	137(81.1)	157(81.3)	153(78.9)	96(82.1)	58(80.6)	29(63.0)	730(78.3)
아니다	16(11.3)	19(11.2)	25(13.0)	23(11.9)	8(6.8)	6(8.3)	3(6.5)	100(10.7)
모르겠다	25(17.7)	13(7.7)	11(5.7)	18(9.3)	13(11.1)	8(11.1)	14(30.4)	102(10.9)
계	141(100)	169(100)	193(100)	194(100)	117(100)	72(100)	46(100)	932(100)

무응답: 1명

‘수화 사용 청각장애인은 사용 언어만 다르고 기타 능력은 청인과 다를없다고 생각한다’에 대한 학력별 청인의 인식 및 이해도는 <표 5.28>에 나타난 바

와 같다.

<표 5.28> ‘수화 사용 청각장애인은 사용 언어만 다르고 기타 능력은 청인과 다를없다고 생각한다’에 대한 학력별 청인의 인식 및 이해도
단위: 명(%)

구 분	무학	초졸 이하	중졸 이하	고졸 이하	대졸 이하	대학원이상	계
그렇다	11(61.1)	63(70.0)	77(73.3)	200(77.2)	340(81.7)	39(88.6)	730(78.3)
아니다	2(11.1)	7(7.8)	8(7.6)	32(12.4)	49(11.8)	2(4.5)	100(10.7)
모르겠다	5(27.8)	20(22.2)	20(19.0)	27(10.4)	27(6.5)	3(6.8)	102(10.9)
계	18(100)	90(100)	105(100)	259(100)	416(100)	44(100)	932(100)

무응답: 1명

6. 고찰 및 제안

6.1. 청각장애인의 사회적 지위

청각장애인은 대체로 사회적인 소외계층으로 조사되었다. 청각장애인의 학력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 1,205명 중 고등학교 졸업 이하가 30.1%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중학교 졸업 이하가 21.8%로 나타났다. 무학인 경우도 18.1%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각장애인의 직업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 1,216명 중 직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56.1%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농수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8.2%,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7.9%,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7.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종교 관련기관 종사자, 예술인, 사회복지 관련 기관 종사자, 교육 관련 종사자 등은 매우 드물게 나타났다.

이러한 학력, 직업 등을 통해서 고찰할 때 청각장애인은 청인에 비해 사회적으로 소외계층에 놓여 있다. 이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의사소통 능력의 차별성 때문일 것이다. 그러므로 당연히 국가나 사회로부터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야 할 지위에 놓여 있다.

그러나 제2장에서 살펴본 청각장애인의 언어 환경과 관련한 법령과 제도를 살펴볼 때, 그러한 지원은 아직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국어기본법 제4조 제2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신체상의 장애에 의하여 언어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이 불편 없이 국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현실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법조문은 다분히 선언적인데 그치고 있다.

또한 제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외국의 법령과 제도를 살펴볼 때, 우리의 법령과 제도는 턱없이 부족한 편이다.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의 소외계층에 놓인 청각장애인의 언어 환경 확보에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6.2. 수화의 가치와 수화 습득의 현실

6.2.1. 수화의 가치

청각장애인이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전달할 때 주로 사용하는 의사소통 수단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 1,199명 중 수화가 78.7%로 대부분의 청각장애인은 자신의 의사를 수화로 표현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수화 78.7%, 말 6.9%, 글 3.8%, 단순한 몸짓 9.3%, 기타 1.3%의 순서이다. 이러한 분포는 연령별로 보거나, 학력별로 보거나 마찬가지로이다.

청각장애인이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때 주로 사용하는 의사소통 수단에 대한 복수 응답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61.8%가 수화라고 답하였으며 독화는 29.4%, 글은 12.8%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포는 연령별로 보거나, 학력별로 보거나 마찬가지로이다.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수단 전체로 볼 때, 수화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셈이다.

수화 사용의 능력에 대한 조사 결과는 응답자 1,192명 중 ‘잘한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32.6%, ‘잘하는 편이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38.3%, ‘간단하고 쉬운 것 가능’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20.1%였으며, ‘배우는 중’과 ‘전혀 수화를 하지 못한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각각 3.9%, 5.0%로 나타났다. 학력별로 보면, 학력이 높을수록 수화를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반대로 학력이 낮을수록 수화를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층별로 보면, 20~50대 연령층에서는 70% 이상이 수화를 비교적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0대 연령층에서는 수화를 못한다고 응답한 빈도가 다른 연령층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다.

이렇게 의사소통의 사용 도구로서 수화를 볼 때, 수화는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표현 도구로서 78.7%, 이해 도구로서 61.8%를 차지한다. 이것은 수화를 언어로 인정해야 하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수화를 언어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청각장애인의 가장 중요한 의사소통 도구를 인정하지 않는 결과가 된다. 수화사용자가 수화로 학교생활, 사회생활, 직업생활 등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게 하려면 수화를 한국어와 마찬가지로 언어로서 지위를 법으로 보장하고 이에 대한 연구와 교육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국가와 관련 기관에서 추진해야 할 청각장애인에 대한 중요한 정책 과제

일 것이다. 특히 “수화 기본법”의 제정이 정책적으로 요구된다.

6.2.2. 수화 습득의 현실

그런데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도구로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수화의 습득 현실은 체계적이지 못하고 또한 표준적이지 못하였다.

‘수화를 누구에게 배웠습니까?’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 1,063명 중 친구라고 응답한 경우가 53.8%로 가장 높았으며, 수화 수업시간에 선생님이 31.3%, 부모가 3.7%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것은 수화를 체계적으로 습득한 것이 아님을 보여 준다. 수화를 배우기 시작한 연령에 대한 조사 결과, 응답자 1,133명 중 5~9세가 40.2%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10~14세가 26.8%로 나타났다. 그리고 30대 이후에 수화를 배우기 시작한 사람도 9.2%나 되었다.

습득이 체계적이지 못한 것 못지않게 수화는 표준적이지도 못하였다. 예를 들어, 자기의 수화와 농학교 선생님의 수화가 비슷했는가에 대한 조사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응답자 824명 중 52.2%(430명)는 선생님의 수화와 자기의 수화가 비슷하다고 응답하였으나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47.8%(394명)는 서로 다르다고 응답하였다. 결과적으로 수화로 하는 농학교 선생님의 수업 내용 이해하기에 대한 조사 결과, 응답자 819명 중 무려 50.5%가 어려웠다고 응답하였는데, 선생님의 수화를 이해하기 어려웠던 이유 중에서, 수업내용이 어렵기 때문이라 한 것은 31.5%이지만, 선생님의 수화와 자신의 수화와 다르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46.6%를 차지하였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수화의 습득이 체계적이지 못하고 또한 표준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취학전 교육과 학교 교육에서 수화를 체계적으로 교육하는 일과 표준화된 한국수화를 널리 펼치는 일에 국가와 관련 기관이 노력해야 할 것이다.

6.2.3. 수화의 표준화와 보급

체계적인 수화 교육을 위해서는 취학전 교육과 학교교육에서 수화를 가르칠 교사를 양성하는 일, 교과목 교육에서 수화를 활용하는 일, 교육과정을 마련하는 일에 대한 법적인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표준화된 수화 교육을 위해

서는 한국수화 표준화 사업을 꾸준히 수행할 것이며, 표준수화에 대한 교사 연수를 지속적으로 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표준수화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홍보와 보급에 정부와 관련기관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한국표준수화규범 제정 추진위원회에서는 지난 9년 동안 약 13,000단어를 표준화하여 출판하였다. 그 속에는 4개 전문 분야(교통, 법률, 의학, 정보통신) 용어의 수화도 포함되어 있다. 국립국어연구원(1999)에서 편찬한 표준국어대사전에 들어 있는 전문 분야는 49개 분야인데, 수화사용 청각장애인이 전문 분야 관련 활동도 할 수 있게 하려면 아직 표준화하지 못한 45개 **전문 분야별 수화**를 **표준화**하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수화**가 계속해서 만들어질 것이므로, 이러한 수화들도 계속해서 **표준화**해야 할 것이다.

표준화한 수화에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하려면 표준화한 수화를 인터넷을 통해서 보거나 전자사전에서 볼 수 있도록 하고, **수화를 볼 수 있는 전자 사전을 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한국표준수화규범 제정 추진위원회에서는 한국수화 문형사전을 편찬하였는데, ‘**한국수화문법**’을 완성하려면 새로운 문형을 찾아 정리하는 연구도 계속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연구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한국수화연구소**’를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수화 사용 청각장애인의 수화능력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수화를 표준화 하고 수화를 교육하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수화 사용 청각장애인의 **수화 능력을 평가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이를 위한 **평가 방법을 연구**해야 할 것이다.

수화 사용 청각장애인이 주류 사회에서 수화로 청인과 이웃하며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수화 사용 인구를 확충**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일반 초·중등학교에서 수화를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학이나 전문대학에서 ‘수화’를 제2외국어로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수화사용 청각장애인도 문자를 사용하는 주류사회에서 불편함이 없이 생활할 수 있게 하려면 **국어의 독해력과 문장력을 신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수화로 국어 문법을 익힐 수 있게** 해야 하며, **국어 문법 교육**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한국표준규범 제정 추진위원회에서 개발하고 있는 ‘한국수화에 의한 한국어 문장지도 교재’는 그 좋은 교재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6.3. 가정, 사회, 학교에서의 수화

6.3.1. 가정에서의 수화

수화 사용에 대한 가족의 태도는 대체로 긍정적이었다. 수화 사용에 대해 가족은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 1,174명 중 42.8%가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저 그렇다가 30.5%, 부정적이다가 10.2%로 나타났다.

수화를 할 수 있는 가족의 유무에서는 응답자 1,183명 중 52.7%가 수화를 할 수 있는 가족이 있는 것으로, 47.3%가 수화를 할 수 있는 가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화를 할 수 있는 가족의 수화 능력에 대해서는 응답자 624명 중 매우 잘함 19.7%, 잘하는 편 42.0%, 기본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을 정도가 38.4%로 나타났다. 그러나 수화를 할 수 없는 가족과는 응답자의 47.5%가 단순한 몸짓, 36.3%가 글, 21.5%가 말이라고 하였다(복수 응답). 이것은 가족이 수화를 할 수 없다면,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은 단순한 몸짓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을 뜻한다. 단순한 몸짓으로 충분한 의사소통이 될 수 없음은 분명하다. 따라서 청각장애인을 둔 부모와 가족은 수화를 반드시 배워야 하며, 또한 배울 수 있도록 정부나 관계 기관에서 정책적인 배려를 하여야 할 것이다.

건청 자녀가 학교에 입학하기 전 주로 양육한 사람에 대한 조사 결과, 응답자 848명 중 49.1%가 본인이었으며, 배우자가 23.1%, 보육원 보육사가 2.8%로 조사되었다. 현재 청각장애인 본인이 양육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보육원에 맡기는 경우는 2.8%로 매우 적은 편이다.

건청 자녀를 다른 사람에게 맡긴 이유 대한 복수 응답 결과, 42.4%가 아이에게 말을 가르치기 위해서라고 응답하였다. 건청 자녀를 맡기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말을 가르치기 위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맡긴 결과에 대해, 38.0%가 자녀가 말을 잘하게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따라서 청각장애인의 자녀를 위해 전문적인 보육기관을 설비하여 이곳에서 말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도록 정부나 관계 기관에서 정책적인 배려를 하여야 할 것이다.

청인이 수화를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사용할 청각장애아를 생산한 경우, 유아

가 수화를 습득하고 인지 능력을 계발하고 정신건강을 유지 발전시킬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유아가 언어 민감기를 거치면서 수화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해야 하며, 그렇게 하려면 가족 특히 **어머니부터 수화를 배워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복지관 등에서 **‘청각장애 유아를 가진 가족을 위한 수화 교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수화 사용 청각장애인이 건청 자녀를 생산한 경우, 건청아가 음성언어를 습득하고 인지능력을 계발하고 정신건강을 유지 발전시킬 수 있게 하려면 유아가 언어 민감기를 거치면서 음성언어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해야 하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머니가 아닌 다른 **가족이 음성언어 모방의 대상이 되어주고 유아의 발성과 발화를 강화하고 확장하는 역할**을 해야 하며, 그렇게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복지관 등에서 **‘영유아를 위한 언어교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청각장애 아동의 제1언어가 수화일 경우 부모와 자녀간의 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런 청각장애 아동의 경우 가정보다 학교의 친구들과 대화하기를 더 선호한다. 가정에서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가정을 위하여 국가에서는 **최근 정부나 관계 기관에서 다문화 가정을 지원하는 것처럼** 원하는 부모들의 가정에 교사를 파견하여 수화를 지도할 수 있도록 지원체제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국립국어원에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의 바른 국어생활을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국내의 청각장애인들에게 바른 국어사용을 위하여 수화와 한국어를 지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6.3.2. 사회에서의 수화

직장생활에서 겪는 의사소통의 어려움에 대한 복수 응답 결과를 보면, 응답자 중 41.2%가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응답했으며, 수화통역사, 수화 사용 동료의 도움, 글 또는 말의 사용으로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가운데 수화통역사에 의한 것이 43.1%로 나타났다. 따라서 청각장애인들이 사회생활에서 겪는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수화통역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여 활용해야 할 것이다.

한편 다른 사람들과의 통신 수단에 대한 복수 응답 결과를 보면, 응답자 중 60.3%가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문자로 한다고 응답하였고, 48.8%는 휴대전화의 영상통화를 사용하여 수화로 한다고 응답하였다. 그 밖에 화상전화기를 사용하거나 수화통역을 받아 전화로 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과 통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화 사용 청각장애인이 취업할 수 있게 하고, 취업하여 직장 내 의사소통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하려면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에 있는 **직업생활 상담원에게 수화 교육부터** 해야 하며, **정보통신 기기 등으로 의사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6.3.3. 학교에서의 수화

학교 교육에서 청각장애인의 통합 교육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 1,136명 중 24.1%가 찬성, 42.3%가 편의 제공을 충분히 하면 찬성, 33.5%가 반대한다고 응답하였다. 그런데 의사소통 수단별로 보면, 말 사용자는 80.6%가 찬성한 반면, 수화 사용자는 64.6%로, 수화 사용자들은 다소 통합 교육에 대해 찬성 비율이 낮았다. 이를 통해 볼 때, **농학교나 통합 교육의 학교 교육에서 표준화된 수화 교육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또한 표준수화 사용 교사의 확보가 필요하다.**

한편 수화로 하는 농학교 선생님의 수업 내용 이해하기에 대한 조사 결과, 응답자 819명 중 49.5%가 이해하기 쉬웠다고 응답하였고 50.5%는 어려웠다고 응답하였다. 농학교 선생님의 수화를 이해하기 어려웠던 이유를 응답자 699명 중 46.6%가 선생님의 수화와 자신의 수화와 다르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으며, 31.5%는 수업내용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으며, 6.0%는 수화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5.9%는 수화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 이렇게 볼 때, 학교 수업에서 표준화된 수화의 필요성이 절실함을 알 수 있다.

통합학교에서 사용한 친구나 선생님과 대화 수단에 대한 복수 응답 결과, 응답자 중 39.8%가 수화인 것으로 나타난 것을 보더라도 표준 수화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아울러 청각장애 학생들의 이중 학적의 필요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통합학교에서는 청각장애학생들을 정확하게 판별하여 그에 맞는 학교 교육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청각장애 학생 중에 난청으로 청력을 활용하여 학습이 가능하여 일반학교의 학급에서 공부할 경우 보청기 등 적절한 교육환경을 배려하여야 하며, 제1언어가 수화의 경우 선택한 학교가 수화 학습과 습득이 가능한 환경이 되어야 한다. 청각장애 학생들을 지도할 교사의 경우, 관련 특수교육을 전공한 교사를 우선적으로 배치하여야 할 것이며, 양호교사나 행정직원 등 구성원들이 수화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채용하여 청각장애학생들이 학교에서 교육에 대한 환경만 아니라 교육 관련 정보를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이 제공되어야 한다. 수화 교육을 위해서는 **수화 교육 방법을 연구하고 수화 교육을 담당할 교원 또는 강사의 자격 기준을 마련하고, 수화 교육 교재를 개발해야 할 것이다. 수화 교재는 표준화된 수화 단어와 수화 문법에 알맞은 문장으로 편찬해야 할 것이다.** 한국표준수화규범 제정 추진위원회에서는 수화 교재도 개발하고 있는데 그 교재는 수화 교육 교재로 적극 활용되게 해야 하며, 그 교재 개발은 계속해야 한다.

결국 청각장애 학생들이 조기에 수화와 한국어를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습득할 수 있도록 청각장애학교의 교육 환경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6.4. 수화통역사

수화통역사의 수화통역을 받은 경험에 대한 조사 분석 결과, 응답자 1,167명 중 89.6%가 수화통역사의 통역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10.4%는 통역을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수화 통역을 받은 적이 있다면, 94.2%가 수화통역센터의 수화통역사에게 수화통역을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통신 중계서비스(TRS)를 이용하는 경우는 3.8%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수화통역을 받은 횟수를 보면, 응답자 1,017명 중 35.7%가 월 평균 7회 이상 수화통역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월 평균 1회 받고 있는 경우는 14.8%로 조사되었다. 수화통역을 받은 경우, 68%가 집안일로 수화통역을 받았으며, 20.5%는 민원문제로, 11.5%는 회사 또는 학교일로 수화통역을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수화통역이 도움이 된 정도를 보면, 응답자 1,094명 중 69.7%가 매우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27.0%가 약간 도움이 된 것으로, 2.2%가 거의 도움이 안 된 것으로, 1.1%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수화통역을 받을 때 불편했던 점에 대해서는, 응답자 937명 중 44.7%가 순서를 기다려야 하는 것이 불편하였다고 응답하였으며, 23.9%가 수화통역사의 통역 수준이 낮았다고 응답하였으며, 3.6%가 통역비가 부담된다고 응답하였다.

이렇게 볼 때, 수화통역사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청각장애인들을 위해 수화통역사 제도를 확립하고, 이에 따라 양성 기관을 확대하고, 이들이 직업인으로서 청각장애인들의 의사소통을 도울 수 있도록 정부와 관계 기관이 재정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청각장애인들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수화통역을 받을 수 있어야 사회생활에 지장이 없는 생활을 영위할 것이다.

한편 수화통역사의 수준 향상을 위해 수화통역사의 자격을 등급화 하는 일과 수화통역사를 위한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정책 연구가 빠른 시일 안에 있게 되길 기대한다. 현재 대부분의 전문통역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양성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통역현장에서 습득한 경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앞으로 보다 정확하게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통역사 양성에 대한 지원과 방안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청각장애인들의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하여 전문수화통역사 자격증 제도가 실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수화통역사자격증과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청각장애인통역사자격증 제도가 있다. 전문수화통역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수화통역사 시험제도를 다원화하여 실시할 필요성이 있다.

6.5. 방송을 통한 정보 접근

국내외에서 일어나는 생활정보를 얻는 주된 매체에 대한 복수 응답 결과를 보면, 텔레비전이 52.7%로 가장 높았으며, 농인단체가 34.1%, 컴퓨터가 28.9%, 주위 사람이 22.4%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텔레비전의 비중이 상당함을 알 수 있다.

방송에서 청각장애인을 위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에 대한 복수 응답 결과,

자막방송을 전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41.2%로 가장 많았으며, 수화통역 방송을 전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37.1%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막 방송 시청 여부에 대한 조사 분석 결과, 응답자 1,161명 중 81.7%가 자막 방송을 시청하고 있으며, 18.3%은 시청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자막 방송 내용 이해 정도에 대한 조사 분석 결과, 응답자 1,079명 중 16.5%가 모두 이해, 26.6%가 대부분 이해, 38.2%가 방송 내용의 50% 정도 이해, 7.0%가 전혀 이해 안 됨으로 나타났다. 자막 방송 내용이 이해가 잘 안 되는 이유에 대한 복수 응답 분석 결과를 보면, 응답자 중 38.6%가 한국어 문장 이해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답하였으며, 31.2%는 빠른 자막 속도로 인해, 21.6%는 자막과 화면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

방송에서 하는 수화통역의 이해 정도에 대한 조사 결과, 응답자 1,155명 중 44.0%가 수화통역 방송의 50% 정도를 이해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모두 이해한다는 응답은 11.4%, 전혀 이해가 안 된다는 응답은 6.9%로 나타났다. 방송에서 하는 수화통역이 이해가 안 되는 이유에 대한 복수 응답 분석 결과, 응답자 중 47.9%가 수화통역사의 크기가 작다고 응답하였으며 26.1%는 수화 속도가 빠르다고 응답하였고 18.3%는 수화 방식이 다르다고 응답하였다.

수화 사용 청각장애인의 주된 정보원은 텔레비전이다. 그들이 이러한 정보원에 접근할 수 있게 하려면 **자막 방송과 수화 통역 방송을 전면 실시**하고, 이러한 방송의 질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수화통역 방송의 경우에는, 수화 화면의 크기·수화 속도·수화 그 자체 등의 연구와 적절한 자막의 크기·자막 방송 속도 등의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수화 사용 청각장애인의 또 다른 중요한 정보원은 인터넷이다. 이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그 효과적인 방법을 연구해야 할 것이다. 수화사용 청각장애인이 컴퓨터와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수화로 컴퓨터와 인터넷 강의할 강사를 양성**해야 할 것이다. 또한 수화 사용 청각장애인은 휴대전화로 문자통화나 화상통화를 하는데, 수화 사용자가 용이하게 할 수 있는 화상통화를 위해서는 **화상통화 요금을 감면**해야 할 것이다.

수화 사용 청각장애인이 출판물이나 영상물에 접근 할 수 있게 하려면 수화

로 된 출판물이나 영상물의 제작을 지원하고, 공공시설에 용이하게 접근 할 수 있게 하려면 안내문을 수화로 표시해야 할 것이다.

6.6. 보청기와 인공와우 문제

보청기를 착용하기 때문에 좋은 점에 대한 조사 결과, 농학교 학생을 포함한 조사 대상 청각장애인의 전체 의견 중 36.9%가 ‘잘 들린다’로 나타났고, 34.0%는 ‘환경음 등의 소리를 감지할 수 있다’로 나타났다. 그 밖에 음악 감상, 보행 시 안전, 분위기 파악 등이 보청기를 착용하기 때문에 좋은 점으로 조사되었다.

보청기를 착용하기 때문에 나쁜 점에 대한 결과, 농학교 학생을 포함한 조사 대상 청각장애인의 전체 의견 중 38.9%가 운동이나 물과 관련된 행동 등 전반적인 활동에 제한을 받는 것이 불편하다고 응답하였다. 그 밖에 이명·잡음, 배터리 문제, 관리 불편, 비용, 미관 등으로 인한 불편함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인공와우를 착용하기 때문에 좋은 점에 대한 조사 결과, 농학교 학생을 포함한 조사 대상 청각장애인의 전체 의견 중 89.9%가 대화가 가능해서 좋다고 응답하였고 4.3%는 음악 감상 등의 취미활동을 할 수 있어서 좋다고 응답하였다.

인공와우를 착용하기 때문에 나쁜 점에 대한 조사 결과, 농학교 학생을 포함한 조사 대상 청각장애인의 전체 의견 중 52.9%가 운동이나 물과 관련된 행동 등 전반적인 활동에 제한을 받는 것이 불편하다고 응답하였다. 그 밖에 가격, 이명·잡음, 배터리 문제, 두통과 어지러움, 정전기 등으로 인한 불편함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보청기와 인공와우가 필요한 경우, 있을 수 있는 단점을 보완하는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보청기 착용 전후의 청력 손실 정도를 분석한 결과, 보청기 착용 후 오른쪽 귀는 청력 손실도가 평균 94.92dB에서 56.19dB로 청력이 38dB 정도 향상되었으며, 왼쪽 귀는 97.50dB에서 55.26dB로 청력이 42dB 정도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공와우 착용 전후의 청력 손실 정도를 분석한 결과, 인공와우 착용 후 오

른쪽 귀는 청력 손실도가 평균 110.32dB에서 37.14dB로 청력이 73dB 정도 향상되었으며, 왼쪽 귀는 104.62dB에서 37.85dB로 청력이 67dB 정도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공와우가 보청기를 착용했을 때 보다 청력 향상 효과가 2배 정도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력손실도별 수화를 할 수 있는 정도를 보면, 청력손실도가 30dB 미만은 수화를 못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30~49dB은 간단하고 쉬운 것을 할 수 있다는 응답이 많았으며, 50dB 이상은 수화를 잘하는 편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난청인은 소음이 있는 곳에서는 듣지 못하거나 잘 듣지 못하므로, 청각장애 학생을 선발하거나 청각장애인을 채용하였을 경우에는 우선 그들이 소음의 영향을 받는지 알아보고, 소음이 없는 곳에 배치하거나 방음 시설을 해야 할 것이다.

6.7. 수화, 청각장애인에 대한 청인의 이해와 인식

‘수화는 언어이다’에 대한 청인의 인식 및 이해도를 분석한 결과, ‘수화는 언어라고 생각 한다’가 82.2%, ‘수화는 언어라 하기 어렵다’는 6.1% ‘모르겠다’는 11.7%로 나타났다. 연령층별 청인의 인식 및 이해도를 분석하면, 20~50대 연령층은 80% 이상 ‘수화는 언어이다’라고 응답하였으며, 60대와 70대 이상의 연령층은 ‘모르겠다’는 응답이 많았다.

한글날처럼 ‘수화의 날을 정하는 것이 좋다’에 대한 청인의 인식 및 이해도를 분석한 결과, ‘그렇다’가 64.2%, ‘아니다’는 10.3% ‘모르겠다’는 25.5%로 나타났다. ‘수화의 날을 정한다면’에 대한 청인의 인식 및 이해도를 분석한 결과, ‘한국 표준 수화 규범 제정 사업을 시작한 날(7월 1일)’이 66.2%, ‘한국수화 사전’을 처음 출간한 날(3월 31일)이 19.4% ‘기타’가 14.4%로 나타났다. 기타 응답으로는 ‘농인의 날’, ‘농인이 원하는 날’, ‘수화교육을 시작한 날’, ‘한글날’ 등이 있었다. 청각장애인과 수화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수화의 날”을 새로이 만드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 이전이라도 한글날 행사에 수화와 관련한 행사를 함께 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 이밖에도 수화에 대한 인식

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수화 경진대회** 등 인식 개선 사업도 해야 할 것이다.

‘수화 사용자는 수화로 가정생활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에 대한 청인의 인식 및 이해도는, ‘그렇다’가 81.0%, ‘아니다’는 5.3% ‘모르겠다’는 13.7%로 나타났다. ‘수화 사용자는 수화로 학교생활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에 대한 청인의 인식 및 이해도를 분석한 결과, ‘그렇다’가 85.1%, ‘아니다’는 5.2% ‘모르겠다’는 9.7%로 나타났다. ‘수화 사용자는 수화로 직장생활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에 대한 청인의 인식 및 이해도를 분석한 결과, ‘그렇다’가 80.1%, ‘아니다’는 5.4% ‘모르겠다’는 14.5%로 나타났다.

수화지도 시기에 대한 청인의 인식 및 이해도를 분석한 결과, ‘말을 배울 수 있다 하더라도 어릴 때부터 한다’가 42.6%, ‘말을 정상적으로 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부터 한다’는 25.8%, 그리고 ‘말 훈련 후 말의 습득이 불가능하다고 판정될 때부터 한다’가 21.8%로 나타났다.

‘청인 교육에서 한국수화를 제2외국어로 개설하는 것이 좋다’에 대한 청인의 인식 및 이해도를 분석한 결과, ‘그렇다’가 62.4%, ‘아니다’는 12.4% ‘모르겠다’는 25.2%로 나타났다.

‘수화통역은 원하는 곳에서 수화통역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에 대한 청인의 인식 및 이해도를 분석한 결과, ‘그렇다’가 94.9%, ‘아니다’는 1.2% ‘모르겠다’는 3.9%로 나타났다.

‘문자나 수화 메시지를 가정전화나 휴대전화로 주고받을 수 있어야 한다’에 대한 청인의 인식 및 이해도를 분석한 결과, ‘그렇다’가 91.4%, ‘아니다’는 1.3% ‘모르겠다’는 7.3%로 나타났다.

‘모든 TV방송 프로그램을 수화로 통역하거나 폐쇄자막으로 설명해야 한다’에 대한 청인의 인식 및 이해도를 분석한 결과, ‘그렇다’가 85.8%, ‘아니다’는 4.9% ‘모르겠다’는 9.2%로 나타났다.

‘수화 사용자에게 수화로 된 출판물과 영상물을 제공해야 한다’에 대한 청인의 인식 및 이해도를 분석한 결과, ‘그렇다’가 88.9%, ‘아니다’는 2.5% ‘모르겠다’는 8.6%로 나타났다.

‘수화 사용자가 문화 공연이나 문화 유적, 기념물 등에 수화로 접근하여 볼

수 있어야 한다'에 대한 청인의 인식 및 이해도를 분석한 결과, '그렇다'가 92.7%, '아니다'는 1.7% '모르겠다'는 5.6%로 나타났다.

'수화 사용 청각장애인은 사용 언어만 다르고 기타 능력은 청인과 다르 없다고 생각한다'에 대한 청인의 인식 및 이해도를 분석한 결과, '그렇다'가 78.4%, '아니다'는 10.7% '모르겠다'는 10.9%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볼 때, 청인들은 전반적으로 청각장애인, 수화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과 태도를 가졌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청인들의 좀 더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이해와 관심이 필요할 것이다.

7. 결론

이 연구는 의사소통에 장애를 가지고 있는 청각장애인들의 언어 사용 실태와 청각장애인과 수화와 대한 청인들의 인식과 이해도를 조사하여 청각장애인에 대한 언어 복지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여 청각장애인들의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한 다각적인 정책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데에 목적이 있었다. 이를 위해 설문지를 통한 면접조사하여 그 결과를 제시하였다. 현황을 분석한 결과 우리는 다음과 같은 제안을 제시하였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의 소외계층에 놓인 청각장애인의 언어 환경 확보에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2) 수화를 한국어와 마찬가지로 언어로서 지위를 보장하고 이에 대한 연구와 교육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국가와 관련 기관에서 추진해야 할 청각장애인에 대한 중요한 정책 과제일 것이다. 특히 “수화 기본법”의 제정이 정책적으로 요구된다.

(3) 현실적으로 수화의 습득이 체계적이지 못하고 또한 표준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취학전 교육과 학교 교육에서 수화를 체계적으로 교육하는 일과 표준화된 한국수화를 널리 펼치는 일에 국가와 관련 기관이 노력해야 할 것이다.

(4) 청각장애인을 가진 가족은 수화를 반드시 배워야 하며, 또한 배울 수 있도록 정부나 관계 기관에서 정책적인 배려를 하여야 할 것이다.

(5) 청각장애인의 자녀를 위해 전문적인 보육기관을 설비하여 이곳에서 말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도록 정부나 관계 기관에서 정책적인 배려를 하여야 할 것이다.

(6) 농학교나 통합 교육의 학교 교육에서 표준화된 수화 교육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수화 사용 교사의 확보가 필요한 것이다.

(7) 청각장애인들이 사회생활에서 겪는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수화통역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여 활용해야 할 것이다.

(8) 수화통역사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청각장애인들을 위해 수화통역사 제도를 확립하고, 이에 따라 양성 기관을 확대하고, 이들이 직업인으로서 청

각장애인들의 의사소통을 도울 수 있도록 정부와 관계 기관이 재정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청각장애인들이 주로 생활정보를 얻는 수단인 텔레비전에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에 대한 수화통역이나 자막방송이 필요하다. 이 두 가지에 대해 제기된 문제점을 해소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과제이다. 특히 수화통역사의 화면 크기를 키우는 문제를 방송국에서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9) 보청기와 인공와우가 필요한 경우, 있을 수 있는 단점을 보완하는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10) 청인들은 청각장애인, 수화에 대해 실질적으로는 좀더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이해와 관심이 필요할 것이다.

(11) 청각장애인과 수화에 대한 청인들의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수화의 날”을 새로이 만드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 이전이라도 한글날 행사에 수화와 관련한 행사를 함께 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를 통해 청각장애인이 의사소통에서 겪는 상황과 어려움에 대한 기초 자료 확보하여 궁극적으로 수화를 언어로 인정하여 청각장애인의 언어권을 보장하는, 즉 청각장애인의 언어 현실에 기초한 맞춤형 언어 복지 정책 수립을 위한 제안을 하게 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청각장애인의 종합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참 고 문 헌

- 교육과학기술부(2009). 고등교육법. 교육과학기술부령 제21호.
- 교육과학기술부(2008). 교육기본법. 법률 제8915호.
- 교육과학기술부(2008). 초·중등교육법. 법률 제8917호.
- 교육부(2001). 언어 지도. 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교육부(1999). 특수학교 교육과정 연수자료.
- 교육부(1991). 한글식표준수화. 서울: 도서출판 특수교육.
- 교육인적자원부(2005). 언어. 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국립국어원·한국농아인협회(2007). 한국수화문형사전. 서울: 애드피아.
- 김승국 외(2006). 청각장애 아동 교육. 서울: 교육과학사.
- 김영옥(2007). 청각장애아동교육의 이해. 서울: 학지사.
- 김태욱(2006). 한국 TV 수화통역방송에 대한 농인의 인지도 조사연구. 나사렛 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충남.
- 남기심(2004). 바른 국어생활. 국립국어원.
- 노동부(2008).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법률 제8852호.
- 문교부(1983). 농학교 교육과정.
- 문화관광부·한국농아인협회(2005). 한국수화사전. 서울: 애드피아.
- 문화체육관광부(2008). 국어기본법. 법률 제9003호.
- 보건복지가족부(2007). 등록장애인 현황.
- 보건복지가족부(2007).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법률 제 8974호.
- 보건복지가족부(2007). 장애인복지법. 법률 제8852호.
- 보건복지가족부(2007).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 8974호.
- 보건복지가족부(2008).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
- 정운기·김병하(2006). 농아동의 이중언어접근법에 관련된 제반요소 탐색. 특수 교육 저널 이론과 실천 제6권 4호, pp.406-424. 경북.
- 정은(2002). 수화의 사회적 인정, 그 당위성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의사소통

- 권과 사회통합의 연관적 의미 고찰.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3권 3호, pp.109-124. 경북.
- 한연미(2006). 불취학 농인의 흡사인에 관한 조사 연구. 나사렛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충남.
- 아베야스시(2003). 농인의 언어적 권리에 대한 사회언어학적 연구.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경북.
- 에이타 야시로 외(1993). ADA의 충격(송영옥역). 서울: 한국장애인연맹 출판부.
- Moonres, D.F(1996). *Education the deaf: Psychology, principles, and Practice*. Boston. Toronto: Houghton Mifflin Company.
- 국회입법조사처(2009). 외국의 청각장애인 지원.
- 장애인권리협약 비준동의안 전문. <http://cafe.naver.com/kdeafhumanrights/159>.
- 장애인인권선언문. <http://blog.daum.net/unis3way/12412902>
- 통계청(2005). 인구 총 조사.
- 특수교육진흥법. <http://user.chollian.net/~soe1/edulaw/edulaw7-15.htm>
- 한국농아인협회(2008). 수어관련 법령 제·개정연구 및 추진위원 3차 회의 자료.
- 한국농아인협회(2009). 수어관련 법령 제·개정연구 및 추진위원 4차 회의 자료.

부록

(1) 청각장애인의 언어 사용 실태 조사서

이 조사는 청각장애인의 언어권 보장 정책 개발 연구를 위해서 하는 조사입니다. 이 조사 결과는 정책 개발 연구 자료로만 사용될 것이며 조사 대상자에 관한 정보는 비밀이 보장될 것입니다. 질문에 성의껏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당하는 번호에 ○표를 하고, () 속에는 해당하는 내용을 적는다.

조사자 성명: ()

조사 지역: () 시, 도 () 시, 군, 구

조사일: 2008년 ()월 ()일

조사 대상의 일반 사항

1. 성별 ① 남 ② 여
 2. 연령 만()세
 3. 혼인 여부 ① 미혼 ② 기혼
 4. 학력 ① 무학 ② 초졸 이하 ③ 중졸 이하 ④ 고졸 이하 ⑤ 대졸 이하
⑥ 대학원 재학 이상
 5. 특수학교/일반학교 여부
- 5-1. 재학/졸업 여부

① 특수학교 재학 ② 특수학교 졸업 ③ 일반학교 재학 ④ 일반학교 졸업
⑤ 기타()

5-2. 일반학교/농학교 전학 여부

① 일반학교에서 농학교로 전학 ② 농학교에서 일반학교로 전학
③ 농학교만 다님 ④ 일반학교만 다님 ⑤ 기타()

6. 직업: ()

청각장애 정도

7. 어떤 재활보조기구를 사용합니까?

① 보청기 ② 인공와우 ③ 사용 안 한다.

8. 청력 손실은 어느 정도입니까?

8-1 보청기나 인공와우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 ① 오른쪽 귀 ()dB
- ② 왼쪽 귀 ()dB
- ③ 모른다.

8-2 보청기를 착용한 상태에서

- ① 오른쪽 귀 ()dB
- ② 왼쪽 귀 ()dB
- ③ 모른다.

8-3 인공와우를 착용한 상태에서

- ① 오른쪽 귀 ()dB
- ② 왼쪽 귀 ()dB
- ③ 모른다.

9. 청각장애가 일어난 시기는 언제입니까?

- ① 출생 시
- ② 출생 후: 만()세 ()개월

10. 청각장애의 주된 원인은 무엇입니까?

- ① 선천적 원인 ② 출생 시 원인 ③ 후천적 원인 ④ 원인 불명

의사소통 수단

11.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전달할 때 주로 어떤 형식을 사용합니까?

- ① 수화 ② 말 ③ 글 ④ 단순한 몸짓 ⑤ 기타 ()

12.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때 주로 어떤 형식을 사용합니까?

- ① 수화 ② 말 ③ 글 ④ 독화(입술+표정+몸짓) ⑤ 기타()

13. 수화는 어느 정도 할 수 있습니까?

- ① 잘 한다. ② 잘 하는 편이다. ③ 간단하고 쉬운 것을 할 수 있다. ④ 못한다.
⑤ 배우는 중이다.

14. (수화를 할 수 있다면) 수화는 누구에게 배웠습니까?

- ① 부모에게서 ② 학교 수화 수업 시간에 선생님께서서
③ 수업 시간에 선생님의 수화를 보고 ④ 친구들에게서

15. (수화를 할 수 있다면) 수화를 언제부터 배웠습니까?

만()세

16. 구화(말)를 할 수 있습니까?

- ① 잘 한다 ② 잘 하는 편이다. ③ 하기는 하나 잘 하지는 못한다. ④ 못한다.
⑤ 배우는 중이다

17. 구화(말)를 어디서 배우기 시작했습니까?

- ① 가정 ② 농학교 ③ 기타()

18. 구화(말)는 언제부터 배웠습니까?

만()세

19. 상대방이 하는 말을 어느 정도 들습니까?

(보청기를 착용한 사람은 그 상태에서, 인공와우를 착용한 사람은 그 상태에서)

- ① 큰 소리로 말을 하여도 듣지 못한다.
② 큰 소리로 말을 하면 들을 수 있지만 이해하지는 못한다.
③ 큰 소리로 말을 하면 조금(50% 이하) 이해한다.
④ 큰 소리로 말을 하면 50% 이상 이해한다.
⑤ 보통 소리로 말을 하면 조금(50% 이하) 이해한다.
⑥ 보통 소리로 말을 하면 50% 이상 이해한다.
⑦ 보통 소리로 말을 하면 100% 이해한다.

20. 소음이 있는 곳에서는 어느 정도 들습니까?

- ① 소음이 없는 곳에서 듣는 정도로 듣는다.

27. 수화를 할 수 없다면 가족과는 어떤 형식으로 의사소통을 합니까?

- ① 말 ② 글 ③ 단순한 몸짓 ④ 기타()

28. 가족과 하루에 몇 시간 정도 대화합니까?

- ① 거의 하지 않는다. ② 30분 이내 ③ 1시간 이내 ④ 2시간 이내 ⑤ 2시간 이상

29. 가족과는 어느 정도까지 대화를 나눕니까?

- ① 기초적인 대화(인사, 일상생활) ② 일상의 경험 내용 ③ 시사적인 내용
④ 속 깊은 감정이나 생각 ⑤ 기타()

30. 가정에서 하는 중요 결정에 어느 정도 참여합니까?

- ① 적극 참여한다. ② 적극 참여하는 편이다. ③ 보통으로 참여한다.
④ 소극적으로 참여하는 편이다. ⑤ 거의 참여하지 못한다.

자녀 양육(건청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대답한다)

31. 귀하의 건청 자녀가 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주로 양육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 ① 본인 ② 배우자 ③ 친가 ④ 외가 ⑤ 보육원 보육사 ⑥ 기타()

32. 귀하의 건청 자녀를 일정 기간 다른 사람 혹은 시설이나 기관에 맡긴 적이 있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요

32-1. 자녀를 다른 사람에게 맡긴 적이 있다면 그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년 개월)

32-2. 자녀를 다른 사람에게 맡긴 적이 있다면, 맡길 때 자녀의 나이는 몇 살이었습니까?

(만 세)

32-3. 자녀를 다른 사람에게 맡긴 적이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아이에게 말을 가르치기 위해서 ②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③ 부모가 장애인이기 때문에 ④ 맞벌이로 인하여 아이를 돌볼 수가 없어서
⑤ 기타 ()

32-4. 자녀를 다른 사람에게 맡긴 적이 있다면 어떤 면에서 도움이 되었습니까?

- ① 자녀가 말을 잘하게 되었다. ② 자녀가 정서적으로 안정되었다.
③ 자녀가 사회성이 발달하게 되었다. ④ 자녀가 올바른 생활습관을 가지게 되었다.
⑤ 기타 ()

32-5. 자녀를 다른 사람에게 맡긴 적이 있다면 어떤 면에서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 ① 부모에게 돌아왔을 때 적응하지 못하였다.
② 자녀가 정서적으로 불안해하였다.
③ 부모와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았다.
④ 기타 ()

33. 자녀를 (학령 전) 양육하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해당되는 번호 모두에 표시해 주세요)

- ① 말을 가르치기 어려웠다
② 수화를 가르치기 어려웠다
③ 아이의 소리를 들을 수 없어서 아이의 배고픔, 아픔, 위험 여부를 잘 판단할 수 없었다.
④ 아이가 질문을 하면 알아듣기도 어렵고, 바로 대답해 주기도 어려웠다.
⑤ 아이가 집밖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라서 어려웠다.
⑥ 아이에게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 전화 통화가 어려워서 어려웠다.
⑦ 기타()

34. 귀하는 자녀 양육에 대한 정보를 주로 어디에서 얻습니까? (해당되는 번호 모두에 표시해 주세요)

- ① 방송 ② 신문 ③ 잡지 ④ 책 ⑤ 친척 ⑥ 친구 ⑦ 복지관 ⑧ 종교 단체
⑨ 청각장애 관련 단체 ⑩ 기타() ⑪ 없다.

한국어 능력

35. 수화를 배운 것이 한국어 습득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 ① 매우 도움이 된다. ② 약간 도움이 된다. ③ 도움이 안 된다. ④ 약간 해롭다.
⑤ 매우 해롭다.

36. 구화교육이 한국어(말) 습득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 ① 매우 도움이 된다. ② 약간 도움이 된다. ③ 그저 그렇다. ④ 도움이 안 된다.

⑤ 기타()

37. 자신의 한국어(말) 실력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① 상 ② 중상 ③ 중하 ④ 하 ⑤ 한국어를 전혀 못한다.

38. 기회가 된다면 한국어(말)를 다시 배우고 싶습니까?

① 예 ② 아니요

39. 한국어(말)를 배울 때 무엇이 가장 어려웠습니까?

① 단어 ② 조사, 어미 ③ 어순 ④ 기타 ()

수화통역사(의사소통에 수화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대답한다)

40. 수화통역사의 수화 통역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요

41. (수화 통역을 받았다면) 수화 통역은 누가 했습니까?

① 수화통역센터의 수화통역사 ② 프리랜서 수화통역사 ③ 통신 중계 서비스 (TRS)

42. 지금까지 수화통역을 받은 횟수는 얼마나 됩니까?

월 평균 ()회

43. 어떤 경우에 수화 통역을 받았습니까?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44. 수화통역이 도움이 되었습니까?

① 매우 도움이 되었다. ② 약간 도움이 되었다. ③ 거의 도움이 안 되었다.
④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45. 수화통역을 받을 때 불편한 점은 무엇이었습니까?

① 순서를 많이 기다려야 했다. ② 수화 통역사의 통역 수준이 낮았다.

- ③ 수화 통역비 부담이 컸다. ④기타()

방송 및 인터넷 정보 접근 실태

46. 국내외에서 일어나는 생활 정보를 주로 어떤 매체를 통해 얻습니까? (해당되는 번호 모두에 표시해 주세요)

- ① 신문 ② TV ③ 컴퓨터 ④ 주위 사람 ⑤ 농인 단체 ⑥ 종교 단체
⑦ 기타()

47. 방송에서 청각장애인을 위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① 수화 통역 방송 전면 실시 ② 자막 방송 전면 실시 ③ 청각장애인 전용 방송 채널 신설
④ 기타()

48. 자막 방송을 보니까?

- ① 예 ② 아니요

49. 자막 방송을 본다면 방송 내용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까?

- ① 모두 이해가 된다. ② 대부분 이해가 된다. ③ 50% 정도 이해가 된다.
④ 대부분 이해가 안 된다. ⑤ 전혀 이해가 안 된다.

50. 자막 방송 내용이 이해가 잘 안 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자막 속도가 빠르다. ② 자막과 화면이 맞지 않는다. ③ 자막에 오타가 많다.
④ 한국어 문장 이해력이 부족하다 ⑤기타()

51. 자막 방송을 보고

- ① 처음에는 자막을 잘못 읽었는데 차차 자막을 읽을 수 있게 되었다.
- ② 문장력이 향상되었다.
- ③ TV 자막 방송을 통하여 많은 정보를 얻고 있다.
- ④ 예전에 비해 사람들과의 이야기 거리가 많이 생겼다.

52. 방송에서 수화통역을 본 적이 있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요

53. 방송에서 하는 수화통역은 얼마나 이해하니까?

- ① 모두 이해한다. ② 대부분 이해한다. ③ 50% 정도 이해한다.

- ④ 대부분 이해하지 못한다. ⑤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

54. 방송에서 하는 수화 통역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 ① 수화 방식이 다르다. ② 수화 속도가 빠르다. ③ 수화통역사의 화면 크기가 작다.
④ 방송 내용이 어렵다

55. 인터넷에 나오는 정보를 어느 정도 이해합니까?

- ① 모두 이해한다. ② 대부분 이해한다. ③ 50% 정도 이해한다.
④ 대부분 이해하지 못한다. ⑤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

56. 인터넷에 나오는 한국어 정보가 (이해하기 어렵다면) 어떤 점에서 이해하기 어렵습니까?

- ① 전문적인 용어(외래어, 외국어)가 이해하기 어렵다. ② 기초 정보가 부족하다.
③ 문장 구조가 어렵다 ④기타()

학교 교육에서 수화

57. 청각장애인이 일반학교에서 건청 학생과 함께 교육받는 통합 교육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 ① 찬성한다. ② 편의 제공을 충분히 하면 찬성한다. ③ 반대한다.

농 학교 출신인 경우

58. 자기가 알고 있는 수화와 선생님의 수화가 비슷했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요

59. 수화로 하는 선생님의 수업 내용이 이해하기 쉬웠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요

60. 이해하기 어려웠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선생님의 수화가 자신의 수화와 다르다. ② 수화 속도가 빠르다.
③ 수화가 어렵다. ④ 수업 내용이 어렵다. ⑤기타 ()

일반학교 출신인 경우

61. 친구나 선생님과 어떤 형식으로 대화를 했습니까?

- ① 수화 ② 말 ③ 글 ④ 단순한 몸짓 ⑤ 기타()

62. 수업 내용을 이해하는데 어떤 도움을 받았습니까?

- ① 수화 통역 ② 필기된 노트 제공 ③ 시험 시간 연장 ④ 기타 ()
⑤ 어떤 도움도 받지 못했다.

사회 활동 속에서 의사소통

63. 직장생활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은 없습니까? (해당하는 번호 모두에 표시해 주세요)

- ① 말을 할 수 있어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없었다.
② 수화 사용자이므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었다.
③ 수화 사용자이지만 직장에 수화 사용 동료가 있어서 어려움이 없었다.
④ 수화 사용자이지만 직장에서 글로 의사소통을 용이하게 할 수 있어서 어려움이 없었다.
⑤ 필요할 때마다 수화통역사의 도움을 받게 하므로 어려움이 없었다.
⑥ 기타()

64. 사회생활(법정, 선거, 의료 등)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은 없습니까? (해당하는 번호 모두에 표시해 주세요)

- ① 말을 할 수 있어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없다.
② 수화 사용자이므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다.
③ 필요할 때마다 수화통역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 어려움이 없다.
④ 수화 통역이 잘 되지 않아 어려움이 있다.
⑤ 수화 용어가 없어서 어려움이 있다.
⑥ 기타()

65. 청인과 교류를 합니까?

- ① 농인들하고만 교류를 한다.
② 수화를 하는 청인과 교류를 한다.
③ 수화 사용자이지만 수화를 하지 못하는 청인과의 교류를 한다.
④ 말을 하므로 수화를 하지 못하는 청인과의 교류를 한다.

66. 다른 사람들과 통신은 어떻게 합니까? (해당하는 번호 모두에 표시해 주세요)

- ① 가정 전화기나 휴대 전화를 사용하여 말로 한다.
- ② 휴대 전화를 사용하여 문자로 한다.
- ③ 휴대 전화(영상통화)를 사용하여 수화로 한다.
- ④ 통신 중계 서비스를 이용한다.
- ⑤ 화상전화기를 사용하여 수화로 한다.
- ⑥ 컴퓨터를 사용하여 이메일로 한다.
- ⑦ 수화통역을 할 수 있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 전화로 한다.
- ⑧ 말로 할 수 없어 수화나 문자로 해야 하는데 화상전화기, 휴대 전화, 컴퓨터가 없다.

보청기와 인공와우의 장단점

(보청기를 착용하는 사람만 대답한다)

67. 보청기를 착용하기 때문에 좋은 점은 무엇입니까?

- ① ()
- ② ()
- ③ ()
- ④ ()

68. 보청기를 착용하고 있기 때문에 나쁘거나 불편한 점은 무엇입니까?

- ① ()
- ② ()
- ③ ()
- ④ ()

(인공와우를 착용한 사람만 대답한다)

69. 인공와우를 착용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점은 무엇입니까?

- ① ()
- ② ()
- ③ ()
- ④ ()

- ① ()
- ② ()
- ③ ()
- ④ ()

감사합니다.

이 조사는 청각장애인과 수화에 대한 인식 개선 사업에 활용할 기초 자료를 얻기 위해서 하는 조사입니다. 조사 결과는 조사 목적 이외에는 활용되지 않을 것이며 조사 대상 관련 정보는 비밀이 보장 될 것입니다. 질문에 성의껏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사일: 2008년 1월 1일

직업:

153

()① 그렇다. ()② 아니다. ()③ 모르겠다.

11. 모든 TV 방송 프로그램을 수화로 통역하거나 폐쇄자막으로 설명해야 한다.

()① 그렇다. ()② 아니다. ()③ 모르겠다.

12. 수화 사용자에게 수화로 된 출판물과 영상물을 제공해야 한다.

()① 그렇다. ()② 아니다. ()③ 모르겠다.

13. 수화 사용자가 문화 공연이나 문화 유적, 기념물 등에 수화로 접근하여 볼 수 있어야 한다.

()① 그렇다. ()② 아니다. ()③ 모르겠다.

14. 수화 사용 청각장애인은 사용 언어만 다르고 기타 능력은 청인과 다르없다고 생각한다.

()① 그렇다. ()② 아니다. ()③ 모르겠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